

바

성폭력
이슈리포트

11호

기획특집

한 번의 클릭, 한 번의 가해 : 디지털 성폭력 6

상담일지 분석

디지털 성폭력에 맞서다 26
: 2015~16 카메라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상담통계 분석을 중심으로

쟁점과 입장

'이미지 착취'(Image Exploitation) 성폭력 실태와 판단기준에 관한 비판적 분석 56
'보복 포르노'(Revenge Porn) 관련 처벌 사례 및 입법 소개 78
디지털 성폭력 처벌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6

최신 연구동향

2016년 성폭력·성희롱 관련 연구물 동향 리뷰 102

기고 & 서평

인도의 반성폭력 여성주의 운동 : 새로운 돌파구, 새로운 도전 120
'미녀, 야수에 맞서다 : 여성이 자기방어를 시작할 때 세상은 달라진다' 서평 132
'미녀, 야수에 맞서다 : 여성이 자기방어를 시작할 때 세상은 달라진다' 역자소감 140

기획특집

한 번의 클릭, 한 번의 가해
: 디지털 성폭력

한 번의 클릭, 한 번의 가해

디지털 성폭력¹⁾

하예나 | DSO(디지털 성범죄 아웃) 대표

한국성폭력상담소 열린 포럼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 몰랐다. 디지털 성범죄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운동을 하는 활동가로서 힘이 난다. 저희는 2015년부터 '소라넷 고발 프로젝트'로 활동을 시작해서 RPO, '즉 리벤지 포르노 아웃(Revenge Porno Out)'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서 활동했고, 이제는 '디지털 성범죄 아웃(Digital Sexual crime Out)', DSO로 활동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왜 '디지털 성범죄 아웃'으로 이름을 바꿨느냐, '리벤지 포르노'라는 단어가 있고 해외에서도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 현황,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회화되는지 말씀드리기에 앞서, '디지털 성범죄'라는 단어에 대해 설명하겠다.

1) 편집자 주: 이 글은 지난 2017년 2월 10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열린 포럼 <디지털성폭력에 맞서다>에서 진행한 DSO의 하예나 대표의 발표를 부설연구소 울림에서 축약하여 편집한 글이며, 한국성폭력상담소 자원활동가 동동님이 녹취를 맡아주셨다. DSO는 소라넷 폐지를 공론화하고 디지털 성폭력 이슈화에 앞장선 단체로 2016년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수상하였다.

● '음란물', '포르노'는 가해자 시점의 언어

음란물 : “함부로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하거나,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위배되거나 또는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저해하는 내용의 문서, 도서, 음반, 비디오 테이프, 영화, 방송 프로그램과 기타 물건 등.”, 『음란물 [porno,淫亂物]』, 『만화애니메이션사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08

리벤지 포르노 : “어원은 그리스어 포르노그래포스(pornographos)로 ‘창녀에 관하여 쓰여진 것’을 뜻한다.”, 『포르노그래피 [pornography]』, 『영화사전』, propaganda, 2004

일단 '디지털 성범죄 아웃'이라고 이름을 바꾸기 이전에는 '리벤지 포르노'라는 단어를 통해 그러한 유형의 범죄가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렸다. 그런데 사실 '포르노'라는 단어는 한국에서 '음란물'이라는 의미이고, '음란물'이라는 단어는 상대가 나를 자극하고 흥분케 하는, 유혹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가해자를 유혹한 게 아니지 않은가. 피해자는 그냥 존재했을 뿐인데 그것을 두고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퍼가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유혹했다'고 주장 하고 있다. 너무 남성중심적이고, 가해자 시점의 폭력적인 단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리벤지 포르노도, 음란물도, 포르노도, 단어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 피해자가 규정되어있는 단어가 아니라 가해자를 규정하는 단어로 바꾸어 보려고 시도했다. 이러한 취지로 가해자의 행위를 중심으로 단어를 만들고자 했고, 가해행위를 규정하려는 노력 끝에 만들어진 단어가 '디지털 성범죄'이다.

● 디지털 매체로 이루어지는 성범죄를 통칭하는 말,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라는 단어는 제작형, 유포형, 참여형, 시청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작형 성범죄는 성폭력을 촬영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유포형 성범죄는 촬영된 영상물을 유포하는 경우, 참여형 성범죄는 촬영 등을 위해 성폭력에 참여하는 행위이고, 시청형 성범죄는 제작, 유포, 참여로 이루어진 영

상물을 시청하는 것으로 '시청강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간추리면, 제작형과 유포형은 만들어내는 사람에 주목한 것이고, 참여형과 시청형은 이것들을 소비하는 사람들에 주목한 것이다.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를 가해자를 지칭하는 단어로 만들어 유형화하다보니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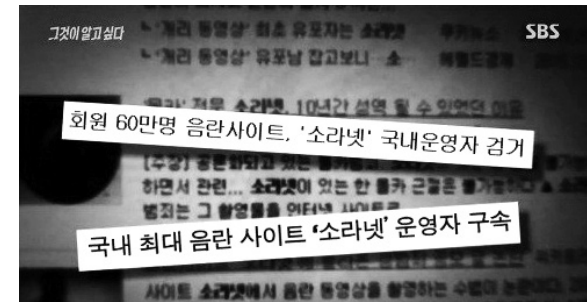
● '소라넷 고발 프로젝트'에서 'DSO(Digital Sexual crime Out)'에 이르기까지의 활동 과정

2015년 8월 메갈리아 사이트에서 '몰카'를 재주목하기 시작했다. 당시에 '위터파크 몰카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었다.² 소라넷 폐지 청원 사이트가 개설되고, 인터넷에 소라넷에 관한 글들이 올라오면서, 그때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메갈리아에서 점조직 형태로 소라넷에 대해 해외에 알리고 청원했지만 언론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상당히 아쉬웠다. 그래서 공적으로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소라넷 고발 프로젝트'였다. 그런데 국내에 대대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제대로 된 인식과 자료가 있어야 했다. 몰카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략적 통계가 나와 있지만, 유포형 성범죄는 통계가 전혀 없었다. 일단 우리는 구체적인 문제 파악을 위해서 모니터링 팀을 구성하고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통계를 냈다.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가해자는 어떤 인식을 하는지, 해외 연구들을 보며 조사하기 시작했고,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들을 공론화하기도 했다.

소라넷에 보면 '몰카 게시물'이 있다.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 2001년은 핸드폰 카메라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해다. 그때부터 몰카 게시물이 생겨

2) 편집자 주: "위터파크 몰카 유포한 30대 프로그래머 징역 2년", 한겨레, 2015년 12월 20일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22664.html>

나기 시작했고, 2004년부터 핸드폰 카메라가 상용화되면서 게시물이 폭증했다. 핸드폰으로 몰카를 찍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2005년에는 두 배로 늘어났다가, 2006년에 갑자기 줄었는데 그 이유는 사진을 찍을 때 '찰칵' 소리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2010년에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또 몰카 게시물이 급증했고, 2014년, 2015년까지 엄청 많이 늘어났다. 소위 '골뱅이'³ 관련 범죄통계를 보면, 하루에 평균 서너 건 '골뱅이 강간'이 일어난다. 이것을 언론에 제보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림 1〉

2015년 12월 26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분, "위험한 초대남 : 소라넷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한 뒤에 발생한 신상유포 이후로 3개월간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 일단 팀 전체의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다. 온종일 강간 영상 찾아다니는 일은 정말 힘들다. 그때 당시에 팀원들이 다 심하게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았다. 활동 초기에는 뉴스에 한 줄이라도 뜨면 감사해서 올 지경이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이후로 충분히 만족했고 자연스럽게 팀이 와해되었다. 저 같은 경우는 3개월 이상을

3) 편집자 주: 술에 취한 여성을 비하하는 말

쉬면서 너무 힘들어서 인터넷을 전혀 안 하고 핸드폰도 다 끊었다. 그러다 2개월 지나고 핸드폰을 다시 들여다봤는데 트위터에서 소라넷이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봤다. 소라넷이 사라지고 유사 사이트가 생긴 것이 아니다. 소라넷은 피라미드의 가장 정점에 있던 사이트였고, 소라넷을 필두로 유사 사이트는 이미 충분히 많았다. 그리고 취중강간에만 집중되어서 유포 성범죄나 촬영 성범죄 등에 더 집중되지 않은 점도 아쉬웠고, 그런 부분을 더 공론화시키고 싶었다. 그래서 다시 모여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를 계속 알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 믿고 다시 팀을 꾸려보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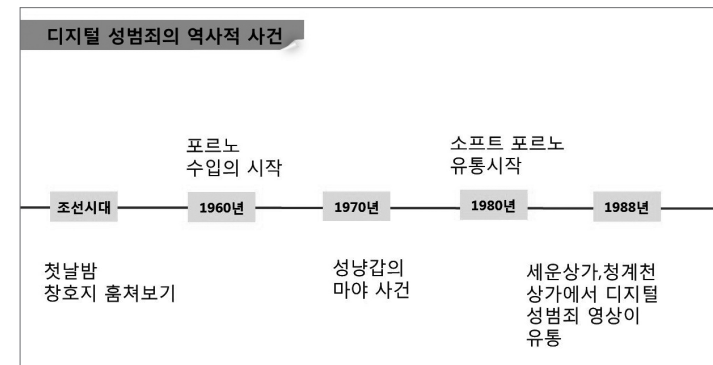
그래서 RPO 곧 '리벤지 포르노 아웃(Revenge Porn Out)' 팀으로 다시 활동을 시작하였고, 광고 기반의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히 소라넷 동류의 사이트들을 조사했다. 소라넷 등이 해외 사이트⁴라서 검거할 수 없다고 계속 말하니까 해외 사이트가 제일 범죄가 심각하니 어떻게든 해외 사이트부터 막아보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제보하고 경찰에도 신고했다. 먼저 통계자료를 만들었고(통계자료는 DSO 사이트에 게재되어있다),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자료를 배포하고 카드뉴스를 제작하기도 했다.

● 디지털 성범죄의 역사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된 것인지를 조사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타인의 사생활을 훑쳐보고 관음하는 것인데, 사실 조선시대에 첫날 밤 창호지 훑쳐보기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다. 아마 조선시대 여성들은 원치 않았을 것이다. 자료들을 보면 남성의 일가

4) 편집자 주: 이 글에서 사용되는 '해외 사이트'라는 단어는 해외의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이버 성범죄 사이트를 일컫는다. 대표적으로 소라넷, 밍키넷 등이 있다.

친척이 창호지로 훑쳐봤다고 하는데, 그 행위 자체가 여성에게는 일종의 낙인을 부여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 당시에도 남성은 성을 자유롭게 즐겼지만,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으니까 말이다. 어쩌면 그때부터 훑쳐보기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었던 것 같다. 지금도 교과서에서는 호기심에 창호지에 침을 발라서 뚫고 몰래 훑쳐보았다며 그 상황을 재밌는 일인양 묘사하고 있다.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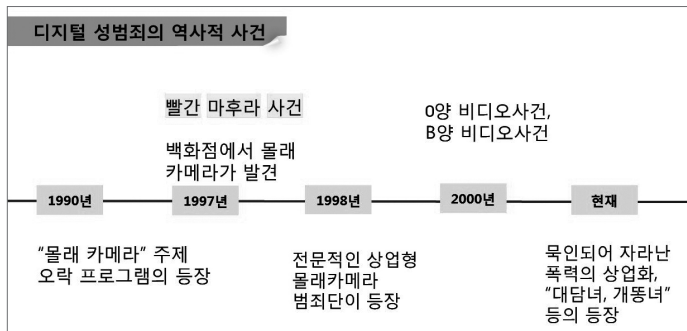
2017년 2월 10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열린 포럼 발표자료 중,
"디지털 성범죄의 역사적 사건 : 조선시대~1980년대"

● 1960년대~1980년대 : 도입되어 유통되기까지

1960년대부터 암암리에 미국이나 일본 등으로부터 포르노가 수입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는 '성냥갑의 마야 사건'을 계기로 음란물을 규제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이것은 성냥갑에 누드화가 실렸던 사건으로, "예술이냐 음란이냐"를 주제로 논쟁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음란물법이 제정되었다. 그때까지는 외국 영상만 들어오니까 사람들도 질리기 시작하면서 한국인이 나오는 포르노에 대한 수요가 생기고, 한국에서 제작된 '소프트 포르노'가 유통되기 시작한다. 초기에는 '젓소부인 시리즈'나 '야시장'과 같은 '에로' 영화들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사람들이 많이 헛갈리는 게 '하드 포르노'는 강간물로 연상

하는데 절대 아니다. 소프트 포르노는 성기가 드러나지 않은 성적표현물이
고, 하드 포르노는 성기가 직접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의미가 변질하여 하드한 것을 강간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이 이 시기에 이루어진 캠코더의 본격적인 유통이다. 당시
에 디지털 상가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었는데, 1980년대 후반에 음란물 단
속이 심해지면서 세운상가, 청계천상가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도입
되기 시작한다. 상가에 컴퓨터를 사러 오면 CD를 끼워주는 식이었다. 이때
언론, 기사를 찾아보면 영상의 출처는 아무도 모르는데 어디선가 흘러나온
것이라고 한다. 성범죄 사건, 강간 사건이 있을 때마다 상가에서는 난리가 났
다. 그 사건의 영상이 돌았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그래서 상가에서는 성폭력
영상이 담긴 비디오를 판매하려고 “성폭력이 있었다더라”는 소문을 일부러
퍼트렸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상가에서 벌어들인 금액이 한 달 매출, 10억에
달했다고 한다. 지금도 크지만, 당시에 10억이면 매우 큰 금액이다.



〈그림 3〉

2017년 2월 10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열린 포럼 발표자료 중,
“디지털 성범죄의 역사적 사건 : 1990대~현재”

● 1990년대~현재 : 제작되어 문화로 정착되기까지

1990년대 몰래카메라를 주제로 한 오락프로그램이 등장했고, 그 즈음부
터 인터넷에서 몰래카메라를 주제로 한 영상들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가 제대로 가시화된 것은 1997년도지만 몰래카메라 형식의
영상이 인기를 끌었다는 걸 보면 몰래카메라 범죄가 횡행했고, 그런 영상들
이 유통되었지만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빨간 마후라 사건’이 있
었는데 그것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나온 성범죄 영상이 유포된 사건이다.
그런데 이 영상도 하나에 70~80만 원으로 거래되었다고 한다. 이 사건이 사
회적으로 엄청난 논란이 되면서 경찰에서는 이 청소년들을 잡아서 조사를
시작했다. 일단 고등학생인 남성 2명은 장난으로, 과시용으로 팔았다고 증언
했다. 반면 중학생인 여성은 “오빠들이 찍기만 하고 삭제한다”고 말해서 찍
었지만, 결국 여학생은 피해자임에도 음란물 제작죄로 처벌을 받았다. 그렇
게 피해자인데도 처벌을 받게 되니까 그 이후에도 피해자들은 전혀 나올 수
가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1997년에 어느 백화점 화장실에서 몰카
가 발견되었고, 여성단체들이 피켓 시위를 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반
향을 일으켰다. 이후 상업형 몰래카메라 범죄단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던 사건들이 2000년대 ‘O양’, ‘B양’ 비
디오 사건으로 묻히게 되었다. 두 사건 모두 피해자들이 ‘완벽한 피해자들’이
라고 볼 수 있는데, ‘O양’의 경우에는 원해서 찍었으나 의사에 반해 유출된
경우고, ‘B양’은 몰래 찍혀서 유출된 경우이다. ‘O양’은 경찰에게 조사를 요
청했지만 경찰은 ‘O양’이 돈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보려고 피해자의 통장
부터 조사했다. 언론에서도 “O양이 잘못했고 반성해야 한다”고 보도했고,
더 경악스러운 것은 “이것을 성교육 영상으로 써야 한다”, “불쌍하기는 하지
만 이것은 너무도 ‘포르노 혁명’이다, 이것은 한국 포르노계의 역사를 다시
쓸 것이다”라는 말도 나왔다. 언론에서는 “해외에서는 ‘애널’이, 일본에는 변

태적 성향의 ‘포르노’가 있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포르노는 몰래카메라이다”라고 하기도 했다. 정말 범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여기에서 여자는 단지 소비되는 대상일 뿐이다. 이렇게 이미 두 피해자가 엄청난 가해를 당하고 난 뒤로, 피해자는 외칠 수도 말할 수도 없다. 이미 공인으로서 매장을 당했는데 어떻게 자신이 나올 수 있었을까 싶다. 사회적 인식이 이러하데, 경찰에게 말해봤자 무시당할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묵인되면서 인터넷에서 ‘대담녀’, ‘개똥녀’ 등 디지털 성범죄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왔고 그렇게 인터넷 문화는 발전해왔다.

● 디지털 성범죄의 현 실태

● SNS, 커뮤니티, 해외 사이트, P2P 사이트, 메신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현재 SNS,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게시하고 정액을 뿌린다든지, 성적 희롱을 하는 등 여성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소비하는 문화를 볼 수 있다. 이종격투기 등 남초 사이트에서는 자기 아내나 여성들 사진들을 올리면서,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야”와 같은 식으로 희롱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언론에서 음란물 사이트라고 불리는 소라넷, 밍키넷과 같은 해외 사이트는 강간 영상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영상까지 모든 영상이 소비된다. 거기에 올라온 영상들은 한국에서 불법인 ‘하드 포르노’라서 여성들이 강제로 찍힌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아마 합법은 없을 것이고, 합법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퍼간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참여형 가해행위는 초대남을 초대해서 같이 가해하는 방식으로, 소라넷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P2P 사이트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영상, 특히 강간 영상 같은 경우가 많이 올라온다. 해외 사이트와 달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나마 청소년

년 영상을 걸러내기는 하지만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들이 올라온다. 그리고 남자들끼리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메신저에 올리거나, 자신이 여자친구에게 영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사례에서는 한 남성이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자랑한답시고 올렸는데 그 친구가 퍼가서 어느 사이트에 올린 일이 있었다. 여자친구가 일방적인 피해자인데 남성이 피해자라고 길길이 날뛰었다. 본인이 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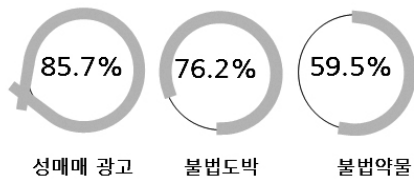
● P2P 사이트 실태

국내의 어느 P2P 사이트에 ‘국산’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약 13,800개의 영상이 나온다. 이것들 대부분이 디지털 성범죄이다. 중간에 ‘에로 영화’도 끼워져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성범죄다. 해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47개를 조사했는데 100%가 디지털 성범죄 상영, 97%의 사이트가 도촬 영상 상영, 78%가 실제 강간 영상을 올렸다. 이 중 83%의 사이트에 아동·청소년 영상이 올라온다. 보통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인데, 자위 영상이 많다. 피해자는 원해서 올라간 것이 절대 아닐 것으로 생각하지만, 가해자들은 본인들이 원해서 찍었음을 강조한다. 피해자는 올리는 걸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산타크루즈⁵⁾에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어느 P2P 사이트의 검색 키워드 순위표를 보면, ‘가출소녀’, ‘어린’, ‘유출’, ‘소녀’ 등의 단어가 인기 키워드이다. ‘한국야동’, ‘골뱅이녀’ 등의 조회 수는 하나당 거의 만 단위까지 올라간다. 특히 술 취한 여성을 강간하는 영상이 인기 영상이다. 다른 사이트도 ‘일반’, ‘국산’, ‘유출’, ‘여자친구’, ‘000학

5) 편집자 주: ‘잊힐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를 지워주는 단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주로 이 업체에 의뢰하며, 영상 삭제를 위해 드는 비용으로 약 300만 원을 매달 내야 한다. 청소년에게 무료로 서비스해주고 있지만, 사회봉사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아이러니한 것은 성범죄 영상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쪽은 주로 남성이며 피해를 입는 쪽은 주로 여성인데, 피해 회복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쪽도 여성이며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도 남성이라는 점이다. 소라넷이나 밍키넷과 같은 해외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은 삭제가 불가능하다. 게시물을 삭제하는 과정 자체가 원본 영상의 소스나 로그를 토대로 검색되는 파일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 삭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DSO도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나 필요한 인력이 너무 많고 시스템도 사야 하는 등 필요한 조건들이 많아서 현실화되지 않았다.

번, 특히 어린 이미지의 키워드가 들어갈수록 조회 수가 높다. SNS에는 어린이들의 영상이 판매용으로 올라온다. 미취학 아동으로 보이는 한국 아이가 찍혀있는데, 어떻게 찍혔는지 의문이다. 경찰에 신고했더니 몇 달 걸려 나오긴 했지만, 한 명은 중국에 있고 몇 명은 본인이 찍은 게 아니므로 경찰에서는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더라. 이 사람들은 아동에 대한 강간이라는 인식조차 없고 '음란물' 개념으로 생각한다.

● 디지털 성폭력과 함께하는 불법광고



〈그림 4〉

2017년 2월 10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열린 포럼 발표자료 중, "디지털 성폭력과 함께하는 불법광고"

디지털 성범죄를 일삼는 사이트들에서는 성매매 광고, 불법 도박 광고, 불법 약물 광고 등 광고물이 많이 올라온다. 통계조사 결과 이런 영상들이 성매매로 직결되고 불법 약물로 직결되었다. 예를 들어 골뱅이 영상이 특히 인기가 많은데, 바로 그 위에 강간 약물인 최음제 광고가 있다. 이것은 여성의 정신을 잃게 만드는 약물로, 그 약물 사이트도 조사해보니 게시된 계좌번호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몇 개의 사이트를 뒤져보았을 때 이런 방식으로 판매되는 약물이 대략 200여 개 정도가 되었다. 하루 판매량이 그 정도라면 제가 모르는 사이트까지 고려했을 때 하루에 강간당하는 여성이 몇 명일까 싶다. 가상의 세계가 현실의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성매매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거대한 성매매 시장은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규모와 강

하게 연결되어있다. 사이트를 통해 여성을 도구로 소비하고자 하는 남성들은 쉽게 성매매 광고를 접하고 이용한다.

해외 사이트에 실려 있는 광고를 보면 '하루에 한 명, 일반인 소개' 등의 문구들이 있는데, 이게 다 성매매 광고다. 일반인에 대한 성적대상이 심해지면서, '일반인'이라는 키워드로 성매매를 광고하고 있다. 사실 다 들어가 보면 '채팅으로 위장한' 성매매 알선 광고다. 약물 같은 경우는 광고가 아니라 사이트의 별도 카테고리가 있다. 이 사이트는 약물, 최음제 판매가 큰 수입을 올린다고 하더라. 마약 거래나 다름없다. 불법 약물과 불법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가 밀접하게 맞물리는 공간이다.

● 한국에서 생산되는 '국산 아동'

미디어에서도 디지털 성범죄를 '국산 아동'이라는 문구로 소비하고 있다. 우선 '국산'이라는 말은 굉장히 폭력적이다. '국내산'이러니, 무슨 수출품도 아니고 말이다. '국산 아동'이라는 귀여운 말로 피해자를 대상화하면서 범죄 사실을 가려버린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보면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국내에 하드코어 포르노가 제작되어 유통되고 있다고 하는데⁶, 그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는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다. 만든 사람이 남자고 돈 버는 사람도 남자다. 그렇지만 피해 받는 사람은 오직 여성뿐이다.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300만 원씩 돈을 내는 쪽은 여성이고, 그것으로 돈 버는 것 역시 남성이다. 여성들의 몸을 상품화시켜서 팔고 돈을 받고 성적으로 착취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한 때 '야동순재'라는 유행어가 돌았을 때, 음란물에 대한 검색 트렌드가 거의 3~4배나 올라갔다. 디지털 성범죄를 유통하고 소비하도록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회화되고 있다.

6) 편집자 주: 홍성철(2015), 『포르노그래피』, [사이트검색자료].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85608&cid=42219&categoryId=58302> (최종검색일: 2017. 4. 17) 참조.

● 디지털 성범죄와 사회화

성적대상화에 대해 이야기하면, 일단 초기에 디지털 성범죄가 유통되었을 당시에는 카메라 크기가 커서 멀리 놓고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촬영했을 것이다. 물론 남자는 모자이크하고 안 나오게 하려고 했지만, 이제 기기가 발전하면서 크기가 작아지고 시점이 더 가까워지게 된다. 남성이 여성을 직접 찍게 된 것으로, 남성의 시각에서의 포르노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반인 여성’, ‘유출된 것’에 대한 욕망이 만들어진다. 일반인을 카테고리화, 성적대상화하고 판매하고 있다. 지금은 이제 그냥 일상적인 사진을 올려도 음란물 사이트에서 퍼간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성적대상화 되고 음란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행위에 집중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러한 행위들이 바로 디지털 성범죄라는 것을.

● 디지털 성범죄 표적이 되는 청소년들

중학생, 고등학생의 일상 사진들이 올라오는 곳이 어느 사이트의 ‘은꼴계사관’ 즉, ‘은근 풀리는 게시판’이다. 이쪽에 보면 고등학생 영상이 매우 많다. 일단 성인물 범죄 대상이 되면서 동시에 엄청나게 인기를 끄는 것은 바로 ‘미성년자’다. 성인이 대상화되고 범죄화 되면 미성년자도 같이 가게 된다. 주목할 점은 이 사진과 영상들은 게시자가 자신이 지인들 사진을 올린 것인데, 가해자 중 다수가 고등학생들이다. 학교 폭력을 목적으로 고등학생들도 성인들 처럼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학교 폭력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그 내용이 사실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대상은 가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약자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미지를 만들어내면 이 청소년들은 그냥 믿는다. 일명 ‘지인얼싸(지인 얼굴에 싸)’, ‘지인능욕’이다. 이 계정에서는 사진 속의 청소년들에게 문란하다는 이미지를 씌운다.

● 가해자가 되는 청소년들

한국은 여성을 ‘성녀와 창녀’로 구분하면서 대상화하는데, 여성이 성을 자유롭게 즐긴다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가해자들은 그것을 끌어와서 “성적으로 자유로운 여성은 처벌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본인이 정의롭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의 머릿속에서 잘못된 여성을 처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논리로 주변 여학생들 몰카를 찍어 올려서 판매하고 공유하고 즐긴다. 이미 오래전부터 놀이화, 문화화되다 보니, 이 문화를 즐기는 걸 사회적으로 학습한 것이다. 이게 나중에 성인으로 가서 좀 더 힘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어떤 게시물에서는, 엄마의 사진을 사이트에 올려서 엄마와 성관계할 사람을 모집한다고 올렸다. 주변의 모든 사람을 성적인 것으로 대상화해서 올리고 놀이화하고 문화화하는 예이다. 한쪽에서는 ‘골뱅이’라 불리는 술 취한 여성을 강간한 영상이 인기리에 팔리고 있고, 공영방송에서는 “술 취한 여성을 두고 갔다고? 바보 아니야?”와 같은 말이 장난처럼 나온다. 한국인들은 술 취한 여성을 강간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듣고 자라왔다. 그리고 현실에서 이 청소년들은 실제로 강간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학생 6명이 여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으로 강간하고 산에 유기하는 바람에 여학생이 죽은 사건이 나왔다. 근데 이 가해자들은 자신들은 그냥 여자랑 섹스했다고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여성과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섹스를 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너무 당연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른다. 이 학생들한테 ‘포르노’를 얼마나 봤냐고 물어봤더니 매우 많이 봤다고 한다. 그럼 이들이 ‘진짜 포르노’를 봤을까? 아니다. 포르노가 범죄를 조장한 것이 아니라 실제 범죄가 또 다른 범죄를 조장한 것이다.

● 아동, 음란물이라고 부르지 마시다!

이제 ‘아동’, ‘음란물’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피해사실과 가해자의 가해사실 모두를 감추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착취, 확대한 모든 사실이 가려지는 단어이다. 우리는 소라넷은 음란물 사이트가 아니라 ‘성범죄 사이트’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음란물이라고 하면서 남자들은 “남자도 음란물 좀 보자”고 한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 ‘음란물’이 정말 포르노일까? 아니다, 그들은 범죄를 즐기고 있다. 따라서 ‘아동’, ‘음란물’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2014년인가, 2015년에 제정된 음란물 단속법⁷⁾, 이른바 ‘딸퐁법’은 방송통신사에서 P2P 사이트에 아동·청소년 영상이 올라왔을 때 제재를 가한 법인데 그 법에서도 왜 “딸퐁이를 통제 하나?”고 말들이 많다. 자위는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 행위가 디지털 성범죄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상관이 있게 된다. 결국 ‘음란물’이라는 단어는 범죄의 행위에 집중하지 않고 여성을 성적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단어이다. ‘음란물’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곧 가해라고 강조하고 싶다.

● 디지털 성범죄의 종말을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종말을 위하여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이다.

우선 ‘피해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그리고 ‘가해 행위에 대한 인식 고취’하기, 마지막으로 ‘주변에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 적극적으로 막기’이다. 여기 나온 항목들을 보면, ‘음란물’이나 ‘포르노’를 ‘디

7) 편집자 주: 2015년 4월 16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웹하드와 P2P 업체에 불법 음란물 필터링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제대로 막지 못하면 최소 과태료 부과, 최대 사업등록 취소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처벌 조항을 강화하도록 한 법이다.

털 성범죄’로 대체했을 때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아동,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못 보게 하는 것 이전에, 이것은 ‘디지털 성범죄’라고 말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인들만 즐길 수 있는 것을 자신도 즐기면서 멋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성인이 아니므로 보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이나 어른이나 이것은 가해 행위이고,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전에는 디지털 성범죄가 올라오면 그냥 웃고 즐겼다. 그러나 이것은 ‘시청강간’이고 ‘디지털 성범죄’ 행위임을 지적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바뀌는 지점들이 있다.

얼마 전부터 피해자들이 저희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지만, DSO 팀원들은 전부 일반인이고 회사원들이다.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고 피해자 상담이나 법률적인 지원을 할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경찰과 싸워왔고 부딪히는 경험에서 축적된 파일을 수집해서 경위서 작성을 도와주고 주변 기관에 안내해 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에게 연락하는 것이 편하고 안심이 되어서 연락을 하셨을 테니까, 서류화된 경위서를 써주고 어느 수위의 범죄인지를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지원을 하고 있다.

● 이어지는 노력들

RPO의 용어를 바꾸는 과정에서 대체 그럼 어떤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치열했고, 그래서 정리된 것이 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 여러 단어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 아웃이라는 팀으로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작년 10월 이후에는 디지털 성범죄가 어떤 것인지 알리는 활동뿐 아니라 법제화가 되어 제도적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김삼화 의원실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자료를 전달하여 법제화를 위한 노력 중이다. 그리고 여러 기관과 연대하면서 발표, 강의 등 대중적 활동을 시작했다. DSO가 만들어진지 1년 6개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다. 정

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만 연구를 했다. 단체 활동이 잘 구축되도록 노력하면서, 앞으로는 더 연구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 플로어토론⁸

질문자 1 저는 성교육 강사를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제가 성교육 강사를 준비하다 보니 성교육 쪽으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차원에서 이 디지털 성범죄 아웃을 청소년들, 성인들에게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지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예나 제가 말씀드렸다고 피 가해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일단 여성을 도구화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이것 자체가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성을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아서 일어나는 범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해 행위라는 것을 알려주어야지요. 당신이 이 사람에게 ‘해를 입힌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 좋겠죠. 학생들이나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당신들의 이런 행위가 ‘사생활 침해’라는 것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음화반포죄로 규정이 되어있지만, 해외는 ‘사생활 침해’의 영역이거든요. 이미 ‘사생활 침해’가 범죄로 인식되어있는 나라에서는 성적인 침해는 엄청난 ‘사생활 침해’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정확히 사생활 침해가 무엇이고, 그게 죄라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질문자 2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공부 중인 학생입니다. ‘리벤지 포르노’에서 ‘디지털 성폭력’으로 바꾸는 것과 관련된 질문인데 ‘리벤지 포르노’라는 단어를 해외 법안을 참조해서 들어왔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그 해외가

8) 편집자 주: 열린 포럼 플로어 토론 중 주요 질의응답 몇 가지를 발췌·편집하였다.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와 같이 ‘리벤지 포르노’ 단어를 바꾸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예나 저희가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 미국에 ‘리벤지 포르노를 위한 헬프라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리벤지 포르노’ 관련 논문이 있었고요. 미국, 캐나다에는 ‘리벤지 포르노’ 관련 연구 자료가 많아서 그곳에서 참조한 것이에요. 해외 언론자료를 보다 보니 해외에서도 디지털 성범죄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최근에 2015년 지나고 나서 2016년 후반에 ‘리벤지 포르노 헬프라인’이었던 사이트의 이름이 ‘사이버 범죄 헬프라인’⁹으로 바뀌었어요. 아마 논의를 통해 바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의견을 직접 묻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저희와 비슷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질문자 3 2016년에 김삼화 의원에게 디지털 성범죄 자료를 넘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예나 지금 법안이 세 개가 발의되었는데 처벌의 강화를 많이 생각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디지털 성범죄 실태뿐 아니라 강간모의에 대한 자료를 경찰에게 넘겼는데 범죄 혐의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한다거나, “이거 다 장난인데, (당신들이) 순진하고 예민하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던 녹취록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료들을 넘겨드렸더니 그쪽에서 “이거는 경찰이 실시간 범죄가 있을 때 바로 출동해야 하는 의무가 없으므로 이러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경찰에게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신 것 같고, 나머지는 카메라 이용과 관련된 법이에요. 촬영하면 인터넷에 동시전송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범죄자들은 이미 파일을 다 깔아놔요. 핸드폰에 저장 안 되고 바로 업로드되죠. 그러다 보니 그런 걸 막기 위한 법도 내시고 처벌

9) 편집자 주: Cyber Crime Helpline : Call us 24*7*365 Days (<http://www.cybercrimehelpline.com/>)

법도 내셨죠. 이후 그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조합해서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그 토론회에서 경찰들이 재밌고 기상천외한 말을 많이 했어요. “내 셀카까지 퍼가는데 그걸 어떻게 막냐고, 피해자들이 알아서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잘 법안을 만드신 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중요한 질문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일지 분석

디지털 성폭력에 맞서다

: 2015~16 카메라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상담통계 분석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폭력에 맞서다

2015~16 카메라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상담통계 분석을 중심으로

조소연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연구원

● 디지털 성폭력이란?

디지털 성폭력이란 일반적으로 온라인이나 디지털 장치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성폭력을 의미한다. 디지털 성폭력은 IT와 정보통신 등 디지털 관련 기술을 매개로 한다는 ‘행위적 측면’과 오프라인이나 현실이 아닌 사이버 공간, 디지털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간적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디지털 성폭력과 유사한 의미로서 사이버 성범죄¹⁾, 온라인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된 행위 규정과 처벌조항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하 카메라 이용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이하 통신매체 이용 음란)’ 규정으로 마

1) 사이버 성범죄는 현실이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라는 의미로, 장소적 특성을 더욱 강조한 개념이다. 경찰에서는 IT기술 발달에 따라 사이버 음란물, 사이버 명예훼손과 스토킹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행위와 불법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사이버 (성)범죄’, ‘사이버 테러’로 지칭하고 있다.

련되어 있고, 불법콘텐츠(음란물) 게시와 유포 등에 관련한 처벌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조문은 디지털 성폭력의 다양한 행위태양을 모두 담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어 동의 없는 촬영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그럼으로써 법조문에 따르면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경우와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에는 애초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욱이 판례는 ‘타인의 신체’라도 전신이나 얼굴은 ‘여성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시하고 있다.²⁾ 여성이 착용했던 속옷을 몰래 촬영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속옷은 ‘신체부위에 해당하지 않아 애초에 성범죄로 기소되지 않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현실이다.³⁾

또한 경찰 사이버안전국에서는 불법콘텐츠(음란물)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금지규정만 있고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특히 사이버 (성)범죄로 규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불법콘텐츠 게시와 유포로 인한 피해의 경우에 피해자 개인이 적절한 차단과 삭제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피해(불법콘텐츠)를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하고, 삭제요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해야 한다. 이는 사이버 상에서 자신의 피해를 발견하였을 때 즉시 가능한 조치이다. 그러나 심의와 삭제까지 한 달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고, 그 동안 게시와 유포로 인한 피해는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음란물이 게재된 특정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 디지털 성폭력의 경우 신고에서부터 차단과 삭제, 가해자 처벌을 포함한 모든 법

2) “노출 많아도 전신 사진 몰카는 무죄’ 성범죄 아니다”, MBC 뉴스, 2015년 11월 16일자.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desk/article/3814804_17821.html (최종검색일: 2017. 3. 10)

3) “입주여성 도촬 수백장’ 고시원 총무, 성범죄는 무혐의?’, MBC 뉴스, 2015년 11월 3일자. <http://sports.kbs.co.kr/news/view.do?ncd=3175233> (최종검색일: 2017. 3. 10)

적절차가 완결되는 사례가 많지 않음을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카메라 이용 촬영은 2010년 1,134건 이 신고 되었고, 2015년에는 7,615건이 신고 되어 지난 5년간 6배 정도 신고 율이 증가하였다.⁴ 그러나 2015년도 검거는 7,430건으로 검거율이 97.6%이나, 기소율은 31.2%에 불과해 제대로 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카메라 이용 촬영 행위 적발 건수는 최근 2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해마다 기소율이 낮아져 2013년 53.6%, 2014년 43.7%, 2015년 31.2%로 3년간 기소율이 2010년(72.6%)에 비해 절반 이상 떨어졌다.⁵

카메라 이용 촬영은 촬영 행위 하나만도 이른바 '몰카', 동의 없는 촬영, 촬영에는 동의했으나 사후 무단 유포 등 다양한 형태로 나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이트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통해 반복적으로 재유포가 이루어지며 때로는 촬영물을 빌미로 가해자의 협박까지 동반하는 등 피해 양상도 다양하고 피해 정도도 심각한 범죄임에도 여전히 법률상의 정의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피해자는 대다수가 여성으로, 여성을 성적 도구화하는 명백한 여성대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 전반의 문제의식이 여전히 부족하다.

이 글에서는 한국성폭력상담소 2015~16년 카메라 이용 촬영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 관련 상담통계를 바탕으로 여성을 성적 대상화, 수단화하여 발생하는 디지털 성폭력의 본질에 주목하고자 한다. 나아가 동의 없는 촬영과 유포협박 이외에도 사이버 상의 성희롱과 스토킹 등 다양한 층위의 디지털 성폭력 피/가해 유형을 가시화시킴으로써, 향후 디지털 성폭력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4) 2015년 경찰통계연보 참조. <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141> (최종검색일: 2017. 3. 10)

5) 검찰연감 통계시스템 참조 <http://prosec.crimestats.or.kr/main/index.k2?cmd=main> (최종검색일: 2017. 3. 10)

● 더욱 확산되는 디지털 성폭력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는 피해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피해를 확인한 경우에 한해' 상담요청을 해온 사례들을 토대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여전히 비가시화 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전반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 유형 중 현행법상 명확하게 '성폭력'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카메라 이용 촬영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에 대한 상담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도 디지털 성폭력의 다양한 피/가해 유형을 세밀하게 가시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우선 현행법상 처벌되고 있는 카메라 이용 촬영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피해 유형과 특징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다양한 중복피해를 동반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대응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 최근 6년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를 살펴보면, 디지털 성폭력 관련 건은 2011년도 5.5%에서 2016년 6.9%에 이르기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⁶ 경찰청 통계를 보더라도 카메라 이용 촬영의 경우 2010년도에 비해 2016년 신고 건수가 6배나 증가하였고, 특히 2016년도 <경찰백서>를 보면, 사이버 음란물에 해당하는 불법콘텐츠 관련 신고는 4,244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검거된 건만 3,474건임을 감안하면 사이버 상으로 유포되는 추가 범죄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6) 전체 성폭력 상담 건 수 중, 카메라 이용 촬영은 2013년 1.8%, 2014년 1.9%를 제외하고는 매해 2%이상으로 나타나다가, 가장 최근인 2015년은 3.8%, 2016년은 4.3%로 더욱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통신매체 이용 음란은 매해 2.3%(2012)에서 3.7%(2013)사이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6년에는 2.6%로 나타났다. 전체 합계로 보면 2011년 64건(5.5%)에서 2016년 93건(6.9%)으로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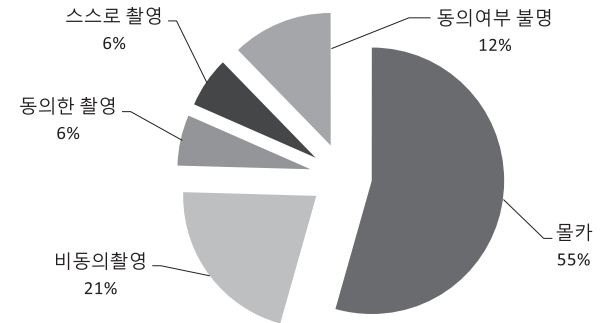
〈표 1〉 한국성폭력상담소 연도별 디지털 성폭력 관련 상담통계(2011~16) (단위: 건 (%))

연도	가해유형	연령					계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2011년	카메라 이용 촬영	22 (1.9)	3 (0.3)	1 (0.1)	-	1 (0.1)	27 (2.3)
	통신매체 이용 음란	22 (1.9)	12 (1.0)	1 (0.1)	1 (0.1)	1 (0.1)	37 (3.2)
2012년	카메라 이용 촬영	26 (2.0)	4 (0.3)	1 (0.1)	-	2 (0.2)	33 (2.5)
	통신매체 이용 음란	24 (1.8)	4 (0.3)	3 (0.2)	-	-	31 (2.3)
2013년	카메라 이용 촬영	20 (1.4)	6 (0.4)	-	-	-	26 (1.8)
	통신매체 이용 음란	32 (2.3)	7 (0.5)	2 (0.1)	-	11 (0.8)	52 (3.7)
2014년	카메라 이용 촬영	23 (1.6)	4 (0.3)	1 (0.1)	-	-	28 (1.9)
	통신매체 이용 음란	29 (2.0)	6 (0.4)	3 (0.2)	-	1 (0.1)	39 (2.7)
2015년	카메라 이용 촬영	38 (2.9)	3 (0.2)	1 (0.05)	-	8 (0.6)	50 (3.8)
	통신매체 이용 음란	22 (1.7)	6 (0.5)	2 (0.15)	-	10 (0.8)	40 (3.2)
2016년	카메라 이용 촬영	50 (3.7)	7 (0.5)	-	-	1 (0.1)	58 (4.3)
	통신매체 이용 음란	27 (2.0)	6 (0.4)	1 (0.1)	-	1 (0.1)	35 (2.6)

● 촬영부터 유포까지 : 카메라 이용 촬영⁷

카메라 이용 촬영을 촬영행위별로 살펴보면, 이른바 ‘몰카’(가해자의 촬영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54.4%(62/114건)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비동의 촬영(가해자의 촬영을 인지하였으나 촬영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은 21.1%(24건), 동의한 촬영(촬영은 동의했으나 이후 유포 또는 유포 협박으로 인한 피해인 경우)은 6.1%(7건), 피해자가 자진 촬영하여 전송한 경우는 6.1%(7건), 동의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는 12.3%(14건)로 집계된다.⁸

〈그림 1〉 카메라 이용 촬영행위 유형



7) 2015~16년 상담소 연간통계 보도 자료와 본 세부통계에는 표본의 차이가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2015년 도에는 가해자교육 2건을 포함시켜 상담건수로 책정하였으나, 2016년도부터는 가해자교육은 상담일지와 별도로 일자관리를 하는 것으로 내부지침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본 통계분석에는 2015년도 2건의 가해자교육을 제외하고, 타 범죄(통신매체 이용 음란)에 해당하는 유형 중 카메라 이용 촬영에 포함되는 2건을 추가하여 전체 총 50건은 변화 없으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보에는 차이가 생겼다. 또한 2016년도 상담일지 상으로는 카메라 이용 촬영이 58건으로 집계되었으나, 타 범죄(통신매체 이용 음란)에 해당하는 유형 중 카메라 이용 촬영에 포함되는 6건을 추가하여 총 64건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2015~16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연간통계 보도 자료에는 총 108건으로 집계되었으나 본 분석에서는 총 114건으로 다소 높게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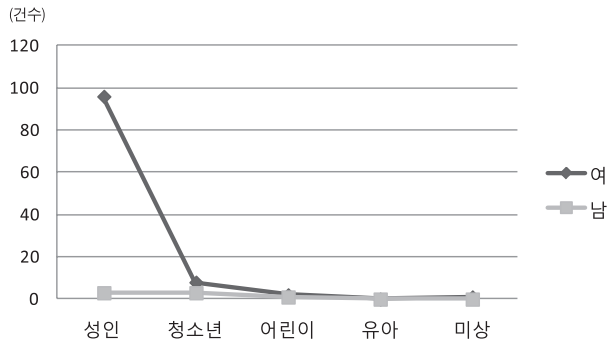
8) 동의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대부분은 P2P사이트에 유출된 피해이며, 1건은 아동음란물 소지로 기소된 건이다. 피해자가 자진 촬영하여 전송한 경우는 가해자가 채팅 상태 또는 데이트 상대로 친밀한 관계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서로 주고받은 뒤 유포나 유포 협박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피해자 대다수(93.9%)가 여성인 명백한 여성대상범죄

성폭력의 행위 유형은 다양하지만 성별 간 위계가 주요 발생 원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 중에서도 카메라 이용 촬영은 여-피해자/남-가해자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젠더폭력의 양상을 보인다. 2015~16년에 이뤄진 전체 상담 중 여기에 해당하는 성폭력 상담 건수는 총 114건으로, 그 중 성인 여성(84.2%) 피해가 대부분이었다.

남성 피해자의 경우, 2015년도에는 6%(3건)였는데 모두 아동·청소년이었고, 가해자는 동급생이거나 학교 내 선배 등이었다. 반면, 2016년도 남성 피해자는 6.3%(4건)로, 그 중에서도 성인 피해가 4건 중 3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성 피해에서 가해자의 성별은 1건은 여성, 1건은 남성으로 각각 지인에 의한 피해였으며, 다른 1건은 P2P사이트에 성관계 영상이 불법 촬영되어 유포된 경우, 다른 1건은 가해자 정보가 부족하여 성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그림 2〉 카메라 이용 촬영 피해자 성별, 연령



〈표 2〉 카메라 이용 촬영 피해자 성별, 연령 (단위: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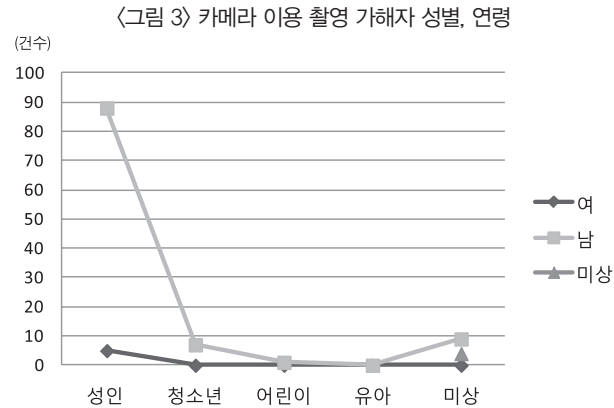
연령대 성별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총계
	(20세이상)	(19세-14세)	(13세-8세)	(7세이하)		
여	96	8	2	-	1	107
	(84.2)	(7.0)	(1.8)	-	(0.9)	(93.9)
남	3	3	1	-	-	7
	(2.6)	(2.6)	(0.9)	-	-	(6.1)
총계	99	11	3	-	1	114
	(86.8)	(9.6)	(2.7)	-	(0.9)	(100.0)

한편, 가해자 성별은 대다수가 남성으로 이 중 성인 남성이 77.2%(88 / 114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이 6.1%(7건)로 많았고, 가해자의 성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3.5%(4건), 남성으로 추정되나 연령 등의 신원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7.9%(9건)에 달했다. 이는 주로 누가 설치했는지 모르는 카메라에 의한 피해이거나, 또는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 촬영의 대상이 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가해자가 현장에서 즉시 도주하여 미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2015년도 워터파크 사건 이후,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여성 탈의실을 불법 촬영하는 여성 가해자의 등장에 새롭게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상담 통계상으로 드러난 가해자는 여전히 남성 가해자가 대부분(92.1%)을 차지한다. 여성 가해자 5건 중 4건은 여성을 촬영한 경우로 피해자 모두 가해자의 법적 처벌을 원하고 있었다.⁹⁾ 여성 가해자-남성 피해자 1건은 남성 1인을 상대로 여러 명의 여성 친구들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다른 여성 친구들에게 유포한 경우로, 이후 사과하고 사진을 삭제한 가해자들은 제외하고

9) 여성 가해자-여성 피해자 경우는 동성친구를 촬영하여 놀릴 목적(1건), 또는 금전갈취와 협박 목적(2건)으로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연예인으로 키워주겠다며 특정 신체 부위 촬영을 감행한 뒤 삭제요구를 거절하고 잠적한 경우(1건)였다.

'신고할 테면 하라'는 일부 가해자들만을 상대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한 사례였다.



〈표 3〉 카메라 이용 촬영 가해자 성별, 연령 (단위: 건수 (%))

연령대 성별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총계
	(20세이상)	(19세-14세)	(13세-8세)	(7세이하)		
남	88 (77.2)	7 (6.1)	1 (0.9)	-	9 (7.9)	105 (92.1)
여	5 (4.4)	-	-	-	-	5 (4.4)
미상	-	-	-	-	4 (3.5)	4 (3.5)
총계	93 (81.6)	7 (6.1)	1 (0.9)	-	13 (11.4)	11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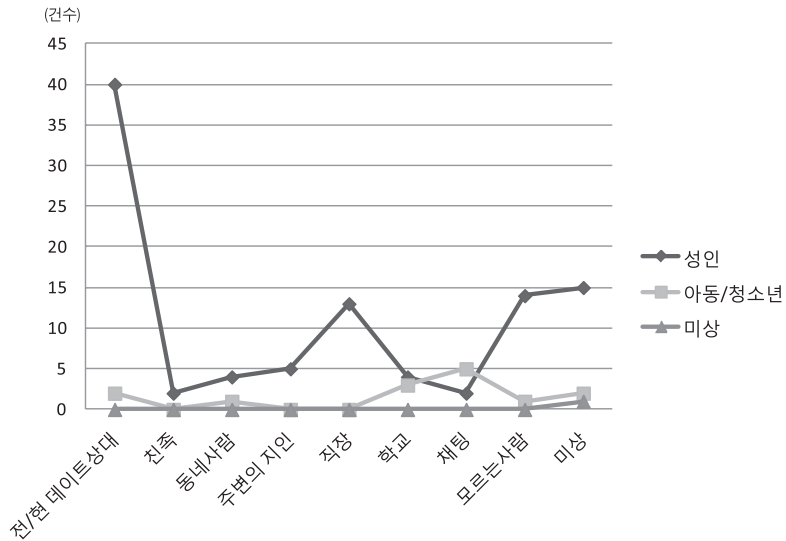
● 데이트 상대에 의한 피해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카메라 이용 촬영

카메라 이용 촬영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는 71%(81건)에 해당했다. 특히 성인 피해자의 경우 현재 또는 전 데이트 상대로부터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40%(40건)로 가장 높았다. 동의 없는 촬영은 물론, 상호 동의한 상태에서 촬영했다더라도 연애 관계 종료 이후 헤어진 상대의 허락 없이 오로지 상대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나체 또는 성관계 장면 촬영물을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¹⁰ 등이 이러한 상담에 속한다. 성인 피해자의 경우에 직장 동료 등에 의한 피해는 13.1%로 두 번째로 높았고, 학교 선후배 등으로부터의 피해도 4%로 높은 편이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된 일상적인 공간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0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겪는 피해는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어서 학교를 통해 알게 된 가해자인 경우는 21.4%(3건), 가해자가 전/현 데이트 상대는 14.3%(2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사항은 아동 이용 음란물을 소지, 유포한 가해자를 체포한 경찰이 대리인으로서 가해자교육을 위한 상담을 의뢰한 1건의 사례이다. 위 상담 내용만으로는 음란물의 제작 방법이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행위를 영상으로 촬영, 유포한 경우는 별도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기도 하다. 카메라 이용 촬영이 징역 5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반해, 아동·청소년이 음란물의 제작·배포행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명시될 만큼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된 것이다.

10) '포르노'라는 용어가 가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오히려 피해자의 책임 유발론을 함축하고 있는 문제적인 개념을 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에는 피해를 중심으로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성폭력'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DSO(디지털 성범죄 아웃)는 '유포형 성범죄'라는 용어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2017년 2월 10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열린 포럼에서 DSO 하에나 대표가 발표한 "한 번의 클릭, 한 번의 가해 : 디지털 성폭력" 본문 참조.

〈그림 4〉 카메라 이용 촬영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표 4〉 카메라 이용 촬영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단위: 건수 (%))

연령대	관계	아는 사이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전/현재 데이트상대	친족	동네 사람	주변 지인	직장	학교				채팅
성인		40	2	4	5	13	4	2	14	15	99
		(35.1)	(1.7)	(3.5)	(4.4)	(11.4)	(3.5)	(1.7)	(12.3)	(13.2)	(86.8)
아동·청소년		2	-	1	-	-	3	5	1	2	14
		(1.7)	-	(0.9)	-	-	(2.7)	(4.4)	(0.9)	(1.7)	(12.3)
미상		-	-	-	-	-	-	-	-	1	1
		-	-	-	-	-	-	-	-	(0.9)	(0.9)
총계		42	2	5	5	13	7	7	15	18	114
		(36.8)	(1.7)	(4.4)	(4.4)	(11.4)	(6.2)	(6.1)	(13.2)	(15.8)	(100.0)

● 일회성 촬영? NO! 유포협박 등 중복피해까지 심각한 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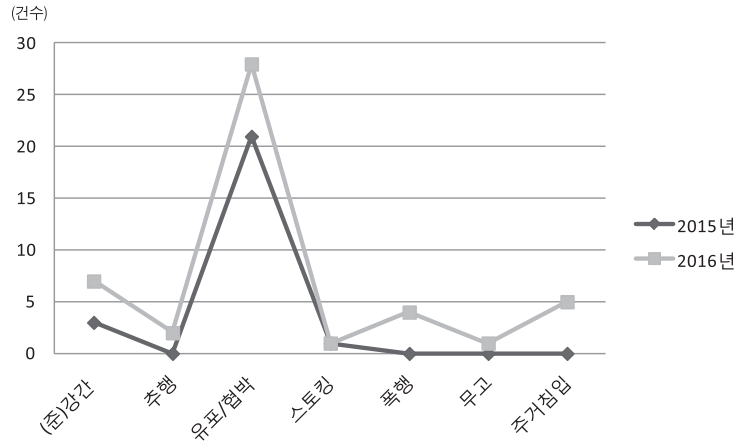
카메라 이용 촬영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 중에 다른 유형의 피해를 중복으로 경험 한 사례는 2015년도에는 46%(50건 중 23건)로, 그중 유포/유포협박을 호소하는 경우가 84%(21건)로 가장 많았다. 이 중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전송하여 관계유지를 요구하고 거절시 유포협박을 하는 경우는 7건, 피해자 외의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소라넷 등 몰카 영상 유포 사이트 등을 통해 실제 유포되었음을 호소하는 경우는 14건이었다. 몰래카메라 범죄 촬영물 유포협박을 받는 경우 실제로 영상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괴롭힘을 겪게 되고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법적 개입도 필요하다.

2016년도에는 다양한 형태의 중복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강간과 추행 피해가 있었고, 그 장면을 녹화하여 유출하는 등 촬영 당시 이미 또 다른 피해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추정케 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카메라 이용 촬영의 피해가 있었음에도 가해자가 무고로 역고소한 상태에서 상담을 요청한 사례도 1건 있어서, 향후 디지털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서 다양한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도에서 가장 주목할 사례는 ‘주거침입’과 함께 이루어진 카메라 이용 촬영의 경우이다. 헤어지기 전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물을 보유하고 있던 전 데이트 상대가 피해자를 찾아와 가족들 앞에서 추가 유포를 하거나 관계유지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고, 고시원 등 여성이 거주하는 집에 몰래 들어가 여성이 착용했던 속옷을 촬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사례는 명백히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여성의 혐오감과 모욕감을 자아낸 범행임에도 ‘타인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행법상 성폭력이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향후 보다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성폭력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카메라 이용 촬영 상담 건 수 중, 일회적 피해는 79건, 2회 이상의 지속 피해¹¹를 호소하는 경우는 31건인데, 그 중 특히 10회 이상의 지속 피해는 11건으로 모두 전/현 데이트 상대에 의한 피해였다.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이른바 수차례 촬영을 저지른 경우도 8건에 이르렀다.

〈그림 5〉 카메라 이용 촬영 중복피해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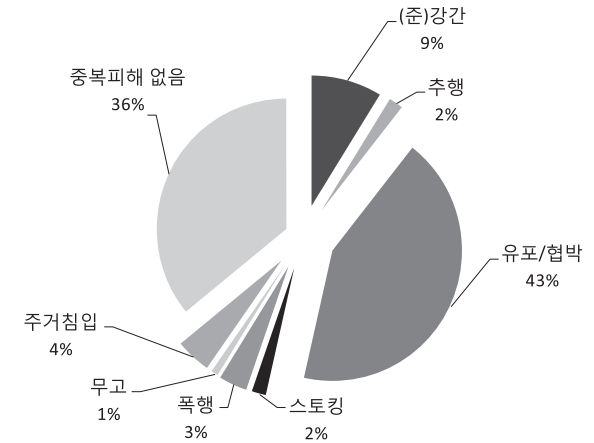


〈표 5〉 카메라 이용 촬영 중복 피해 현황 (단위: 건수 (%))

연도별	(준)강간	추행	유포협박	스토킹	폭행	무고	주거침입	합계
2015년	3	-	21	1	-	-	-	25
	(12)	-	(84)	(4)	-	-	-	(100.0)
2016년	7	2	28	1	4	1	5	48
	(14.6)	(4.2)	(58.3)	(2.1)	(8.3)	(2.1)	(10.4)	(100.0)
총계	10	2	49	2	4	1	5	73
	(13.7)	(2.7)	(67.1)	(2.7)	(5.5)	(1.4)	(6.9)	(100.0)

11) 촬영 후 유포행위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삭제 후 다시 촬영을 감행하는 경우에 해당.

〈그림 6〉 카메라 이용 촬영 중복피해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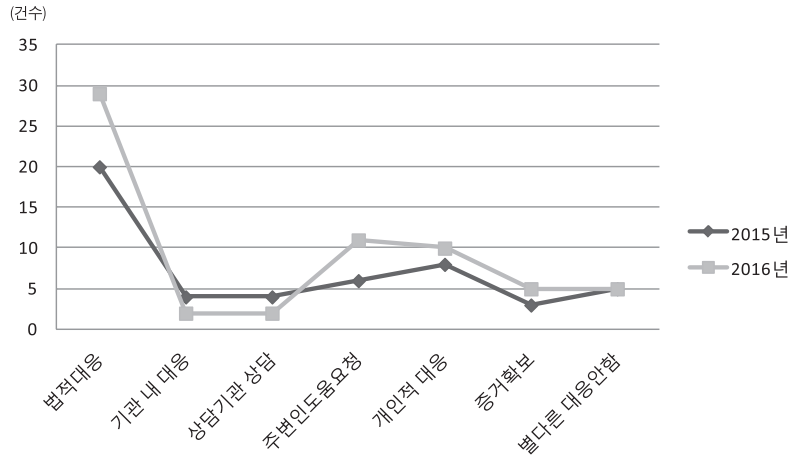


● 사법적 해결은 여전히 미진(43%)

한국성폭력상담소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피해를 인지하고도 사법적 해결과정을 거치는 경우는 37.9%에 그쳤다. 2015~16년은 사법적 해결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비교적 높아졌으나, 여전히 43%(49/114건)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찰 대신 피해자 소속 기관과 상담 기관을 포함하여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25.4%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족과 친구 등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15%에 해당했는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법적 대응이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하거나, 사적인 내용이 담긴 영상물을 신고기관에 제출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사 또는 학내 상담센터 등 기관 내 대응을 진행한 경우, 각 지역 성폭력상담소에서 대응 방법을 의논하거나 심리상담을 진행한 경우는 각각 5.2%(6건)이다.

〈그림 7〉 카메라 이용 촬영 상담 전 대응 방법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중이거나, 타인에게 유포한 정황을 확인하고 추후 신고를 위해 증거를 확보해 둔 경우는 7%(8건)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모두 증거확보과정의 불법성을 염려하고 있었다. 가해자로부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는 경우에도 실제 유포한 경우가 아니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협박만으로는 법적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제대로 처벌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사법적 해결과정을 선택하지 않(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개인적 대응은 직접 가해자에게 항의하거나 삭제를 요구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가해자에게 촬영 즉시 범행을 인지하고 바로 삭제요청과 항의를 한 경우는 15.8%(18건)이고, 그 중에는 가해자가 완전히 삭제한 것을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가해자가 복구하여 유포시킬 불안감을 호소한 경우가 8건이나 되었다. 특히 데이트 상대에게 촬영을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추가 유포가 없는 한, 개인적으로 삭제요청을 명확하게 하는 것 외에는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휴대폰에서 삭제하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더라도 폰이 동기화되어있어

자동적으로 웹 디스크에 저장되는 경우에는 일일이 추적하는 것이 쉽지 않다. 더군다나 기술적으로 사진 파일이 복원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압수수색을 요청할 방법이 없어 유포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은 매우 높다.

이처럼 동의 없는 촬영은 그 자체로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지만,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도 알아차리기 어렵다. 또한 촬영 피해를 인지하더라도 법적 대응을 시도하는 동안에 촬영물들이 인터넷에 빠르게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게 된다.

〈표 6〉 카메라 이용 촬영 상담 전 대응 방법 (단위: 건수 (%))

연도별	법적 대응	기관 내 대응	상담기관 상담	주변인 도움요청	즉시 항의	증거 확보	별다른 대응안함	합계
2015년	20	4	4	6	8	3	5	50
	(40)	(8)	(8)	(12)	(16)	(6)	(10)	(100.0)
2016년	29	2	2	11	10	5	5	64
	(45.3)	(3.1)	(3.1)	(17.2)	(15.7)	(7.8)	(7.8)	(100.0)
총계	49	6	6	17	18	8	10	114
	(43.0)	(5.2)	(5.2)	(15.0)	(15.8)	(7.0)	(8.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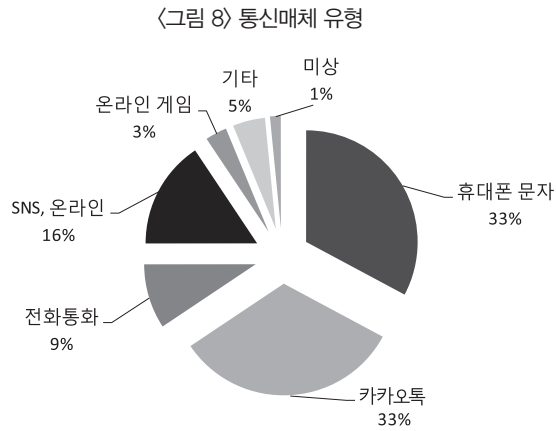
● 성희롱부터 스토킹까지 : 통신매체 이용 음란¹²⁾

통신매체 이용 음란을 우선 매체별로 살펴보면, 핸드폰 문자, 카카오톡에 의한 피해가 각각 33%(21건)로 가장 높았고, 실시간 댓글이나 채팅이 가능한 온라인 사이트, 메신저 등 SNS를 이용한 경우는 16%(10건, 이 중 페이스북 4건,

12) 2015~16년 상담소 연간통계 보도 자료와 본 세부통계에는 표본의 차이가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이는 상담일지 연간통계보고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 상담이 75건으로 집계되었으나 세부 상담내용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였을 때 카메라 이용 촬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였고, 동일 건이지만 대리인과 본인 상담이 각 1차로 잡혀있는 경우에는 1건으로 조정한 것으로 주로 상담일지 앞면의 기입된 정보만을 확인하여 집계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연간통계보고와 연구자의 표본 집계방법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메신저 1건, 그 외 온라인 채팅에 해당, 전화통화에 의한 경우가 9%(6건), 온라인 게임 내 채팅 3%(2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이메일(1건), 실시간 인터넷 방송 댓글(1건), 직접 우편으로 전송(1건)한 경우도 있었다.¹³⁾

가해자가 전송한 내용으로 살펴보면 성관계 암시나 요구, 성적 모욕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전송한 경우는 62.5%(40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중에는 성기 사진 등을 자진촬영해서 보낼 것을 요구하는 경우(6건), 중학생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경우(1건)도 포함된다. 그 외에 전화통화로 '신음 소리를 내는 경우가 4.7%(3건), 사진이나 동영상 등 촬영물 전송이 31.3%(20건)이고, 내용 미상은 1.5%(1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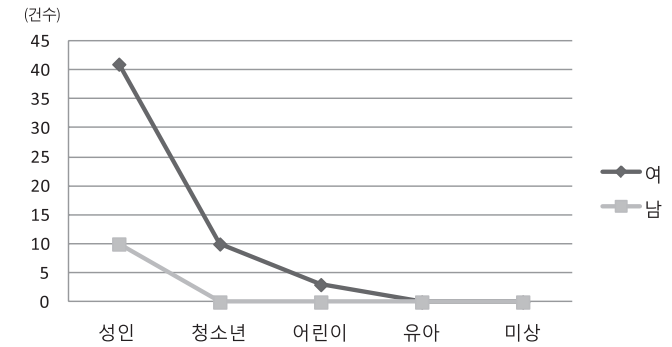


13) 미상은 총 1건으로 가해자가 상담을 요청하면서 매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경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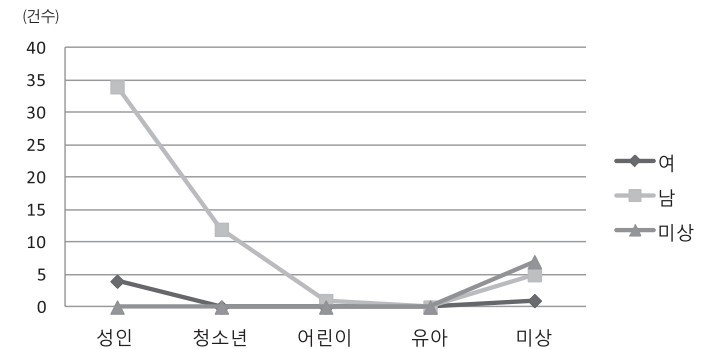
● 남성 피해도 높게(15.6%) 나타나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

2015~16년 전체 상담 중 통신매체 이용 음란에 해당하는 건은 총 64건으로, 그 중 피해자는 성인 여성이 64.1%로 가장 많았다. 남성 피해자가 15.6%(10건)로 카메라 이용 촬영(6.1%)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이들은 모두 성인이었다. 아동·청소년의 피해도 21.3%로 카메라 이용 촬영(12.3%)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 특히 남성 피해자들은 대부분 “남성 피해자도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상담으로, 여전히 사회적 통념상 남성들은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기 더욱 어렵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림 9〉 통신매체 이용 음란 피해자 성별, 연령



〈그림 10〉 통신매체 이용 음란 가해자 성별, 연령



〈표 7〉 통신매체 이용 음란 피해자 성별, 연령 (단위: 건수 (%))

성별	연령대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총계
		(20세이상)	(19세-14세)	(13세-8세)	(7세이하)		
여		41	10	3	-	-	54
		(64.1)	(15.6)	(4.7)	-	-	84.4
남		10	-	-	-	-	10
		(15.6)	-	-	-	-	(15.6)
총계		51	10	3	-	-	64
		(79.7)	(15.6)	(4.7)	-	-	(100.0)

한편, 통신매체 이용 음란에 해당하는 가해자 81.3%가 남성으로, 이 중 성인이 65.4%(21건)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청소년이 23%(12건)로 많았다. 1건이지만 아동 가해자도 있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점차 성희롱 가해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연령별 맞춤형 예방교육과 같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가해자의 성별과 연령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13.89%(5건)에 달했고, 목소리 등 가해자가 제공한 정보 등으로 가해자의 성별은 추정이 가능하나 연령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11.11%(4건)이다. 결과적으로 가해자의 성별 또는 연령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모두 25%(9건)로, 이처럼 타 범죄에 비해 가해자 특정이 어려운 점이 카메라 이용 촬영과 더불어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디지털 성폭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음란한 메시지나 사진, 영상 등을 누가 전송했는지 모르는 피해, 발신제한표시가 되어있는 문자, 또는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익명채팅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남성 피해자의 경우에 주로 가해자는 남성(6/10건)으로 나타났는데, 성매매에 유인하는 경우(2건)도 있었고, 카카오톡에 올린 사진만으로 피해자를 '여성'으로 간주하고 받기된 남성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1건)도 있었다.

〈표 8〉 통신매체 이용 음란 가해자 성별, 연령 (단위: 건수 (%))

성별	연령대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총계
		(20세이상)	(19세-14세)	(13세-8세)	(7세이하)		
여		4	-	-	-	1	5
		(6.2)	-	-	-	(1.6)	(7.8)
남		34	12	1	-	5	52
		(53.1)	(18.8)	(1.6)	-	(7.8)	81.3
미상		-	-	-	-	7	7
		-	-	-	-	(10.9)	(10.9)
총계		38	12	1	-	13	64
		(59.3)	(18.8)	(1.6)	-	(20.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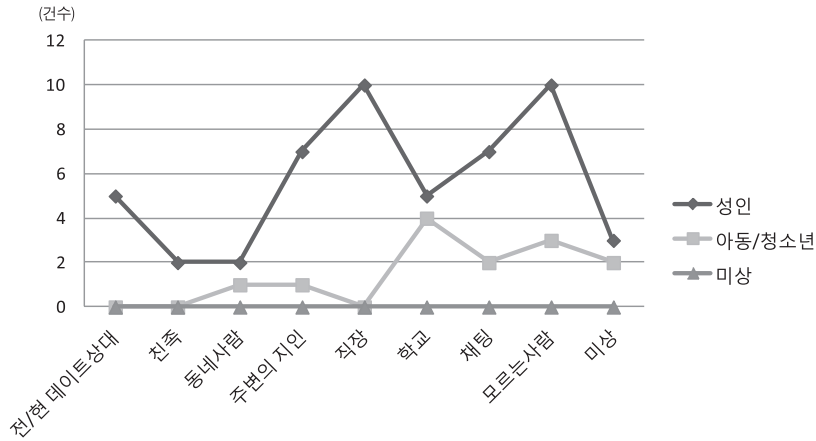
● 직장, 학교 등 오프라인의 남성중심적 문화가 만들어 낸 온라인 성폭력

온라인에서의 성폭력은 오프라인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 인권침해 실재를 고스란히 반영한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 피/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가 71.8%(46건)에 해당했다. 특히 성인 피해자의 경우, 직장과 관련 있는 상대로부터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19.6%(10건)로 가장 높았다. 직장 내 만연한 여성에 대한 성적 모욕과 비하, 성적요구를 포함한 언어적 성희롱이 핸드폰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그대로 온라인 매체로 연장된 것이다. 현/전 데이트 상대로부터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는 9.8%로 카메라 이용 촬영(40%)에 비해 낮은 편이나, 구체적인 성적 경험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성관계 요구', '관계 유지 요구' 등으로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주변인으로부터의 피해와 채팅상대로부터의 피해가 각각 13.7%(7건)로 높은 편이고, 이 역시 '데이트 관계'는 아니더라도 일회성 만남 또는 '썸' 관계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를 통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 노골적인 성적 요구를 포함하여 스토킹과 같은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의 경우는 가해자 미상(2건)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피해(3건)를 제외하면 학교와 채팅으로 알게 된 경우가 각각 30.8%(4건), 15.4%(2건)로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피해 역시 학교처럼 일상적인 공간에 만연한 왜곡된 성의식과 남성중심적 성문화가 온라인매체를 이용한 성희롱, 성폭력 행위로 나타난 것이다.

〈그림 11〉 통신매체 이용 음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표 9〉 통신매체 이용 음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단위: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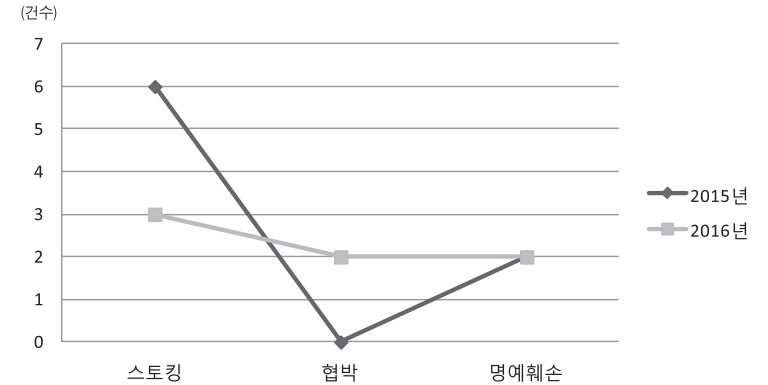
연령대	관계	아는 사이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전/현재 데이트상대	친족	동네 사람	주변 지인	직장	학교	채팅			
성인		5	2	2	7	10	5	7	10	3	51
		(7.8)	(3.1)	(3.1)	(10.9)	(15.7)	(7.8)	(10.9)	(15.7)	(4.7)	(79.7)
아동·청소년		-	-	1	1	-	4	2	3	2	13
		-	-	(1.6)	(1.6)	-	(6.2)	(3.1)	(4.7)	(3.1)	(20.3)
미상		-	-	-	-	-	-	-	-	-	-
		-	-	-	-	-	-	-	-	-	-
총계		5	2	3	8	10	9	9	13	5	64
		(7.8)	(3.1)	(4.7)	(12.5)	(15.7)	(14.0)	(14.0)	(20.4)	(7.8)	(100.0)

● 차단을 하더라도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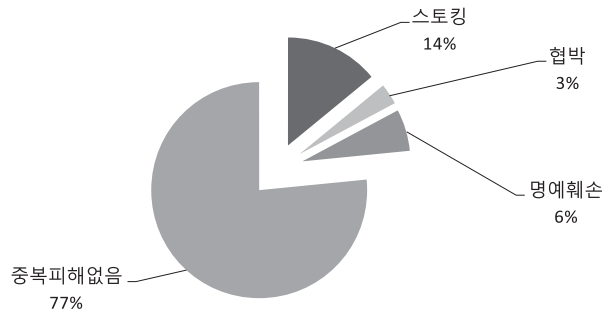
앞서 살펴봤듯, 카메라 이용 촬영의 경우 동의 없는 촬영행위로 시작하여 이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가 유포, 유포 협박하거나, 애초에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촬영하는 등 중복 피해의 현황은 매우 다양하고 높은 편(피해자의 30%가 중복 피해를 경험)으로 나타난다.

반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경우에는 다른 범죄 유형의 중복 피해가 나타나는 사례가 많지 않다. 문자 메시지, 채팅 등의 온라인 매체는 비교적 차단이 용이하고,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서 모르는 사람에 의한 무작위 대상 범행이 높게(20.4%) 나타나, 피해자의 주소지나 주변에 직접 찾아와 전혀 다른 유형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과 및 중단 요구에 가해자들은 합리화하거나, 회화화 하면서 변명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18건 중 11건)가 많지만 범행을 중단하는 경우(18건 중 7건)도 많다.

〈그림 12〉 통신매체 이용 음란 중복피해 유형



〈그림 13〉 통신매체 이용 음란 중복피해 비율



오히려 통신매체 이용 음란은 지속 피해와 동반되는 스토킹 피해가 높은 편이다. 스토킹은 단지 피해 횟수와 시기에 따른 지속적인 피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구애행위’로 정당화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줄 때까지’ 성적인 언동을 온라인 매체나 핸드폰 메시지, 음성 통화로 끊임없이 전달하는 경우이다. 피해자가 1차적으로 가해자를 차단 후에도 가해자가 다른 도구(지인의 핸드폰, 타인의 아이디 등을 아8)로 재차 동일한 형태의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피해 횟수로 보면 일회성 피해는 54.7%(35건), 2회 이상인 경우는 25%(16건), 장기간의 지속 피해는 18.7%(12건)로, 주로 일회성 피해가 많다. 지속 피해 12건 중 전 데이트 상대에 의한 피해는 4건, ‘만나줄 것을 요구하는’ 스토킹 피해 역시 4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건은 ‘관계유지에 대한 요구’와 같은 다른 목적 없이 지속적인 성희롱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예를 들어 200통 이상, 1년 이상 수 회 이상 전송, 단독방에서 성희롱 발언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표 10〉 통신매체 이용 음란 중복 피해 현황 (단위: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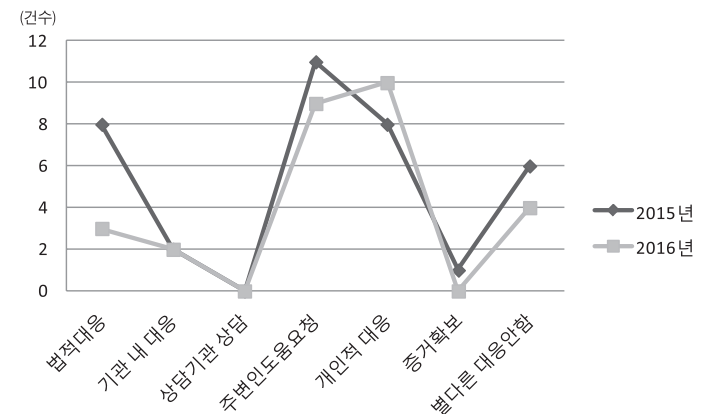
연도별	스토킹	협박	명예훼손	합계
2015년	6	-	2	8
	(16.7)	-	(5.6)	(22.3)

2016년	3	2	2	7
	(10.8)	(7.1)	(7.1)	(25.0)
총계 (64건 중)	9	2	4	15
	(14.0)	(3.1)	(6.3)	(23.4)

● 개인적 대응이 높게 나타나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메시지, 사진 전송 등으로 피해를 겪고도 사법적 해결과정을 거치는 경우는 17.2%(11/64건)로 카메라 이용 촬영(43%)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반면 ‘즉시 항의’하거나 ‘차단’하는 등 개인적인 대응은 28.1%(18건)로 높게 나타난다. 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31.3%(20건)에 해당했는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해’로 인지하고 있지 않(못하)더라도 부모가 학교 상담이나 자녀의 핸드폰을 확인하던 중 피해 사실을 인지하여 대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응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하는 경우로 가해자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매우 높게(16/20건) 나타난다. 그러나 가해자가 십대 청소년이거나, 가족관계인 경우 처벌보다는 재발방지를 위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회사 또는 학내 성평등 센터 등 기관 내 대응을 진행한 경우는 6.2%(4건)였다.

〈그림 14〉 통신매체 이용 음란 상담 전 대응 방법



물론 불쾌한 음란 메시지에 즉시 항의하고 해당 사이트 탈퇴, 차단 등 개인적 대응을 잘 하는 것만으로도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성적 모욕과 비하, 부당한 성적 요구를 '사소한 농담'이라거나 '친밀함 표시'로 이해하는 남성중심적인 왜곡된 성문화의 뿌리 자체를 삭제하고, 보다 평등한 문화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개별 여성들의 '개인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비가시화 된 데에는 여전히 개인적 차원에서 '조심할' 문제, 온라인 매체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불쾌한 경험'쯤으로 치부해온 사회 전반의 통념과 성의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표 11〉 통신매체 이용 음란 상담 전 대응 방법 (단위: 건수 (%))

연도별	법적 대응	기관 내 대응	상담기관 상담	주변인 도움요청	즉시 항의	증거 확보	별다른 대응안함	합계
2015년	8	2	-	11	8	1	6	36
	(22.2)	(5.6)	-	(30.6)	(22.2)	(2.8)	(16.6)	(100.0)
2016년	3	2	-	9	10	-	4	28
	(10.7)	(7.1)	-	(32.2)	(35.7)	-	(14.3)	(100.0)
총계	11	4	-	20	18	1	10	64
	(17.2)	(6.2)	-	(31.3)	(28.1)	(1.6)	(15.6)	(100.0)

● 디지털 성폭력에 맞서기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날이 갈수록 심각하게 확산되어 가고, 몰래 촬영된 촬영물들은 버젓이 유통사이트를 통해 거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대규모로 불법콘텐츠가 배포, 거래되는 최대 유통사이트인 소라넷은 1999년 처음 개설되어 가입자 수만 100만 명, 평균 조회 수 5만 건을 기록하면서, 2016년 1월 폐쇄되기 전까지 해외의 도메인까지 바뀌가며 수사와 체포를 피해왔다.¹⁴

이렇듯 SNS와 인터넷을 통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도구화하는 불법 촬영물들이 대규모로 유포되고 있지만, 그동안 불법 촬영물의 게시와 유포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 하더라도 진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가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수사가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물가 범죄와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짐에 따라 지금까지의 범죄 규정과 처벌의 미진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여성의 전신이나 얼굴을 촬영한 경우에는 '여성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시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학계와 여성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뜨겁게 제기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둘러싸고 '타인의 신체'를 매우 협소한 범위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남성중심적 법해석을 비판하거나(전윤경, 2016), 엄연히 촬영행위와 유포행위가 유형이 다름에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규정에 대한 문제제기(배상균, 2016)가 법조계 내에서도 활발하다. 더 나아가 여성

14) 2015년 9월부터 아바즈(AVAAZ)에서 진행된 소라넷 폐쇄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운동 서명자가 2016년 12월 당시 9만 명에 달하였다. 대대적인 청원운동과 함께 경찰의 수사의지에 힘입어 2016년 1월 최대 불법 영상물 유통사이트인 소라넷이 폐쇄되기에 이르렀고, 2017년 현재까지도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공론이 이어지고 있다. 소라넷 관련 자료는 "강신명 경찰청장이 '소라넷 폐쇄' 의지를 밝혔다", 허핑턴포스트, 2015년 11월 25일자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013회, '위험한 초대남, 소라넷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2015년 12월 26일자 방송 참조.

의 신체 부위에 대한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여성에 대한 촬영행위를 ‘이미지 착취’의 개념으로 확대하여 접근할 것을 제안(최란, 2016)하는 등, ‘촬영 행위’ 또는 ‘신체부위’에 대한 법해석과 관련된 쟁점 비판은 비교적 활발하다.

그러나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효적인 대응 방안은 부족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한 경우, 여성이 ‘입었던 속옷을 촬영’한 경우에는 성폭력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치명적인 입법의 미비점이 있다.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집을 확인한 뒤, 주거침입을 하여 여성이 입었던 속옷을 뒤져 촬영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촬영물과 함께 유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에도 성폭력으로는 규율할 방법이 없다. 현행법으로는 이 경우 주거침입만이 인정될 뿐이다. 다른 사례이지만, 일반 음식점이나 술집의 화장실은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서 규정한 공중 화장실에 해당되지 않아, 여자 화장실을 훑쳐보는 행위가 성폭력으로 처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¹⁵⁾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성적목적 공공장소 출입’ 역시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협소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추정하게 한다.

피해자들은 언제 자신이 ‘몰카’ 피해에 노출되었는지 알지 못하다가 시일이 흐른 뒤, 주변인을 통해 자신의 신체나 사적인 내용이 담긴 사진 또는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어 크나큰 심리적 후유증을 경험하기도 한다. 가해자가 삭제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 하더라도 삭제된 영상을 추후 복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두려움이 몹시 커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에 관해 김영미(2016)는 촬영매체를 몰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임을 제시하기도 한다.

IT 기술 발전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에 우리

15) “여성 용변 모습 훑쳐봤는데, 식당 화장실이면 무죄?”, MBC 뉴스, 2016년 9월 19일자.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today/article/4119398_19847.html (최종검색일: 2017년 3월 10일)

사회가 제대로 공감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대상범죄로서 디지털 성폭력의 개념정의와 용어의 통일성을 갖추고 다양한 피/가해 유형을 포괄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 확산과 법규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여성을 성적으로 도구화하고 대상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왜곡된 성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예방교육이 시급하다.



| 참고문헌 |

- 김영미(2016), “디지털 성폭력 처벌 법규 및 개선과제”, 『디지털 성폭력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2016년 11월 29일 국회토론회 자료집 참조.
- 김영철, 조현욱(2016),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부위 해당 여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57권 3호, 151-177쪽.
- 배상균(2016), “‘도촬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27권 1호, 199-227쪽.
- 전윤경(2016),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의 구성 요건 해석 및 개선방안”,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19권 3호, 113-144쪽.
- 최란(2016), “‘이미지 착취(Image Exploitation)’ 성폭력 실태와 판단기준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 성공회대학교 실천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 경찰통계연보 참조. <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141> (최종검색일: 2017. 3. 10.)
- 검찰연감 통계시스템 참조 <http://prosec.crimestats.or.kr/main/index.k2?cmd=main> (최종검색일: 2017. 3. 10)
- “강신명 경찰청장이 ‘소라넷 폐쇄’ 의지를 밝혔다”, 허핑턴포스트, 2015년 11월 25일자. http://www.huffingtonpost.kr/2015/11/25/story_n_8642928.html
- “노출 많아도 전신 사진 몰카는 무죄” 성범죄 아니다”, MBC 뉴스, 2015년 11월 16일자.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desk/article/3814804_17821.html (최종검색일: 2017. 3. 10)
- “여성 용변 모습 훑쳐봤는데, 식당 화장실이면 무죄?”, MBC 뉴스, 2016년 9월 19일자.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today/article/4119398_19847.html (최종검색일: 2017. 3. 10)
- “‘입주여성 도촬 수백장’ 고시원 총무, 성범죄는 무혐의?”, MBC 뉴스, 2015년 11월 3일자. <http://sports.kbs.co.kr/news/view.do?ncd=3175233> (최종검색일: 2017. 3. 10)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013회, 「위험한 초대남, 소라넷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2015년 12월 26일자 방송 참조.

쟁점과 입장

‘이미지 착취’ 성폭력 실태와 판단기준에 관한 비판적 분석

‘보복 포르노’ 관련 처벌 사례 및 입법 소개

디지털 성폭력 처벌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미지 착취(Image Exploitation)’ 성폭력 실태와 판단기준에 관한 비판적 분석¹⁾

최란 |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

● ‘이미지 착취’ 접근의 필요성

최근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제3자를 통해 알게 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몰래 카메라 범죄의 경우, 자신이 피해에 노출된 것을 알지 못하다가 시일이 흐른 뒤 주변인을 통해 자신의 신체나 사적인 내용 등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이 인터넷상에 퍼져 있음을 알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눈앞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한다 하더라도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사법적 해결을 밟아 가기도 쉽지 않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이하 카메라 이용 촬영)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부위를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타인에 의해 신체일부가 촬영되는 피해를 막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그 판단

1) 이 글은 다음 논문을 발췌·수정한 것입니다. 최란(2016), “‘이미지 착취(image exploitation)’ 성폭력 실태와 판단기준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 성공회대학교 실천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의 몸을 기계적으로 분할하여 판단하는 등 여러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한국의 휴대전화 이용자는 약 4천만 명이 넘고, 인터넷 속도와 보급률은 세계 1위²⁾,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률도 세계 4위를 차지한다는 조사결과³⁾가 있다. 도처에서 누구나 쉽게 자신의 휴대전화⁴⁾를 사용하여 타인을 촬영할 수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 쉽게 유포할 수 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범주화되고 있는 이러한 피해는 현재로서는 처벌의 공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경험하는 피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연구가 드물어, 기존의 성폭력 피해와 달리 그 심각성에 비해 법적, 제도적, 정책적 방안이 아직은 미비하다. 기존 법조문의 카메라 이용 촬영은 단순 촬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피해만을 성폭력으로 사고해 왔으나, 이미 기술의 변화는 이미지를 조작하거나 재생산하면서 피해를 확장시키는 행위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카메라 이용 촬영은 단순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려고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직접적인 행위만을 제재해서는 안 되는 현실에 도달해 있다. 피해의 양상과 정도에 관한 새로운 상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글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하고 판매, 임대, 제공하는 전반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현행 법규로 다루지지 않는(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방식의 디지털 기반의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행위를 ‘이미지 착취’라는 개념을 써서 분석하고자 한다. 앤더슨

2) “인터넷 강국” 코리아...속도, 보급률 모두 세계 1위”, 내외뉴스통신, 2016년 12월 16일자, <http://nbnvt.co.kr/news/view.php?idx=66428> (최종검색일: 2016. 12. 20)

3) “한국, 소셜네트워크 이용률 세계4위권”, The Science Times, 2010년 12월 17일자, http://www.sciencetimes.co.kr/?p=90322&cat=37&post_type=news&paged=88 (최종검색일: 2016. 12. 20)

4) 기존 휴대전화 기기에 설치된 카메라는 촬영시 반드시 촬영음이 나도록 되어 있지만, 음소거가 가능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면서 상대 모르게 촬영하는 행위는 손쉬워졌다. 디지털 기기의 발전에 따라 USB 크기의 캠코더부터 액자 캠코더, 자동차 키 캠코더, 탁상시계 캠코더, 벽 스위치형 캠코더까지 초소형 크기의 촬영 기기를 쉽게 구할 수 있다.

(Anderson, 2015)은 ‘이미지 착취(image exploitation)’를 성적 학대의 뚜렷한 형태라고 지적하고, 피해자의 나체사진, 신체 일부, 합의된 성관계, 성폭력 등으로 묘사된 이미지 또는 동의하지 않은 이미지의 생산, 소지 또는 배포를 포함한 행위로 정의한다. ‘이미지 착취’는 한국에서 몰래카메라나 도촬이니 하는 협소화된 성폭력 피해를 이미지의 생산 외에 소지 또는 배포하는 행위까지 확장하여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존의 성폭력에서 다뤄지지 않은 피해를 정의하는 개념이다.

물론 법체계 안에서 모든 피해를 규제할 수 없고, 모든 피해를 법으로 제재하는 것이 젠더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피해를 예방하는 유일한 해결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법체계의 변화는 한 사회, 한 시대 구성원들의 인식 수준을 반영하는 척도이자, 인식을 구성하는 기제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새롭게 명명된 성폭력 피해를 어떻게 법체계가 해석하고 구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견고한 젠더 체계를 뒤틀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 ‘이미지 착취’ 성폭력 피해의 실태와 판단기준

‘이미지 착취’ 성폭력 피해는 한국 내 현행 법 체계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규율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카메라 이용 촬영은 2010년 1,134건, 2014년에는 6,623건이 신고되어 지난 5년간 6배 정도 신고율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기소율은 32.1%에 불과해 몰래 카메라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검찰청 <2015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4년 집계된 성범죄 가운데 42.2%가 강제추행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24.1%, 강간이 17.1%로 뒤를 이었다. 카메라 이용 촬영의 경우 2005년 341건에서 2014년 6,735건으로 지난 10년 동안 20배 가까이 증가하여 성범죄 증가추세를 더욱

높였다고 볼 수 있다(유진, 2016: 102). 신고율의 증가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디지털 기반 서비스의 확대와 그로 인한 피해 증가, 이에 대응하는 피해자들의 인식변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기소율이 낮은 까닭은 다른 성범죄와 비교하여 카메라 이용 촬영이 다소 경미하다고 여기는 사회문화적인 태도와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법기관의 인식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2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카메라 이용 촬영 1,940건 가운데 69.7%가 기소되었는데 해마다 기소율이 낮아져 2013년 54.5%, 2014년 44.8%, 2016년 7월 32.1%로 3년 동안 기소율이 절반 넘게 떨어졌다.⁵ 성폭력 범죄의 기소율이 낮아 처벌의 확실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카메라 이용 촬영의 신고율이 높아짐과 동시에 기소율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피해의 발생정도에 비례하여 기소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처벌 법규가 처벌의 확실성을 담보하기보다는 처벌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뜻이다.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재범 위험성을 높여 오히려 피해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카메라 이용 촬영으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은 피고인 중 2회 이상 재범을 한 비율은 53.83%에 이르고, 5차례 이상 재범한 비율은 31.23%⁶나 되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 이용 촬영의 보호 법익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합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판결). 카메라 이용 촬영의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

5) “몰카 범죄 증가하는데...기소율은 3년간 절반으로 ‘뚝’ 떨어져”, the 300, 2015년 10월 12일자,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10116337654543> (최종검색일: 2016. 11. 23)

6) “몰카 범죄, ‘재범비율’ 높지만 ‘처벌 수위’ 지나치게 낮아”, 서울경제, 2016년 9월 26일자, <http://www.sedaily.com/NewsView/1L1KH6U422> (최종검색일: 2016. 11. 15)

지 여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이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대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해당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피해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촬영장소 및 각도, 거리 등 촬영된 이미지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합적 판단은 재판관의 재량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 보이듯이 그 결정에 있어서 피해자 및 국민의 법 감정에 합치되지 않는 점도 있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배상균, 2016: 207).

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이용 촬영은 어떻게, 누가, 어디를 찍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등 법체계에서 일관되지 못한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법에서 판단하는 ‘이미지 착취’ 성폭력 피해를 판단하는 기준의 ‘합리성’은 비판적으로 분석되어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 ‘이미지 착취’ 성폭력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

● 성적 욕망과 성적 수치심이라는 판단기준의 문제점

‘성적 욕망’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욕구 중 하나로, ‘자연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 코넬(Connell, 1995)은 성적 욕망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프로이트적 관점에서처럼 욕망을 한 사물에 귀착된 감정적

에너지라고 생각할 경우 욕망의 젠더화된 속성은 분명해진다고 지적한다. 욕망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모든 실천들은 젠더 질서의 한 측면이고, 따라서 관계가 동의에 의한 것인지 억압에 의한 것인지, 또는 즐거움을 똑같이 주고받았는지 등에 대해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원화된 젠더 규범 아래서 남성은 성적 욕망을 갖고 실천할 수 있지만 이에 반해 여성은 성적 욕망을 가져서도 이를 실천할 수도 없다. 결국 성적 욕망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남성이고 그 상대는 여성이 된다. 이는 성폭력에 대한 판결문에 자주 등장하는 ‘성욕을 참지 못하고’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남성의 참을 수 없는 성적 욕망이 성폭력의 원인이라는 강고한 믿음은 성폭력 피해에 대한 통념을 강화해왔다. 이 통념은 성폭력을 폭력 사건이 아니라 사소한 문제로 여기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성적 욕망을 일으킬 만하게 피해자가 유발하였다는 ‘피해자 유발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성적 욕망이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적용되면서 이와 같은 성폭력 피해에 대한 통념은 법체계 내에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남성의 시각에서 구성될 수밖에 없는 성적 욕망은 여성의 몸을 성적인 부위와 성적이지 않은 부위로 분절화하였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라는 관념은 피해자를 이분화하고 있다. 2015년 헌법 재판소는 구(舊)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 제청 사건에서, 위 법률 제2조 제4항 다 항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규범적으로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는 음란한 행위의 의미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헌재 2015. 6. 25. 2013헌가17). ‘음란’이라는 개념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구체적인 판단에서는 사회통념상 보통 사람들의 정서를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이

는 일정한 가치판단에 기초하여 정리할 수 있는 규범적인 개념이므로, ‘음란’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표현물의 음란성 여부도 중국적으로 법원이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2006도3558). 즉, 한국 법체계 내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일으키는 행위는 음란한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그 판단의 주체는 중국적으로 법원이다.

그러나 법체계에서 말하는 ‘보통인’의 기준이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 등에 대한 판단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이를 법관의 가치판단에 기초하여 정리할 수 있는 규범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판단기준의 ‘합리성’이 누구의 관점인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맥키닌(Catharine A. Mackinnon, 1989)은 여성에게 성의 자유, 프라이버시, 동의와 같은 환상을 심어주는 자유주의 국가나 법 담론의 패러다임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시하는데, 법은 현실의 성 정치와 동떨어질 수 없는 권력적 상황이고 개입을 통해 바뀌어야 할 것이며, 법의 규범성은 남성의 관점을 표상하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신상숙, 2001: 14 재인용). 다시 말해, 법체계에서 말하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규범적 판단은 남성의 관점을 표상하는 이데올로기이다.

● ‘이미지 착취’ 판례 분석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 이용 촬영으로 기소된 사례 중, 무죄 판결을 받은 9개의 사례와 2013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이뤄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일지 중 카메라 이용 촬영에 해당하는 사례 총 84건을 중심으로 법체계 내에서 판단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였다.

● 여성에 대한 구조적 억압 강화 기제로서의 특정한 신체부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이용 촬영의 기존 판례를 살펴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는 피해자의 무릎 위 허벅다리 부분, 등 부위, 치마 속 부분, 치마 밑 다리 부위, 엉덩이 부위 등으로 한정(김영철·조현욱, 2016: 158-159)되어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일지에서 카메라 이용 촬영에 해당하는 사례 중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는 76건(90.5%)이었고,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는 76건(90.5%)으로 성별화(gendered)된 피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감안하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 또한 ‘여성의 몸을 둘러싼 판단기준임을 알 수 있는데, 여성의 무릎 위 허벅다리 부분, 등 부위, 치마 속 부분, 치마 밑 다리 부위, 엉덩이 부위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이미지 착취’ 성폭력 피해로 인정된다.

또한 카메라 이용 촬영의 판단 기준에서,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미지는 성폭력 처벌법 상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사례 1〉

또한 피고인은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며 (...)

1심 국민참여재판 판결문, 벌금 400만원, 일부 무죄

〈사례 2〉

모두 근접한 거리에서 여성들 신체의 특정부위를 특정 각도에서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

1심 판결문, 벌금 150만원, 일부 무죄

〈사례 1〉의 경우, 자동차 안에서 윈피스를 입고 있는 여성의 서 있는 전체적인 앞모습과 상반신을 촬영한 이미지였는데, 재판부는 이 중 5차례 촬영된 이미지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은 이 중 2장은 전체 무죄, 1장은 전체 유죄, 2장은 유무죄의 의견이 나뉘

는 등의 평결을 하였다. 이와 같이 누구의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당 이미지 자체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인지 아닌지 판단이 달라질 소지가 다분하다.

〈사례 2〉의 경우 피고인은 50여 회 촬영하였는데, 먼 거리나 다소 떨어진 거리 등 가까이에서 촬영되지 않은 이미지의 경우, 가해자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가 다소 상쇄된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일반 휴대전화로 찍은 이미지도 확대하여 특정 부위만을 부각시킨 이미지로 조작 가능하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촬영 당시의 이미지가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특별히 다리 부분을 부각시켜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얼마든지 특별히 다리 부분을 부각시킨 이미지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음이 고려되어야 한다.

수잔 브라운밀러는 “강간은 모든 남성들이 모든 여성들을 공포의 상태에 있게 하기 위한 위협(脅박)의 의식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⁶⁾. Brownmiller, 1990: 18).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촬영했고 이 촬영물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이로 인해 여성들에게 끊임없이 스스로 조심하라는 통제적 효과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은 여성의 삶을 통제하고 여성 집단에 대한 구조적 억압을 강화하는 기제로 활용되고 있다.

● 장소, 공간, 일상을 침범하는 중층적 괴롭힘

〈사례 1〉의 경우, 피고인은 약 한 달 동안 5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부위를 50여 회 촬영하고, 모두 13회에 걸쳐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재판부는 해당 사진들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뒷모습과 엉덩이, 다리 등을 부각시킨 사진을 찍었고, 이를 인터넷 공개 게시판에 ‘모르는 여자를 따라가다’라

는 제목을 붙여 유포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피고인은 특정한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나 동기라기보다 ‘모르는 여성’을 촬영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였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모르는 여성’의 뒷모습, 앞모습, 옆모습을 촬영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피고인은 특정 부위를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라는 판단 기준에 근거해 유죄판단을 받았고, 그 외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례 1〉

(…) 피해자의 상체 일부만 촬영된 것이고, 영상 자체만 보더라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다.

1심 국민참여재판 판결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벌금 400만원, 일부 무죄

지하철이나 노상, 공공장소 등 안전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길거리 괴롭힘(street harassment)’은 성적으로 여성의 몸이나 성적 행동을 언급하는 것부터 쳐다보기, 따라가기, 응시, 휘파람 등⁷⁾을 포괄하는데, 길거리나 공중목욕탕,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이미지 착취’ 성폭력 피해는 길거리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괴롭힘의 한 유형이기도 하다.

여기서 소수자의 위치에서 겪는 여성들의 다양한 차별과 폭력의 유형으로 ‘이미지 착취’ 피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모르는 사람에 의해 공공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촬영의 경우, 그 피해 양상이 법적 판단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험일 수 있다. 그리고 단순히 카메라 등 기계장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가 다른 괴롭힘, 다른 폭력 유형과 동시

7) 헤벤(Tiffanie Heben, 1994)은 “A Radical Reshaping of the Law: Interpreting and Remediating Street Harassment”에서 ‘길거리 괴롭힘’을 그 심각성에 따라 최소부터 최고까지 분류하였는데, ‘쳐다보기’, ‘젠더를 이유로 여성을 모욕하는 것’, ‘따라가기, 물건 던지기, 꼬집기, 찌르기 등의 신체적인 행동들’ 등이 그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지민, 유현미, 조소연(2016), 『공공장소 SEXISM : 소수자 괴롭힘과 시민성, 길거리 괴롭힘 연구 포럼』, 자료집(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발행) 참고.

에 또는 중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주관적 통념에 기반한 노출 정도

〈사례 3〉의 경우, 피해자의 옷차림 정도를 설명하는 내용이 다소 구체적이다. 무릎 위 다리를 촬영한 경우 이전의 판례에서는 유죄로 인정⁸⁾되었기 때문에 이 사례가 무죄로 판단된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사례 3〉

피해자는 20대 여성으로 비록 짧은 원피스를 입었으나 같은 연령대 여성의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노출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지하철 전동차 좌석에서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에 올려놓은 뒤 다리 사이에 소형 파우치를 올려놓아 노출된 허벅지 일부를 가렸고, 이어폰을 꼽은 채 핸드폰으로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앉아 있었는데, 이와 같은 자세는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킨다기보다는 사람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에 가깝다.

1심 국민참여재판 판결문, 무죄

특히 소형 파우치로 허벅지 일부를 가린 피해자의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이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인데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어찌된 일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문이 ‘이미지 착취’ 피해의 판단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비판의 근거이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노출이 통상적인 수준인지, 노출된 어떤 신체부위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는 카메라 이용 촬영 양형 기준의 문제는 될 수 있어도 유무죄 판단근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희영(2015)은 “(타인을) 찍어 보관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쾌감을 야기하는데 이는 성적 수치심과 따로 떼어 판단할 수 없으므로 촬영

8)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무릎 위 허벅다리 부분은 성폭력 특별법 제 14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영장소가 공공장소인지 아닌지, 촬영물 전신인지 신체 일부인지, 노출이 심한지 아닌지, 촬영 각도가 어떠한지, 원거리 촬영인지 근접촬영인지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양형기준이라면 몰라도 유무죄 판단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 친밀한 관계에서 동의와 비동의로 구성되는 강제성

친밀한 관계에서 ‘이미지 착취’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경우, 촬영 당시 피해자가 동의하였는지 동의하지 않았는지가 유무죄 판단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고려되고 있다. 〈사례 4〉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피해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잠든 사이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해자의 지속적인 촬영 요구에 피해자가 귀찮은 마음이 들어 ‘마음대로 하라’고 한 것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사례 4〉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으나,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피고인이 계속하여 나체 사진을 찍게 해달라고 보채어,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넘기다가 잠결에 또 귀찮은 마음이 들기도 하여 결국 마음대로 하라고 한 적이 한번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것은 피해자의 동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심 판결문, 벌금 100만원, 일부 무죄

장다혜(2003)는 근대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법체계 안에서 ‘동의’가 자유와 선택의 문제이지만, 강간죄에서의 동의/비동의의 구분선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강제력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저항의 여부가 동의의 여부로, 즉 판단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예컨대, 피해 여성의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여성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거나 이를 억압

할 정도의 강제력이 없었다면 강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변혜정(2007)은 아는 관계에서 ‘원하지 않아도/동의하지 않아도’ 남성들의 강제적인 성적 추구방식에 여성 피해자들이 ‘저항하지 않는/못하는’ 맥락을 분석하면서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성별화된 구조 안에서 동의와 거부 사이에 틈새가 존재함을 지적한다. 성별화된 섹슈얼리티 구조 안에서 여성의 성은 ‘거부하지 않는(주체적으로 참여/동의)’ 성과 ‘거부한(원하지 않는)’ 성 사이에 ‘거부하지 않는/못하는’ 성이 존재하는 데에 반하여, 남성은 ‘주체적으로 참여한’ 성과 ‘원하지 않는’ 성만이 존재하여 ‘거부하는 하지 않는/못하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이해하지 못한다(변혜정, 2007: 66-67). 특히 폭력 발생을 동의 여부의 기준으로 파악하는 자유주의 법체계 내에서 동의와 공모와 협조를 요구받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고려가 없는 현재의 상황은 원하지 않은 여성의 피해를 설명하지 못한다.

● 유포 범위 확장을 통한 피해의 확산

‘이미지 착취’ 성폭력 실태를 통해 이미지나 영상의 유포 범위는 단순 유포에서 그치지 않고 확장·재생산되어 피해를 확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범위 구분을 통해 1차, 2차, 3차 유포 범위로 분류해볼 수 있었다. 1차 유포 범위는 이미지나 영상 촬영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경우로, 가해자의 블로그나 SNS, 문자 등을 통해 유포된 경우이며 이러한 유포 피해의 경우에는 가해자 특정이 가능하여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피해 권리 보장이 가능하다. 2차 유포 범위는 이미지를 직접 촬영한 가해자가 아닌 또 다른 행위자가 1차 유포된 이미지나 영상을 인터넷 사이트나 P2P사이트로 옮겨 또 다시 유포를 확산하는 경우로 가해자 특정도 어렵고, 이미 유포 범위를 추산하기도 어려워 지속적인 피해에 노출되게 된다. 2차 유포 범위에 해당하는 피해의 경우, 주변사람들이 자신을 해당 이미지나 동영상에 등장한 사람임을 알게 되면서 2차 피해를 심각하게 겪고 있었다. 3차 유포 범위는 이미

지나 영상이 인터넷에서 확산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상업적 목적 등에 의해 이미지나 영상이 재생산되어 유포된 경우였다. 전 데이트 상대와 동의하에 촬영한 이미지나 영상이 유포되어 성매매 목적의 광고 사이트에 활용되는 피해 등이 이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유포 범위를 확장하면서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과 달리, 현재 법조문 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수단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촬영물로 정의되어 있다.

〈사례 5〉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 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상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은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

대법원 판결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무죄

〈사례 5〉는 피해자가 스스로 화상 카메라에 비춘 신체부위를 가해자가 재촬영하여 저장한 것이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1심에서 3심까지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의 판단 근거에 따르면, 한 번 촬영된 이미지를 다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재촬영하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재생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하게 된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을 하였든지, 화상채팅 시스템을 통해 수신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를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카메라로 재촬영하였는지 관계 없이 이는 명백한 ‘촬영’ 행위에 해당한다.

● 보복성 위협의 도구

‘이미지 착취’ 성폭력 피해는 이미지 자체가 보복성 위협의 도구로 활용되기 쉽다는 것이 특징이다. <사례 6>은 피해자가 스스로 찍어 보내준 나체사진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이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였는데 무죄로 판결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00사이트 캐릭터 사진으로 위 나체사진을 지정한 다음 피해자의 딸이 쓴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나체사진을 전시하였다. 원심은 유죄로 판결하였으나,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사례 6>

피해자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거울에 비친 자신의 나체를 촬영한 후 그 사진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00 계정 캐릭터 사진으로 지정한 다음 피해자의 딸의 000 동영상에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위 나체 사진이 전시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나체 사진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무죄

<사례 6>의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던 가해자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친밀한 관계에서 사진을 전송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이미지가 타인에게 유포되거나 이를 근거로 하여 성적 권리를 침해당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정리된 이후 가해자는 보복성 의도를 가지고 이전에 전송받아 보관하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였다. 문제는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구성요건이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직접 사진을 찍어 전송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

한 촬영물이 아니므로 이 사건이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자신을 촬영한 본인의 나체 사진을 친밀한 관계였던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이후 그 사진이 협박의 빌미가 되거나 결국 유포되어 악용되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상의 공백으로 볼 수밖에 없다(이희영, 2016: 39). 본인이 스스로 찍은 사진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배포된 이미지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한 현행법은 ‘이미지 착취’ 피해를 통한 보복성 위협 등 피해자가 겪고 있는 구체적 피해의 현실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한 번 촬영된 촬영물이 삭제되더라도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는 디지털 복구 기술의 발전과 날로 발전하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다양화 추세에 비추어 봤을 때 현행 법규상, 해석상 공백이 존재한다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다.

● 가해자 서사를 정당화해주는 말, ‘성적 욕망’

<사례 7>의 가해자는 자신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게 된 목적과 의도를 피해자의 모습에 호감을 느낀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아름다운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자신도 모르게 카메라 셔터를 누르게 된 것이라는 가해자의 서사는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사례 7>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모습에 호감을 느껴 장래 자신의 반려자도 유사한 모습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그 사진을 간직하고자 피해자의 전체적인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1심 국민참여재판, 무죄

〈사례 7〉의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해자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장래 자신의 반려자도 유사한 모습이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사진을 간직하고자 촬영하였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해자가 가해의 목적을 가졌기보다는 남성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성적 호감 때문일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성폭력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통념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에 대한 불신을 낳고 가해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의 기초가 된다. 남성들의 고정관념은 ‘진정한 강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이다(Ross, 1996; 김정혜, 2016 재인용). 강간과 같은 성폭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폭력 피해 유형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통념은 남성의 성적 욕망이 성적인 폭력 상황을 만들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강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은 남성의 성욕을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요인을 여성이 제공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으로 이어진다. 지나가는 모르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행위가 가능한 것은 그 피해 여성의 옷차림이 노출이 심하였다거나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어서 촬영을 기꺼이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왜곡된 믿음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호소보다 가해자의 남성 중심적 서사를 용인하도록 만든다. 그에 덧붙여 장래의 반려자도 유사한 모습이기를 바랐다는 가해자의 서사는 이성애적 질서를 정상적인 관계로 상정하는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남성성의 규범적 실천으로 이해된다.

● 몇 가지 제언들

‘이미지 착취’ 성폭력 피해에 대한 처벌 법규는 미비하지만, 현행 법규만으로도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행법의 성폭력 처벌법 제13조와 제14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 등 관련 법률을 통해 동의 없이 촬영된 이미지와 해당 이미지의 유포·판매 등은 범죄로 처벌된다. 그러나 법 제도가 보완되어도 피해자의 경험이 반영된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것은, 법보다 더디게 변화하는 인식에 있을 것이다. 법 실무를 담당하는 법관의 감수성 변화는 피해자의 권리를 확장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데 무엇보다 필요한 요소이다.

또한 ‘이미지 착취’ 성폭력 피해를 판단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라는 판단기준은 삭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판단기준은 이원화된 젠더규범 아래서 성폭력을 정상적인 남성성의 실천으로 용인하는 통념을 재생산하는 기제이며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욕망할 수 있다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이 판단기준은 일관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피해의 심각성과 무관하게 가해자들의 동기와 목적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가해자들의 서사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리고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성폭력 피해자들이 느껴야 하는 감정으로 보고 법 판단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성폭력 피해는 여성이라면 수치스러워해야 하는 피해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 여성들이 ‘이미지 착취’ 성폭력 피해를 분노가 아니라 수치심을 주는 피해로 인식할 때 비로소 법적 처벌의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수치심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피해자와 그렇지 않은 피해자를 양분하고 있다. ‘이미지 착취’ 성폭력 피해의 보호법익이 성

적 자기결정권, 그리고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라고 했을 때, 이를 위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라는 판단기준은 삭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지 조작 및 재생산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미지 착취'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유포 가능성이 있다. 한 번 촬영된 이미지가 얼마든지 이후에 유포될 수 있다는 사실, 사진과 동영상의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될 가능성, 그래서 그 이미지가 자신을 평생 따라다닐 수 있다는 두려움을 매우 심각하게 보아야 한다.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된 이미지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피해자 권리회복에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행 법규상 유포되지 않고 단순히 기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1차 유포자 외에 2차, 3차 유포자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규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컨대, 누군가가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전달받은 제3자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

스위스의 경우, 범죄행위로 획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인수해야 하는 자가 그 사실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범죄행위를 통하여 제작된 촬영물을 보관하거나 제3자에게 접근 가능토록하게 하는 행위도 모두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박희영, 2006: 276). 캐나다의 경우에도 범죄 행위로 인해 얻은 기록임을 알면서 이를 인쇄, 복제, 간행, 배포, 유통, 판매, 광고 또는 이용 가능한 상태로 두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기록을 소지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되어(배상균, 2016: 210) 있다. '이미지 착취' 성폭력 피해의 형태가 다변화되고 있는 현실과 유포를 통한 피해의 확산, '야동' 소비 메커니즘을 고려했을 때 기록을 소지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접 촬영하지 않고도 이미지를 조작, 재생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착취' 성폭력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지 착취' 성폭력의 예방일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여성을 성적 객체화하고 해당 이미지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며, 해당 이미지를 주고받는 공모적 위치에 있지 않도록 일상의 젠더 감수성을 높이고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누구도 상대의 동의 없이 상대를 함부로 찍지 않는다면, 누구도 상대의 동의 없이 찍힌 사진이나 영상물이나 이미지를 공유하여 소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누구도 그러한 행위를 가볍거나 사소한 행위가 아니라고 인식한다면 '이미지 착취' 성폭력 피해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이미지 착취'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 확산과 관심은 연구와 입법 제언 등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디지털 기반의 성폭력에 대한 관련 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어 활발한 논의 중에 있다. 이러한 변화들이 현재 법체계 안에서 사고되지 못한 다양한 '이미지 착취' 피해를 수면 위로 드러내고, 피해자들의 구체적 경험이 반영된 법과 정책 마련의 기틀이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김영철, 조현욱(2016),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부위 해당 여부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판결”,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 57권 3호, 151-177쪽.
- 김정혜(2016), “장애여성 성폭력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지민, 유현미, 조소연(2016), “공공장소 SEXISM : 소수자 괴롭힘과 시민성”,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길거리괴롭힘” 연구포럼』 자료집.
- 박희영(2006), “소위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에 대한 형법적 규제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비교법적 검토를 고려하여”,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제31호, 259-295쪽.
- 변혜정(2007), “성폭력의 법적 판단기준에 대한 성찰”, 『성폭력, 법정에 서다 :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법담론』,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 : 푸른사상.
- 배상균(2016), “‘도촬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27권 1호, 199-227쪽.
- 신상숙(2001),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딜레마”, 한국여성연구소, 『여성과 사회』, 제13호, 6-43쪽.
- 유진(2016), “성폭력 범죄”, 이천현 외,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5)』,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희영(2016), “카메라 이용 촬영죄 적용의 한계”, 한국성폭력상담소, 『2016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대법원 판례 뒤집기 토론회』 자료집.
- 장다혜(2003), “단순 강간(simple rape)의 형사법상 판단기준에 관한 여성주의적 연구 : 법 적용 및 해석에서의 ‘합리성(reasonableness)’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 Brownmiller, Susan(1990), *Against Our Will: Men, Women, and Rape*, 『성폭력의 역사』, 일월서각 편집부 엮음, 서울 : 일월서각.
- Jane Anderson(2015), “Prosecuting Image Exploitation”, *STRATEGIES*, The Prosecutor’s Newsletter on Violence Against Women, Issue 15.
- Mackinnon, Catharine A.(1989), “Rape: on coercion and consent” in *Toward a Feminist of the State*, Harvard University Press, pp171-183; “강간: 강요와 동의에 대하여”,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의 상품화, 그리고 저항의 가능성』, 엄용희 역, 서울 : 한울, 2001.
- R. W. Connell(1995), *Masculinities*, 『남성성/들』, 현민 · 안상욱 역, 서울 : 이매진, 2013.
- “몰카 범죄 증가하는데...기소율은 3년간 절반으로 ‘뚝’ 떨어져”, the 300, 2015년 10월 12일자,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101116337654543> (최종검색일: 2016. 11. 23)
- “몰카 범죄, ‘재범비율’ 높지만 ‘처벌 수위’ 지나치게 낮아”, 서울경제, 2016년 9월 26일자, <http://www.sedaily.com/NewsView/1L1KH6U422> (최종검색일: 2016. 11. 15)
- “‘인터넷 강국’ 코리아...속도, 보급률 모두 세계 1위”, 내외뉴스통신, 2016년 12월 16일자, <http://nbnvtv.co.kr/news/view.php?idx=66428> (최종검색일: 2016. 12. 20)
- “한국, 소셜네트워크 이용률 세계4위권”, The Science Times, 2010년 12월 17일자, http://www.sciencetimes.co.kr/?p=90322&cat=37&post_type=news&paged=88 (최종검색일: 2016. 12. 20)

‘보복 포르노(Revenge Porn)’ 관련 처벌 사례 및 입법 소개

정현 | 수원지방검찰청 검사¹

● ‘보복 포르노’ 검토 배경

최근 헤어진 연인이나 부부 중 일방이 과거에 상대방의 동의 하에 촬영하였던 내밀한 사진이나 동영상상 상대방에 대한 보복적 의도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유포시키는 사례가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² 이와 같은 행위를 지칭하는 ‘보복 포르노(Revenge porn)’라는 용어³가 생겨날 만큼 사회적

1) 한국성폭력상담소 법 정책 자문위원

2) “트위터, 음란 게시물에 계정 정지 등 강력 대응”, 조선비즈, 2015년 3월 13일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13/2015031300885.html;

“日, ‘보복 포르노’ 방지법 시행 한 달 만에 피해 110건 접수” 조선닷컴, 2015년 4월 2일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02/2015040202314.html;

“구글, ‘보복 포르노’ 삭제 조치 실시 계획”, 머니투데이, 2015년 6월 21일자,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62005275448991&outlink=1>;

“‘변심애인 누드인터넷 올리면 징역형’...‘리벤지 포르노와 전쟁’, 연합뉴스, 2017년 2월 5일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05/0200000000AKR201702050800098.HTML?input=1195m>

3)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보복으로 성관계 등 민감한 사생활을 담은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보복 포르노’라고 칭하는 것에 대하여, 최근 ‘보복 포르노’라는 용어가 피해자를 대상화시키고 타자화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카메라, 인터넷 등 모든 디지털 매체로 일어나는 성범죄를 ‘디지털 성범죄’로 칭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나, 미국 판결문 등에서 보복 포르노(Revenge Porn)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보복 포르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함.

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입법 및 처벌, 예방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⁴(이하 포괄하여 ‘유포’라고 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보복 포르노’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⁴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고 주 법원은 2015년 4월경 ‘Revenge Porn’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의 실명과 함께 사진을 게시한 뒤 피해자들이 250~300달러를 내면 사진을 지워주는 다른 사이트까지 운영한 운영자 케빈 볼러트(Kevin Bollaert)에 대해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실이 있다. ‘보복 포르노’ 유포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적용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위 사건 내용 및 관련 입법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4) 개정 전 성폭력처벌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는 현행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촬영 당시에는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촬영되었으나 그 이후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의 공백이 존재하였는데, 2012. 12. 18. 성폭력처벌법 전면 개정으로 제14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처벌의 근거가 마련되었음.

● 케빈 볼러트 사건의 개요⁵

● 범행 내용

케빈 볼러트는 ‘당신은 게시되었음(UGotPosted.com)’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헤어진 남자친구 등이 제공한 10,000장 이상의 사진들을 피해자의 이름이나 거주 도시 등 개인정보와 함께 게시하고, 해당 사진들을 피해자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 계정에 연결시키기도 하였다. 케빈 볼러트는 이를 위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였고, 그 결과 다수의 피해자들은 낯선 사람으로부터 수십, 수백의 협박 메시지나 성적인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케빈 볼러트는 ‘나의 평판 바꾸기(ChangeMyReputation.com)’라는 자매사이트를 함께 개설하여 사진을 삭제하기를 바라는 피해자들로부터 250달러에서 350달러를 받고 사진을 지워주기도 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해 케빈 볼러트는 총 약 30,000달러의 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다.

● 피해 상황

검찰이 소환한 21명의 피해자들 중 7명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는데, 피해자들은 케빈 볼러트의 사이트에 게시된 사진들로 인해 삶이 망가지고, 직장을 잃어 노숙자가 되거나 가족을 잃기도 하였으며, 대인관계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게 되고 자살시도를 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5) 케빈 볼러트 사건의 판결문은 Westlaw 등 판결검색 사이트에서 찾을 수 없어, 이하의 내용은 “San Diego man guilty in ‘revenge porn’ case”, Los Angeles Times, 2015년 2월 2일자; “‘Revenge porn’ site operator gets 18 years”, The San Diego Union-Tribune, 2015년 4월 3일자; “San Diego Revenge-Porn Convict Gets 18 Years”, Courthouse News Service, 2015년 4월 6일자 등의 기사를 참조함.

● 판결 선고 결과

케빈 볼러트 사건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보복 포르노’가 문제된 첫 사건이지만, 캘리포니아 주의 보복 포르노 방지법이 시행된 2013년 10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21건의 개인정보 불법수집(identity theft)과 6건의 공갈(extortion) 혐의로만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었다. 샌디에고 주 법원은 케빈 볼러트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하였다.

● 미국 내 ‘보복 포르노’ 관련 입법 현황 및 내용

‘보복 포르노’ 피해자를 지원하고 관련 입법을 지원하는 사이트인 ‘보복 포르노 끝내기(endrevengeporn.org; ERP)⁶에 의하면, 2015년 7월 현재, 25개 주⁷가 ‘보복 포르노’를 규제하는 법률을 입법하였다. ERP는 다음의 7가지 이유를 근거로 일리노이 주의 입법⁸을 가장 모범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⁹

▶ 가해자의 특정한 동기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

▶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촬영물도 포함함 (예컨대 캘리포니아 주의 개정 전 법률에

6) ERP는 ‘보복 포르노’의 피해자였던 홀리 제이콥스(Holly Jacobs) 박사에 의해 2012년 8월경 만들어졌으며 ‘보복 포르노’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 및 법률 조력의 제공, 관련 입법 지원 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음. 제이콥스 박사에 의해 2013년 8월경 비영리 단체인 ‘사이버 시민권 이니셔티브(Cyber Civil Rights Initiative; CCR)’가 설립되었음. 이에 대해서는 ERP 홈페이지 참조. (www.endrevengeporn.org/welcome/)

7) 알래스카, 애리조나, 아칸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델라웨어, 플로리다, 조지아, 하와이, 아이다호, 일리노이, 루이지애나, 메인랜드,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노스 다코타, 오레곤,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유타,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 위스콘신

8) 일리노이 주 형법 11-23.5, 해당 법률 내용은 일리노이 주 정부 홈페이지 참조 (www.ilga.gov/legislation/publicacts/fulltext.asp?Name=098-1138)

9) ERP 홈페이지 참조 (www.endrevengeporn.org/seven-reasons-illinois-leading-fight-revenge-porn/)

서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촬영한 것만을 규율하여 셀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처벌의 공백이 있었음)

- ▶ 강한 처벌 - 4급의 중범죄로 규정되어 1년~3년의 징역, 25,000달러까지의 벌금형, 촬영물 유포로 얻은 이익의 원상회복 명령이 가능함
- ▶ 촬영물의 내용이 피해자의 '성적인 신체부위'일 것만을 요구하지 않음.¹⁰ 이는 피해자의 성적인 신체부위가 드러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구강성교 하는 모습이나 피해자에게 사정한 모습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됨
- ▶ 해당 촬영물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것임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경우, 1차 유포자 외에 2차, 3차 유포자도 처벌함
-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적법한 공익 목적, 적법한 수사 과정, 불법행위의 보도, 공개된 장소에서의 자발적 노출에 따른 촬영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함
- ▶ 이 법은 촬영물에 등장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의해 피해자의 신원 파악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함께 제공되는 다른 정보에 의해 신원 파악이 가능한 경우 적용됨

애리조나 주의 경우, 2014년 애리조나 수정법¹¹ 13-1425조를 신설하여 '보복 포르노' 유포 행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하였다.¹² 2014년 9월경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 Civil Liberty Union; ACLU)이 처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미국 연방법원은 2015년 7월경 이를 받아들여 법 적용을 중단하

10)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피해자가 성적 행위를 하고 있거나 피해자의 내밀한 신체부위가 노출된 촬영물'(who is engaged in a sexual act or whose intimate parts are exposed, in whole or in part)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내밀한 신체부위가 노출되지 않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 얼굴만 노출되더라도 성행위 장면 등을 촬영한 것은 이 법의 규제 대상이 됨. 일리노이 주 형법 § 11-23.5 (b)(1)(C) 참조

11) The Legislature of the State of Arizona Section 1, Title 13, chapter 14, Arizona Revised Statutes.

12) 5급의 중범죄로 처벌(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4급의 중범죄). 자세한 내용은 애리조나 주 정부 홈페이지 참조 (www.azleg.gov/legtext/51leg/laws/0268.pdf)

였다.¹³ 결국 애리조나 주는 판결 결과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¹⁴

● '보복 포르노' 대책을 위한 입법안 검토

우리나라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보복 포르노'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보복 포르노' 유포의 심각성이나 대응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고, 외국의 사례들만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케빈 볼러트 사건은 '보복 포르노' 방지법이 적용된 사례는 아니지만, '보복 포르노' 유포 현황, 피해의 심각성, 영리 목적의 악용 가능성 등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인터넷 통신망이 잘 발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보복 포르노' 유포의 피해는 더욱 심각할 수 있으며 한 번 인터넷에 유포된 정보는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복 포르노'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복 포르노' 유포의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사건발생시 엄중한 형사처벌과 함께 사전적으로 경찰,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성폭력처벌법 규정 및 처벌사례 홍보,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13) "Arizona Revenge-Porn Law Halted Permanently After ACLU Lawsuit Challenged Constitutionality Under First Amendment",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2015년 7월 10일자, <http://www.ibtimes.com/arizona-revenge-porn-law-halted-permanently-after-aclu-lawsuit-challenged-2004009>

14) "Arizona makes deal with ACLU, won't enforce bad law on 'revenge porn'", Arstechnica, 2015년 7월 12일자, <https://arstechnica.com/tech-policy/2015/07/arizona-makes-deal-with-aclu-wont-enforce-bad-law-on-revenge-porn/>

마지막으로 입법론적으로는 우리 성폭력처벌법에도 공익 목적 등의 예외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애리조나 주의 경우와 같이 표현의 자유 침해가 문제될 여지가 있으므로 적절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촬영물의 대상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촬영물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내밀한 신체 부위의 노출 없이 피해자가 구강성교 등 성적 행위를 하는 촬영물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 또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촬영물에 대해서만 영리 목적에 의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2항의 촬영물에 대해서도 가중처벌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 “구글, ‘보복 포르노’ 삭제 조치 실시 계획”, 머니투데이, 2015년 6월 21일자,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62005275448991&outlink=1>
- ““변심애인 누드인터넷 올리면 징역형”...‘리벤지 포르노’와 전쟁”, 연합뉴스, 2017년 2월 5일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05/0200000000AKR20170205050800098.HTML?input=1195m>
- “‘보복 포르노’ 방지법 시행 한 달 만에 피해 110건 접수”, 조선닷컴, 2015년 4월 2일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02/2015040202314.html
- “트위터, 음란 게시물에 계정 정지 등 강력 대응”, 조선비즈, 2015년 3월 13일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13/2015031300885.html
- 애리조나 주 정부 홈페이지 www.azleg.gov/legtext/51leg/laws/0268.pdf
- ERP 홈페이지 참조 www.endrevengeporn.org/seven-reasons-illinois-leading-fight-revenge-porn/
- “Arizona Revenge-Porn Law Halted Permanently After ACLU Lawsuit Challenged Constitutionality Under First Amendment”,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2015년 7월 10일자, <http://www.ibtimes.com/arizona-revenge-porn-law-halted-permanently-after-aclu-lawsuit-challenged-2004009>
- “Arizona makes deal with ACLU, won’t enforce bad law on ‘revenge porn’”, Arstechnica, 2015년 7월 12일자, <https://arstechnica.com/tech-policy/2015/07/arizona-makes-deal-with-aclu-wont-enforce-bad-law-on-revenge-porn/>
- “‘King of Revenge Porn’ pleads guilty, faces up to 7 years in prison”, Los Angeles Times, 2015년 2월 25일자, <http://www.latimes.com/local/lanow/la-me-ln-revenge-porn-king-pleads-guilty-20150225-story.html>
- “‘Revenge porn’ site operator gets 18 years”, The San Diego Union-Tribune, 2015년 4월 3일자, <http://www.sandiegouniontribune.com/sdut-kevin-bollaert-revenge-porn-case-sentencing-2015apr03-story.html>
- “San Diego Revenge-Porn Convict Gets 18 Years”, Courthouse News Service, 2015년 4월 6일자, <http://www.courthousenews.com/san-diego-revenge-pornconvict-gets-18-years/>

디지털 성폭력 처벌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¹

김현아 | 법무법인 GL 변호사²

● 일상을 위협하는 디지털 성폭력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비교적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 범죄이다. 종래에는 신체적 또는 대면적 접촉이 있는 강간, 강제추행 등이 성폭력 범죄의 주요 유형이었지만, 인터넷, 모바일 등 정보통신기술과 각종 특수장비의 발달로 이러한 매체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무한 확산가능성과 피해 회복의 어려움 때문에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서적 피해까지 유발하고 있으며, 2015년 우리나라가 떠들썩했던 소위 '워터파크 몰카' 사건 처럼 최근 몇 년 동안 스마트폰 보급률의 증가에 비례하여 '몰래카메라' 피해가 우리의 일상에 깊이 침투해 있다.

얼마 전 유럽연합(EU) 국가에서도 젠더 폭력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약

1) 현재 오프라인에서의 성폭력에 대비되는 용어로 '온라인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으며, 아직 학자들 사이에서도 뚜렷하게 일차하는 개념과 범위의 정의를 내리지는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지칭하는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2)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 박사

2,260억 유로(한화 300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태도, 고정관념 및 문화적 규범'에서 젠더 폭력이 비롯되며, "최근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등장으로 자유를 위한 도구가 학대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³

젠더관계는 근본적으로 권력과 위계구조, 불평등을 기반으로 한 관계이고,⁴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젠더화된 현상으로,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은 여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21세기의 행동이다. 사이버 상에서 젠더가 관여된 성폭력의 중심적인 특성으로는 ① 희생자가 여성이다 ② 괴롭힘은 특정 여성들을 목표로 한다 ③ 괴롭힘은 개인의 젠더를 성적으로 위협적이고 비하하는 방식으로 언급하는 데 있다.⁵ 그런데도 이러한 괴롭힘이 사소하다는 생각이 만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심각한 해악과 침묵 속에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온라인에서의 삶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⁶

이하에서는 디지털 성폭력 유형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 건수가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이하 통신매체 이용 음란)와 제14조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이하 카메라 이용 촬영)를 중심으로 그 처벌 실태와 처벌 조항을 살펴보고,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⁷

3)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31509334836188>,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주한EU대표부가 2017년 3월 15일 공동으로 주최한 '온라인 젠더 기반 폭력 근절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에서 기조 연설을 맡은 조엘 이보넛 주한 EU 대표부 부대사는 "여성이 폭력으로 인해 일을 못 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 손실·보건 서비스·복지·소송 비용 등을 모두 합쳐 2,260억 유로에 달합니다. 96%에 달하는 유럽인들이 여성 대상 폭력이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라고 말하였다.

4) Rinda McDoewll(1999), *Gender, Identity and Place*, "젠더, 정체성, 장소", 여성과 공간 연구회 옮김, 서울 : 한울, 2017, 55면.

5) 이수연, 이해림, 김수아, 김하연(2014),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연구보고서 6, 18면.

6) Cirton(2009), "Law's Expressive Value in Combating Cyber Gender Harassment", Michigan Law Review Association, *Michigan Law Review*, Vol.108, No.3, p.415.

7) 대검찰청의 범죄 분류에 따르면, 중분류 강력범죄(흉악), 소분류 성폭력, 세분류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죄를 분류하고 있다.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실태

● 범죄발생 현황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주요 성폭력 범죄의 발생건수를 보면,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발생 비율은 10년의 기간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성폭력 범죄 중 온라인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범죄인 통신매체 이용 음란과 카메라 이용 촬영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범죄유형은 카메라 이용 촬영으로, 2005년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에 불과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에는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24.1%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10년 동안 8배의 범죄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 역시 2005년 164건에서 2014년 1,254건으로, 10여 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1〉 주요 성폭력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⁸ 및 구성비 추이 (단위 : 건(%))

연도 유형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카메라 등 이용 촬영	341 (3.0)	517 (3.6)	564 (3.9)	585 (3.6)	834 (4.8)	1,153 (5.6)	1,565 (7.1)	2,462 (10.5)	4,903 (16.9)	6,735 (24.1)
통신매체 이용 음란	164 (1.4)	195 (1.4)	240 (1.7)	378 (2.3)	761 (4.4)	1,031 (5.0)	911 (4.1)	917 (4.0)	1,416 (4.9)	1,254 (4.1)
강간	2,127 (18.4)	2,510 (17.6)	2,659 (18.5)	3,621 (22.5)	3,923 (22.6)	4,383 (21.3)	4,425 (20.2)	4,349 (18.6)	5,359 (18.4)	5,092 (17.1)
강제추행	4,089 (35.4)	4,984 (34.9)	5,348 (37.3)	6,080 (37.7)	6,178 (35.6)	7,314 (35.5)	8,535 (38.5)	10,949 (46.9)	13,236 (45.5)	12,849 (42.2)

〈출처: 대검찰청 「2015 범죄통계」〉

8) 발생건수만 전국에서 발생한 범죄사건 중 각급 수사기관이 발생사실을 확인하여 형사입건한 사건수이다.

● 판결 현황⁹

● 피해자의 특성

카메라 이용 촬영의 피해자 성별 분석 결과, 99%가 여성으로 나타나 피해자의 거의 대부분이 여성임을 알 수 있다.¹⁰ 피해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연령이 불상인 경우를 제외하면, 20세 이상 30세 미만이 33.76%로 가장 많았고, 19세 미만이 3.69%, 19세 이상 20세 미만이 2.31%,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6.44%,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2.59%, 50세 이상이 0.44%로 나타났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는 사이는 10.99%,¹¹ 모르는 사이는 89.01%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 발생장소가 지하철과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나오는 통계 결과이다. 따라서 카메라 이용 촬영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에서든 자신이 모르는 사람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 역시 피해자의 성별을 분석해보면, 여자가 91.44%, 남자가 2.25%로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임을 알 수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는 사이에서 31.08%, 모르는 사이에서 68.92%로 나타

9) 한국여성변호사회(2016),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의 판례 분석을 통한 성폭력처벌법 개정 등", 『온라인 성폭력 실태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2016. 9. 26. 이 장에서의 판결의 통계부분은 저자가 공동 연구자로 참여하여 발간한 위 심포지엄 자료집(미간행) 내용을 요약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 지역을 관할로 두고 있는 각급 법원에서 2011년 1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선고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판결문 1심 1,540건, 항소심 278건, 상고심 48건 총 1,866건을 분석한 결과이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2011년부터 2016년 5월까지 선고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관한 판결문 296건 중 278건(1심 222건, 항소심 53건, 상고심 3건)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10) 분석대상 판결 중 피해자 성별이 남성인 경우는 19건이었는데, 이 중 남성만이 피해자인 경우는 11건으로 대부분 남자화장실이나 남자탈의실에서 발생하였다. 남녀 모두 피해자인 경우는 8건으로 주로 모텔 등에서 남녀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것이었다.

11) 카메라 이용 촬영에서 '아는 사이'의 분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인 43.68%, 직장동료 19.54%, 인터넷(피해자와 가해자가 인터넷,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경우를 모두 '인터넷'으로 분류함) 6.32%, 친구 3.4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타 26.44%에는 학원장이 자신의 수업을 듣는 여고생을 촬영한 사안, 의사가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를 촬영한 사안, 사진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진관에서 고객을 몰래 촬영한 사안, 호스트바 종업원이 손님을 촬영한 사안,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성을 촬영한 사안, 지인의 처를 촬영한 사안 등이 있었다.

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에서도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람에 의해 피해를 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화번호가 일반에게 알려진 다산콜센터,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음란한 말을 하거나 음란문자를 전송하는 사례,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자위영상을 전송하는 사례, 인터넷 블로그 등에 음란한 글을 게시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 피해장소

카메라 이용 촬영의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판결문상 나타난 피고인의 수를 기준으로 지하철¹²⁾ 54.73%, 노상 10.80%, 버스·택시 안 4.64%, 집·숙소 3.29% 공중화장실¹³⁾ 2.81%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은 다른 성폭력 범죄와 달리 범행 발생지와 피해 발생지가 다른 것이 특징이다. 즉, 음란한 영상, 문자 등의 송신 장소인 범행 발생지와 그 영상, 문자 등의 수신 장소인 피해 발생지가 동일하지 않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는 휴대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그 범죄수단으로 하고, 범행 발생지와 피해 발생지가 동일한 장소가 아니며, 피해자를 대면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비대면 범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지역과 상관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발생장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 숙소 등이 51%, 직장이 7% 순으로 나타났다.

● 범행횟수

가해자 1인이 범한 카메라 이용 촬영의 범행횟수를 살펴보면, 1회 46.17%,

2회 11.69%, 3회 5.84%, 4회 5.06%, 5회 이상이 31.23% 순이었고, 2회 이상 촬영한 경우가 53.83%로 나타났다. 5회 이상의 범행 481건 중 10회 이상 촬영한 경우는 254건에 이르고, 100회 이상 촬영한 경우는 37건에 달하였다. 피해자 99명을 대상으로 1,278회 범행을 저지른 사례, 피해자 696명을 대상으로 696회 범행을 저지른 사례도 있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범행횟수를 살펴보면, 1회 51.80%, 2회 12.61%, 3회 7.21%, 4회 4.05%, 5회 이상이 22.88% 순으로 나타났다. 2회 이상 범행 경우는 48.20%로 나타났다. 5회 이상의 범행을 한 사건 중 최대 108회의 범행을 저지른 사건도 있었다.

● 처벌 현황

카메라 이용 촬영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판례에서 양형을 살펴보면, 벌금형은 71.97%, 집행유예는 14.67%, 선고유예는 7.46%, 징역형은 5.32% 순으로 나타났다. 벌금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만 원 26.60%, 300만 원 22.00%, 100만 원 15.06%, 150만 원 12.53%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79.97%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은 1심의 경우 벌금형이 63.9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집행유예 16.22%, 선고유예 6.76%, 징역형 5.86% 순으로 나타났다. 1심 형벌의 종류를 분석해보면, 벌금형 64.41%, 집행유예 16.22%, 선고유예 6.76%, 징역형 5.86%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경우에도 벌금형의 비율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12) 지하철에는 차량내부, 지하철역사, 지하철 계단, 에스컬레이터, 역사 출구를 포함한 통계이다.

13) '공중화장실'은 지하철, 공원, 상가 등의 공중화장실을 의미한다.

● 현행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수치심'의 삭제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감정을 드러내는 많은 표현 중 하나인 '성적 수치심'이 성폭력 처벌과 관련된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가해자의 성폭력 행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규정 때문에 법원은 여성 피해자의 어떤 신체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부위인지 해석 판단함으로써 이에 따른 무죄 판결에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가 느낀 피해감정(불쾌, 분노, 굴욕, 수치 등)은 성폭력 사건을 이해하는 관점과 그 해결에 있어 중요하기에, 지금까지 반성폭력운동 활동가들 또한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를 성폭력 피해자가 겪은 정서적 고통을 표현하는 언어로 사용해 왔다.¹⁴ 그러나 수치심은 분노나 두려움과는 다르다. 수치심은 규범적으로 왜곡되기 쉬우며 이런 점에서 공적 실행의 신뢰할만한 지침이 되기 어렵다. 특히 수치심은 다른 사람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고와 수세기 동안 여성이 남성의 소유물로 여겨져 오면서 강화되어 온 사고

14) 정하경주(2014), “성폭력 피해를 구성하는 '성적수치심' 이대로 괜찮은가?”, 『성폭력 피해를 구성하는 성적 수치심, 이대로 괜찮은가』, 2014기획포럼 자료집, 한국어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5-6면 참조.

에 기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¹⁵ 입법의 연혁에서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1998. 12.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신설될 당시에도 의원 발의안이나 여성특위 안에는 '성적 수치심'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가, 촬영의 대상을 축소시키자는 취지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에서 비로소 '성적 수치심'이 규정되었다.¹⁶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성적 욕망'이 남성의 욕망이고 '성적 수치심'이 여성의 수치심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기존의 남녀의 성에 대한 이중 기준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고 여성만이 정조 관념을 가질 것을 기대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 내지 성적 '분노'로 바꾸어 성의 문제를 인간존엄성과 젠더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견해도 있다.¹⁷

현재 법무부에서도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개정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고, 독일형법은 제13장 '성적 자기결정에 대한 죄'에서 성범죄를 규정하고 있다.¹⁸ 성폭력 범죄의 내포 속에서 '성적 수치심'의 대안 개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지만, 개정의 방향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 및 합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임을 분명히 하는 구성요건으로 개정하여야 한다.¹⁹

15) Matha C. Nussbaum(2004), *Hiding from Humanity*, 『혐오와 수치심』, 조계원 옮김, 서울 : 민음사, 2015, 35-36면 참조.

16)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14632>

17) 양현아(2016), 한국젠더법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특사: 양현아, “한국젠더법학회 1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경험과 변화를 돌아봄”, 한국젠더법학회, 『젠더법학』, 제7권 2호.

18) 김현아(2016),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56면 참조.

19) 전윤경(2016),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의 구성요건 해석 및 개선방안”,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19권 3호, 140면. 이에 따르면 “구성요건을 개정한다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라고 하거나,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등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유포행위’ 관련 조항 개정

● 열거적인 유포행위 처벌방식 개정

카메라 이용 촬영의 피해 형태는 크게 촬영행위와 유포행위²⁰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촬영자가 단순히 여성 피해자를 촬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촬영물을 유포까지 한 경우는 인터넷의 엄청난 전파력으로 사후에 완벽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훨씬 크다. 이러한 유포행위와 관련하여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유포하는 행위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적시된 행위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는 ‘제시’에 해당하지만, 위의 구성요건에 포함될 수 없고, 피해자의 법익이 침해되는 경우이지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흠결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²¹

이처럼 처벌되는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한다면, 법에서 열거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기에 한계가 생긴다. 특히 카메라 이용 촬영의 경우는 그 범주의 특성상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이용의 확대, 그리고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라 유포행위의 방식을 현재 모두 예측할 수 없으며 더욱 지능화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처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는 촬영물이 촬영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확대되는 자체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 형법처럼 ‘공중 또는

20)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은 각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태양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유포’라고 칭하여 기술한다.

2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이에 따르면 ‘제공’이란 무엇을 내주거나 갖다 바침을 의미한다. ‘제시’란 어떠한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내어 보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석상 제공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사)한국여성변호사회(2016), 위 자료집, 111면.

제3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인식 또는 인식할 수 있게 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에 의하건 이를 이용하는 행위’ 등의 방식으로 개정하여 다양한 유포행위를 포섭할 수 있는 구성요건으로 입법 공백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²²

● 유포행위 법정형 강화

앞서 카메라 이용 촬영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처벌현황을 살펴보았다. 대부분이 벌금형인 실태는 처벌의식의 문제일 뿐 아니라, 낮은 법정형 자체에 기인하기도 한다. 2016년 12월 행정자치부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영상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의 처벌정도는, “개인영상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등 국민의 인격권이나 사생활 침해 위험이 매우 높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35조 제1항),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당초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운영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한 자 등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격히 제재(제35조 제2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²³

그리고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와 비교하여 타인의 대화를 ‘도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 금지)에서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16조

22) 김현아(2016), 위의 논문, 58-159면 참조. ; 프랑스 형법 제226-2조(사적 비밀의 이용)에서는 “① 제226-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로 인하여 얻어진 모든 기록 또는 문서를 보관하거나, 공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인식 또는 인식할 수 있게 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에 의하건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전조와 동일한 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2008), 『프랑스 형법』, 161-162면.

23) 행정자치부,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안) 조문별 제정이유서 2016. 12.,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이하 ‘CCTV’라 함)의 지능화, 스마트폰 및 스마트 가전의 발전,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기기와 서비스의 출현 등 영상정보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영상정보의 사회적 유용성 증대한 반면에, 영상정보처리기기 특성상 촬영 범위에 포함된 개인영상 등이 없이 무차별 수집됨에도 불구하고, 개인 식별성 및 사생활 침해 우려는 매우 높아 일반 개인정보와는 다른 독립된 규율 체계 필요하여 제정안을 만들게 되었다.”

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²⁴ 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타 법률과의 균형을 고려한다면, 카메라 이용 촬영은 대화나 개인 식별 정보를 능가하는 영상물의 문제이고 성폭력 범죄라는 점이 감안되어 법정형이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촬영행위와 유포행위의 각 불법성에 비례하여 촬영행위는 현행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유지하고, 유포행위는 촬영행위 처벌규정과 따로 분리하여 규정한 후 7년 이하로, 영리목적 유포행위는 10년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벌금형 역시 특히 유포의 경우 현행 제14조 제1항이 1천만 원 이하, 제2항이 500만 원 이하로 매우 낮다. 따라서 벌금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상향되는 법정형에 상응하여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²⁵

● 필요적 몰수의 필요성

카메라 이용 촬영의 경우 현재 촬영매체 몰수와 관련 판결 유형으로는 ①

24)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 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 제5항 또는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 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 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25) 김현아(2016), 위의 논문, 159-162면 참조.

촬영매체 등이 압수되지 않고, 몰수형도 선고되지 않은 경우, ② 촬영매체 등이 압수되었으나, 몰수되지 않은 경우, ③ 촬영매체 등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한다는 이유로 몰수하지 못한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카메라 이용 촬영에 있어 카메라, 휴대폰 등은 영상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하여 삭제된 영상의 복구가 가능하고, 복구된 사진의 유포 가능성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정작 그 수단인 카메라, 스마트폰 등의 압수에 소극적이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가 직접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카메라, 스마트폰 등이 아닌 다른 저장매체에 촬영물을 저장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지한 채 적극적으로 클라우드, SNS 계정 조사나 가해자의 거주지 또는 근무지 등에 대한 수색 및 압수절차에 미온적인 것이 현실이다.²⁶

따라서 촬영물의 복구 및 유포 가능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여 범죄행위에 제공한 카메라 등 촬영매체를 필요적으로 몰수하는 규정의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²⁷

● 선고유예와 수강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6조에 따르면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만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또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내용은 “①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②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③ 그 밖에 성폭력

26)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위 자료집, 104면 참조.

27)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김상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943),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기계장치”를 “기계장치(이하 “카메라 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범죄에 관련된 카메라 등(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의 소유에 한한다)은 몰수한다”

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다.²⁸

법원이 피해자와 합의가 있거나 초범인 경우 선고유예를 선고하지만, 피고인이 단순 1회 촬영의 초범이 아니고, 이미 다수 횡수의 촬영을 하였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도 있다. 또한 특정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여 가해자의 성폭력 교육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선고유예를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의 잘못된 성의식을 교정해주는 교육은 필요하다.

특히 카메라 이용 촬영의 재범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의 2.5%가 2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른 데 반해, 일반 성범죄 집단은 1.9%가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²⁹ 이러한 범죄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선고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선고할 수가 없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로 촬영자에게 일정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법원에서도 구체적 사안의 판단 결과 선고유예를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경우는 수강명령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여 재범을 막을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³⁰

28)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9) 조윤오(2016), "성범죄 유형별 재범 요인 연구: 카메라 촬영 범죄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 치안행정논집』, 제12권 4호, 147면.

30) 김현아, 위의 논문, 165-166면 참조.

● 디지털 성폭력 해결을 위해

법은 사회에 직접, 간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은 사회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결정하는 격투가 벌어지는 광장이고, 정의된 가치의 실현을 둘러싸고도 공방이 전개되는 장소이기도 하다.³¹ 그러나 정작 처벌할 수 있는 법률들이 있어도, 여전히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는 의식 변화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여성들은 계속 피해를 입고 있다. 더군다나 빠른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촬영과 유포의 수단과 방법은 진화하고 있는데, 법이 범죄 수법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입법 공백 상태로 발생하고 있다. 오랜 시간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서 본질적인 문제로 논의되었던 성 고정관념, 가부장적 의식, 여성의 성적 대상화의 논란이 그대로 온라인 성폭력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프라인에서의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등이 범죄로 인식되고 법에 따라 처벌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듯이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도 그 역사가 되풀이 될 수 있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비록 물리적인 접촉은 없지만, 빠르고 무한 확산 가능성과 피해 복구 불가능성 때문에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크다. 온라인이라는 공간은 현실 사회의 법과 규범, 사회 문화적 가치가 그대로 재현되는 곳으로, 우리의 현실 공간과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제는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식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³²



31) Frances E. Olsen(2016), *The sex of Law*, 『법의 성별』, 김리우 옮김, 서울 : 파랑새미디어, 111면.

32) 김현아(2016), 위의 논문, 19면.

최신 연구 동향

2016년 성폭력·성희롱 관련 연구물 동향 리뷰

| 참고문헌 |

- 김현아(2016),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양현아(2016), 한국젠더법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축사: “한국젠더법학회 1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경험과 변화를 돌아봄”.
- 이수연, 이혜림, 김수아, 김하얀(2014),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연구보고서 6.
- 전윤경(2016),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의 구성 요건 해석 및 개선방안”,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19권 3호, 113-144쪽.
- 정하경주(2014), “성폭력 피해를 구성하는 ‘성적수치심’ 이대로 괜찮은가?”, 『성폭력 피해를 구성하는 성적수치심, 이대로 괜찮은가』, 2014기획포럼 자료집,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조윤오(2016), “성범죄 유형별 재범 요인 연구: 카메라 촬영 범죄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 치안행정논집』, 제12권 4호, 147-170쪽.
- 한국여성변호사회(2016),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의 판례 분석을 통한 성폭력처벌법 개정 등”, 『온라인 성폭력 실태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2016. 9. 26.
- Cirton(2009), “Law’s Expressive Value in Combating Cyber Gender Harassment”, Michigan Law Review Association, *Michigan Law Review*, Vol.108, No.3, pp.373-416.
- Matha C. Nussbaum(2004), *Hiding from Humanity*, 『혐오와 수치심』, 조계원 옮김, 서울 : 민음사, 2015.
- Rinda McDoewil(1999), *Gender, Identity and Place*, 『젠더, 정체성, 장소』, 여성과 공간 연구회 옮김, 서울 : 한울, 2017.
- 행정자치부,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안) 조문별 제정이유서 2016. 12.
- 대검찰청, 「2015 범죄통계」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14632>

2016년

성폭력·성희롱 관련 연구물 동향 리뷰

김보화, 조소연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올림¹⁾

2016년은 여성/소수자 상대의 각종 폭력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슈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5월 17일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을 위시로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적인 문화에 대한 각성과 성찰은 소수자의 권리의식과 폭력 감수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성폭력·성희롱에 관한 연구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분야는 법/정책에서부터 예술의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이 글은 2016년 국내에서 발행된 성폭력·성희롱 관련 연구들을 주제별로 살펴봄으로써 현재 반성폭력 연구와 운동의 지형을 리뷰하고 향후 과제 도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1) 2016년 연구목록의 검색과 정리는 자원활동가 동동님과 박주미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두 분께 감사드린다. 성폭력 분야 연구동향은 김보화가, 성희롱은 조소연이 작성하였다.

● 분석대상 선정 및 방법

2016년 학술, 학위 논문 자료 검색은 2017년 1월 10일부터 2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DBpia(누리미디어, www.dbpia.co.kr), RISS(학술연구정보시스템,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www.riss.kr)에서 '성폭력',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가해자', '성희롱', '성희롱 피해자', '성희롱 가해자', '성범죄', '성범죄자', '여성폭력'을 키워드로 총 91편의 학술, 학위 논문을 검색하였다. 이 중 학술논문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거나, 성폭력이 연구의 주된 주제가 아니라고 판단된 4편을 제외하여 60편의 학술 논문과 27편의 학위논문, 총 87편을 살펴보았다. 2016년 생산된 정책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홈페이지 검색과 구글링을 통해 총 6편의 보고서를 리뷰하였다. 단체 토론회 자료집은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발간한 8편의 자료와 1권의 단행본을 살펴보았으며, 그 외 여성단체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성폭력 관련 보고서 및 단행본이 발간되거나, 토론회가 진행되었지만, 미처 다 반영하지 못하였고, 향후 더 보완해갈 계획이다.

범주는 크게 성폭력과 성희롱으로 구분하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강간뿐 아니라 추행, 희롱 등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침해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광의의 성폭력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가해의 '정도'나 '유형'에 따라 피해의 의미가 같지 않으며, 때로는 '경미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에게는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에서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등에서 규제하는 강간, 추행, 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범죄와 성희롱은 다른 법적/제도적 처리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특성도 현격히 다르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성폭력과 성희롱을 구분하여 진행되는 연구들이 많다. 따라서 학계의 연구 경향을 따라 성폭력과 성희롱을 구분하였다.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2016년 성폭력·성희롱 관련 연구와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자료의 수는 <표 1>과 같다.

<표 1> 2016년 성폭력·성희롱 관련 연구 및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자료 현황

분야	학술	학위	정책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자료	계
성폭력	54	24	6	9	93
성희롱	6	3	0	0	9
계	60	27	6	9	102

● 성폭력 관련 연구 주제별 분류

2016년 성폭력 관련 학술, 학위, 정책 연구의 내용을 파악하여, 모두 8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주제별 분류에 속하는 연구의 수는 아래에 표로 제시하였고, 세부적으로 목록화하였다.

● 성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실태/특성/지원

<표 2> 2016년 성폭력 관련 연구 주제별 분류 현황

주제별 분류	학술	학위	정책	계
성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실태/특성/지원	14	9	3	26
성행동/성의식	10	1	0	11
성폭력 관련 법/정책	8	5	3	16
성폭력 가해자/가해자 관련 정책	7	4	0	11
성폭력 담론/피해의 의미	5	1	0	6
성폭력 상담원/종사자	4	2	0	5
성폭력 예방교육	3	1	0	4
기타	3	1	0	4
계	54	24	6	84

<표 3> 성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실태/특성/지원 관련 학술논문(14편)

연구자	연구제목	발행기관	발행지명	권호
김기현, 김재원, 박혜영	한국 성폭력 피해특성에 대한 기초분석 : 사례관리시스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접근	한국정신보건 사회복지학회	한국정신보건 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춘계학술대회
채현숙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2차 피해로 인지한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68(1)
박연주, 김정우	13세미만 아동성폭력 재판에서의 아동진술연구 : 영상매체를 통한 전문 증거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55
도종진	범죄 피해자 진술조력인제도의 실효화 방안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19(2)
정도희	성폭력 범죄 피해자 관련 현행 규정의 비판적 분석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통향	51
조민상, 조호대	여성 대상 강력범죄 실태 및 대응방안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11(3)
류도암	프로그램 논리를 통한 성폭력 피해 지원 프로그램 분석 위기 지원형 해바라기 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강동욱, 송귀채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33(2)
김지은, 홍해숙	아동성폭력 피해특성이 피해부모의 신고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15(1)
이택후, 김지은, 김다정, 박부환, 박난희, 김효정, 최보은	유아성폭력 피해 경험에 관한 특성 분석	한국과학수사학회	과학수사학회지	10(2)
최신현, 김갑숙	집단미술치료가 성폭력가해자의 강간통념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미술치료학회	미술치료연구	23(3)
고경표, 김일중	한국의 성폭력범죄와 여성피해자화 : 패널추정기법을 이용한 분석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34(3)
오광삼	아동성폭력범죄의 발생 원인에 따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7(4)
권미주	성폭력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교회공동체의 목회신학 연구	한국목회상담학회	목회와 상담	27

〈표 4〉 성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실태/특성/지원 관련 학위논문(9편)

연구자	논문명	대학	학과	학위
김선영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의 현상과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선문대학교	법학과	석사
홍기욱	성적 소수자의 인권침해 현황과 형사법적 권리보호방안	충북대학교	법학과	박사
이하나	성폭력 피해 경험자의 자기 개방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반응과 의도적 반추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정로사	아동기 성폭력 피해여성의 비폭로 요인에 관한 사례연구	백석대학교	특수심리치료학과	석사
권옥빈	인간중심 표현예술 치료가 성폭력 피해 여성의 자아존중감 증진과 사회적 회피 및 불안 감소에 대한 효과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석사
고경표	한국의 성폭력범죄발생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석사
박경옥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성폭력경험과 대처행동	한국교통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권수정	군대 내 성폭력의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군사학과	석사
박지은	해바라기센터를 중심으로 일 지역의 아동·청소년 및 성인 성폭력 실태 비교	경북대학교	법의간호학과	석사

〈표 5〉 성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실태/특성/지원 관련 정책연구(3편)

연구자	연구제목	발행기관
홍영오, 연성진, 주승희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미정, 정수연, 권인숙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책 레시피 Vol 5 여성에 대한 폭력과 안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성행동/성의식 관련 연구

〈표 6〉 성행동/성의식 관련 연구 학술논문(10편)

연구자	연구제목	발행기관	발행지명	권호
양동옥	성행동 상황에서 여성의 거절 평가에 주변 단서가 미치는 영향 : 이성교제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23(8)
윤혜정, 하정, 최승희	성폭력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16
최영희	화성시 여성주민의 성폭력 인식 및 피해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7(3)
권인숙, 이건정, 김선영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통념의 2차 피해적 영향 연구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젠더와 문화	9(2)
전병주, 김민	남자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성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및 범죄억제에 대한 인식의 조절효과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32(4)
박다원, 이인혜	자기애적 과시, 허용적 성태도,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 간의 관계 : 상태공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1)
이수진, 이주영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성 학대경험이 성 비행 및 위험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 경계선 성격 특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5(4)
강차선, 박정환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폭력 피해 경험과의 관계에서 성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 : 제주지역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
김인숙, 이숙	성인남성의 성충동에 관한 인식 연구 : Q-방법 적용	한국주관성연구학회	주관성연구	33
김옥희	교사의 성의식 차이연구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21	7(5)

〈표 7〉 성행동/성의식 관련 연구 학위논문(1편)

연구자	논문명	대학	학과	학위
이미호	대학생 데이트 성추행 및 성폭력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노인의료복지학과	석사

● 성폭력 관련 법/정책

〈표 8〉 성폭력 관련 법/정책 학술논문(8편)

연구자	연구제목	발행기관	발행지명	권호
조현욱	기습추행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33
정신교	성폭력범죄 친고죄폐지의 비판적 검토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16(3)
류화진	형법 제10조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의 개정 법률안 검토	부산대학교 법학 연구소	법학연구	57(4)
기광도	강제추행죄의 양형에 관한 경험적 연구	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10(1)
기광도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분 석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를 중심으로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24(2)
배상균	'도찰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 구원	형사정책연구	27
김영철, 조현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부위 해당여부	부산대학교 법학 연구소	법학연구	57(3)
전윤경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 메라등이용촬영) 죄의 구성요건 해석 및 개선 방안	인하대학교 법학 연구소	법학연구	19(3)

〈표 9〉 성폭력 관련 법/정책 학위논문(5편)

연구자	논문명	대학	학과	학위
정인미	언론의 범죄보도에 의한 제2차 피해방지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법학과	석사
남궁평	형사재판에서 범죄 피해자의 참가범위에 관한 연구 : 성 폭력 범죄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국방송 통신대학교	법학과	석사
박한교	성범죄 언론보도의 피해에 관한 민사법적 구제	충북대학교	법학과	박사
김다은	법관의 초점적 관심이 성범죄 사건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경찰 행정학과	석사
장응혁	성폭력 범죄와 피해자 조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박사

〈표 10〉 성폭력 관련 법/정책 정책연구(3편)

연구자	연구제목	발행기관
정은경	의제강간죄 연경상향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다해, 박학모, 장웅혁	2012년 성폭력 관련법 개정 이후 수사 실무의 변화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배상균	'도찰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성폭력 가해자/가해자 관련 정책

〈표 11〉 성폭력 가해자/가해자 관련 정책 학술논문(7편)

연구자	연구제목	발행기관	발행지명	권호
조윤오	성범죄 유형별 재범 요인 연구 : 카메라 촬영 범죄를 중심으로	한국치안 행정학회	한국 치안행정논집	12(4)
배미란	성폭력범죄의 발생현황 및 관련 정책의 향후과제 : 주로 성폭력범죄 관련 부가처분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40(1)
김태명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 정책학회	형사정책	28(1)
정지훈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위헌성과 무용성 :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 법학원	저스티스	155
조일형	성범죄자 처벌을 위한 정책수단의 효과 비교분석 : 신상정보 공개제도, 전자감시제도, 화학적 거세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 정책학회	한국 정책학회보	25(3)
이원경	성중독 약물치료법의 정당성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	한국 교정학회	교정연구	26
김연희, 이은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비판적 고찰	한국 교정복지학회	교정 복지연구	44

〈표 12〉 성폭력 가해자/가해자 관련 정책 학위논문(4편)

연구자	논문명	대학	학과	학위
유상진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형사 정책적 정당성 : 성폭력 범죄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법학과	석사
최순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법학과	석사
이형재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경찰 안보학과	석사
김인선	노인 성범죄자의 범죄 특성 : 신상정보 공개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범죄 심리학과	석사

● 성폭력 담론/피해의 의미

〈표 13〉 성폭력 담론/피해의 의미 학술논문(5편)

연구자	연구제목	발행기관	발행지명	권호
이은진	한국 성폭력 관련법에 담긴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젊은 층의 섹슈얼리티 비교연구 : 20대 대학·대학원생의 성경험과 성인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16
허민숙	성폭력 무고의 재해석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32(2)
배수희, 손승영	'데이트 성폭력' 피해 경험과 인식의 여성주의적 분석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여성학연구	26(1)
유현미	사회적 고통으로서 성폭력피해의 의미구성과 젠더효과 : 20·30대 여성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 연구	16(2)
유진	아동학대와 위험한 타자의 범죄적 섹슈얼리티	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 연구	16(1)

〈표 14〉 성폭력 담론/피해의 의미 학위논문(1편)

연구자	논문명	대학	학과	학위
윤빛나리	한국 반(反)성폭력운동의 프레임 전환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 성폭력 상담원/종사자 관련 연구

〈표 15〉 성폭력 상담원/종사자 관련 연구 학술논문(4편)

연구자	연구제목	발행기관	발행지명	권호
이명신, 양난미, 안수영, 김보령	성폭력 상담원의 소진 결정 요인 : 업무과중, 공감피로, 피해자 중심 서비스(Victim-centered service)와 이차피해 태도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50
송인한, 김지은, 신수민, 이상혁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전문인력 양성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 학회논문지	16(9)
김옥녀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정책의 집행요인이 피평가자의 평가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 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43(4)
신준섭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정책 현장의 상담심리학과 경찰직의 협력활동 활성화 방안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30(3)

〈표 16〉 성폭력 상담원/종사자 관련 연구 학위논문(2편)

연구자	논문명	대학	학과	학위
김은영	성폭력 상담자의 대리 외상 감소를 위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박사
김인주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 :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및 외상후 성장의 조절된 매개효과 : 대리외상을 경험한 성폭력지원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용문상담심리 대학원대학교	심리학과	박사

● 성폭력 예방교육

〈표 17〉 성폭력 예방교육 학술논문(3편)

연구자	연구제목	발행기관	발행지명	권호
김신정, 강경아, 조해련, 민혜영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초등학생과 교사의 요구도 비교	한국아동 간호학회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2(3)
유정미, 방명애, 장영방	상황중심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이 특수학급 지적장애 중학생의 성폭력 지식과 성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적장애 교육학회	지적장애 연구	18(1)
최민수, 공양님	유아 성폭력 예방교육활동의 적용효과에 관한 연구	열린부모 교육학회	열린부모 교육연구	8(3)

〈표 18〉 성폭력 예방교육 학위논문(1편)

연구자	논문명	대학	학과	학위
김혜영	청소년의 성폭력 예방 집단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 기타 성폭력 관련 연구

〈표 19〉 기타 성폭력 관련 학술논문(3편)

연구자	연구제목	발행기관	발행지명	권호
권호천	청소년 성폭행 관련 영화 관객의 의견에 대한 의미네트워크 분석 : 영화 '한공주' 게시판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 커뮤니케이션학회	커뮤니케이션 연구	24(3)
류진아	근대 여성 성폭력 연구 : 김명순, 나혜석, 김일엽의 소설을 중심으로	국어문학회	국어문학	61
진범섭	공중보건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위한 계획된 행동이론과 집단적 효능감 검증 : 성폭력 예방에의 적용	한국소통학회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5(1)

〈표 19〉 기타 성폭력 관련 학위논문(1편)

연구자	논문명	대학	학과	학위
조소은	여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여성주의 목회상담의 이해와 성경적 평가	홍신대학교	기독교상담학과	석사

●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자료

〈표 20〉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자료(8편, 단행본 1권)

제목	발행월
#그건 _강간입니다 :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방지 캠페인 최종 발표회 자료집	2월
No 경직! 라운드 테이블 : 성교육을 말하다 자료집	8월
한국 상담가의 성윤리의식 실태와 내담자 법적 보호 현실 토론회 자료집	9월
개소 25주년 한일세미나 : 성폭력 피해 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의 전망 자료집	9월
2016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자료집	10월
공공장소 SEXISM : 소수자 괴롭힘과 시민성	10월
여성주의 자기방어 훈련 매뉴얼 : 난다 된다 다른 몸 II	12월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0호	12월
미녀, 야수에 맞서다 (단행본)	12월

● 성희롱 관련 연구 리뷰

1993년 서울대 교수에 의한 조교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이름조차 없었던 불쾌한 성적 언동이 ‘성희롱’으로 명명되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재판이 열렸다.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을 필두로 성희롱에 관한 법률들이 제정된 지 20여년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성희롱 법제화는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 2015년 12월 18일 선고된 르노삼성의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일부 승소 판결은 성희롱 사건에서 ‘사용자’ 책임에 관한 쟁점을 다시금 환기하였다.

학술논문은 아니지만, 르노공동대책위원회가 2016년 8월에 개최한 판례평석회 자료집²⁾에서 김엘림은 미국, 일본 등지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제시하면서,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상의 사용자 책임을 주장한다. 동 자료집에서 장명선은 성희롱 사건의 2차 피해, 즉 불리한 조치 현황과 실태에 더욱 주목하여 2차 피해 관련 법제정의 필요성, 실질적인 성희롱 예방교육과 상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매뉴얼 정비 등을 제안하였다.

2016년 한 해 동안 발간된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성희롱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성희롱의 불법행위 성립과 책임에 관한 학계의 비판적 주장과, 대응정책에 관한 제언이 주를 이룬다.

권문영 외는 피해자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2차 피해의 심각성에 주목하여, 특히 피해자 건강권 보장관점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조항을 성희롱 사건 발발 시 사전, 사후조치를 포함한 포괄적 의무조항으로 접근할 것을 제시하였다.

성희롱 관련 입법안을 적절하게 마련하기 위해서는 성희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개념 정의할 것과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학위논문(문준혁,

서울대학교)도 나왔다. 같은 맥락에서 안정은(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은 체계적인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미국식의 토론식 수업, 성희롱 강사의 전문성 고취, 노동현장에서 적용가능한 매뉴얼 제작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두 번째로, 성희롱 발생 장소 및 피/가해 유형으로 살펴보면, 골프장 캐디에 대한 고객의 성희롱과 대학 내 교수에 의한 성희롱에 주목하는 논문들이 다수 생산되었다. 골프장 캐디의 열악한 업무환경을 지적하고 소비자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거나(김석원, 한국교통대학교), 직접적으로 성희롱 경험이 캐디의 직무만족도 및 경력변경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시도(서효민,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가 그것이다.

특히 김엘림은 “교수의 성희롱에 관한 법적 분쟁”에서 교수인 가해자의 법적 분쟁 시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대학 내 교수에 의한 성희롱 사건의 요인과 실태를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교수의 성희롱은 노동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학습권과 대학의 기능을 침해하는 범죄임을 비판하면서 기존 관련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사례를 분석하여 대학 내 성희롱을 규율할 수 있는 특별법규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반면, 안성조(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성희롱을 유형화하고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사건을 판단해야 함을 제시하면서 성희롱 가해원인을 권력관계와 함께 성차심리에서 찾고 있다.

그 외에도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급자의 성희롱 대응책 마련을 주장하거나(최성경, 한국법정책학회), 간호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시 의료인에 의한 성희롱 실태를 조사(김태임 외, 한국간호과학회)한 논문이 있다. 이들은 성희롱 예방정책과 함께 사건 발생 시 대응매뉴얼의 필요성, 보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2) 르노삼성자동차 직장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2016), 『법원,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책임과 사측의 '불리한 조치'를 인정하다: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결의 의의와 과제』, 판례평석회 자료집, 2016년 8월 26일.

현재 성희롱 예방교육은 여전히 공공 영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 영역별 전문가 양성과 교육 시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성차별 금지를 비롯하여 성희롱의 법제화와 함께, 사적 영역과 공공 영역을 포함한 각 현장의 성희롱 실태 및 유형별 분석, 대응책 마련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계속될 필요가 있다.

● 성희롱 관련 연구 학술논문

〈표 21〉 성희롱 관련 연구 학술논문(6편)

연구자	연구제목	발행기관	발행지명	권호
김엘림	교수의 성희롱에 관한 법적 분쟁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 논집	20(3)
최성경	요양보호사 성희롱의 특수성과 법정책임 과제	한국 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16(1)
권문영, 강민아, 배현아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강화 방안 : 건강권 보장 관점의 적용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법과정책	22(2)
김태임, 김미중, 권윤정	일 지역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시 성희롱 피해경험, 성희롱 심각성 인식 및 자아존중감	한국 간호과학회	한국 간호과학회	추계 학술 대회
서효민, 이건호, 이진환, 장경로	골프장 여성 캐디의 고객 성희롱 경험이 직무만족과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 산업경영학회	한국 스포츠산업 경영학회지	21(5)
안성조	대학 내 교수 성희롱의 법·제도적 방지책 수립을 위한 시론 : 예비적 고찰로서 성희롱의 유형화와 판단기준의 제안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33(2)

● 성희롱 관련 연구 학위논문

〈표 22〉 성희롱 관련 연구 학위논문(3편)

연구자	논문명	대학	학과	학위
안정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체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
김석원	골프장 캐디의 직무스트레스와 조직유효성의 관계 : 성희롱 피해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교통대학교	스포츠학과	석사
문준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기고 & 서평

인도의 반성폭력 여성주의 운동 : 새로운 돌파구, 새로운 도전

『미녀, 야수에 맞서다』 서평

『미녀, 야수에 맞서다』 역자소감

인도의 반성폭력 여성주의 운동

새로운 돌파구, 새로운 도전¹⁾

파멜라 필리포즈 | The Wire 퍼블릭 에디터
김지민²⁾, 조소연 | 번역

[파멜라 필리포즈]

파멜라는 현재 인도 뉴델리의 뉴스 포털 사이트, <더 와이어>(The Wire)³⁾의 편집장이다. 2014년까지는 젠더 문제를 주되게 다루는 언론기관인 <여성특집>(Women's Feature Service)의 대표이자 편집장이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인도 여성 지위 위원회의 미디어 대책팀의 고문을 역임하였다. 2012년 델리 집단 강간에 대한 미디어 보도의 영향을 연구하면서, 인도 '사회학 연구위원회'의 선임연구원으로 위촉되었다.

인도 유명 신문인 <인도 익스프레스>(The Indian Express)의 부편집장을 역임하면서 사실만을 담당하던 시절, 갈등 젠더 발전 언론을 포함하여 매우 폭넓은 이슈들에 관한 논평을 작성하기도 했다. <인도 익스프레스>는 그녀의 풍자 칼럼인 '정색(Straight Face)'을 10년간 게재하였다. 그녀는 『손쉽게 득표하는 법(Laugh All The Way To The Vote Bank)』이라는 정치 풍자 저서도 낸 바 있다. 1999년에는

1) 이 글은 2017년 1월 10일 이화여대에서 개최한 <전자구적 여성폭력에 대항하는 페미니즘의 새로운 도전>(New Challenges of Feminisms for Anti-GBV Transnational Activism) EGEP 공개강의 세미나 발제문인 파멜라 필리포즈의 "Anti-GBV Feminist Activism in India : New Breakthroughs, New Challenges"을 번역한 글이다. 글의 제목을 제외하고, 본문의 'GBV'는 젠더 기반 폭력으로 번역하였다.

2)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객원연구원

3) 번역자 주: <더 와이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페이스북을 참조. <https://www.facebook.com/thewire.in>

뛰어난 여성 저널리스트에게 주는 '카멜리 데비 장'(Chameli Devi Jain)상을 받았으며 2007년에 '지아스티바'(Zee-Astitva)상을 받았다.

2005년에는 여성 이주민의 경험을 담은 논문, 「국경을 넘는 남아시아: 여성, 분열된 정체성, 불확실한 운명(Crossing the Borderlines in South Asia: Women, Divided Identities, Uncertain Destinies)」을 일본 도쿄의 메이지 가쿠인 대학에서 발표했다. 2013년에는 미국 예일 대학교의 남아시아 연구위원회의 초청으로 '현대 인도의 불평등, 유동성 그리고 사회성'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 인도의 반성폭력 여성주의 운동

: 새로운 돌파구, 새로운 도전

인도에서 성평등은 1950년부터 시행된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인도에 성평등의 동이 트고 실질적인 것이 되기까지는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1974년 정부 지명의 여성 지위 위원회는 보고서에 "이 나라의 수많은 여성들은 헌법으로 보장 받아야 할 권리들을 보호 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다"고 평했다. 이 보고서는 경종을 울렸지만, 대중적 관심을 널리 불러일으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당시 인도는 헌정위기를 겪고 있었고, 인디라 간디(Indira Gandhi) 총리의 국가비상선포로 시민들의 시민권과 민주주의 권리가 침해당하던 시기였다.

인도 여성주의 운동에서 이른바 제2물결이 형성되는 데에는 이러한 국가비상사태의 경험과 여성 지위 위원회 보고서의 통찰력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인도의 반성폭력 캠페인은, 국가 비상사태 때 자행된 경찰의 임의 체포와 잔혹행위, 고문, 강제 이주 그리고 강제 불임수술과 같은 사태에 저항한 다양한 인권옹호 캠페인에서부터 나왔다.

인도에서 여성주의 의식을 고양시킨 첫 사건은 1979년에 두 경찰이 마투라(Mathura)라는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부족의 어린 소녀를 강간하였으나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여기서 먼저 나는 여성주의를 간단히 정의를 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가부장적 사회구조에 의문을 제기하고 삶의 공적 또는 사적 영역에서 한 젠더가 다른 젠더에게 종속되는 것에 반대하는 사고 체계를 말한다.

법원은 마투라가 경찰들에게 저항한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강간 고소는 무고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강간이 발생한 곳이 경찰서 내부였다 는 점과, 가부장적이고 경찰친화적인 판사의 편파적 판단으로 인하여, 가해 자가 아니라 폭행을 당한 여성이 유죄판결을 받는 부조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마투라 강간사건은 강간을 여성주의 운동의 주요 의제로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수잔 브라운밀러(Susan Brownmiller)는 『성폭력의 역사(Against Our Will)』에서, 강간은 “모든 남성이 모든 여성을 공포에 몰아넣기 위한 위협의 의도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주장은 인도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유력함이 입증되었다.

● ‘강간’에서 ‘젠더 폭력’ 이슈로

그러나 점차 인도의 여성주의자들은 단지 강간에만 주목하는 것은 불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녀들은 바로 ‘젠더에 기반을 둔 폭력’(Gender Based Violence, GBV)처럼 좀 더 폭넓은 개념에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왜냐하면 젠더 폭력과 같은 것은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행동-관행-신념의 연속체이기 때문이다. 폭력은 사생활 영역이나 공공장소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고, 가족 내에서 또는 낯선 사람에게 의해 저질러질 수도 있으며,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서조차도 저질러질 수 있다. 여성주의자들은 젠더 폭력이 때로는 알아차리거나 분류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하였다. 왜냐하면 젠더 폭력은 결혼(아내 강간은 아직 인도에서는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다)과 같은 사회 구조에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고, 중요하지 않게 다뤄지거

나, 권력 관계에서 당연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 종교지도자가 신도들을 성적으로 폭행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처벌되는 경우는 드물다. 왜냐하면 여성 스스로가 말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여성 할례 또한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흔하게 자행되고 있다.

마투라가 두 경찰관과의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본 대법원 판례는 처음으로 성관계에서의 ‘동의’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한 대중의 논의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동의라는 것을 정의하기 쉽지 않다. 어떠한 종류의 성적 행위에 대해선 동의 할 수 있지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아닐 수 있다. 또한 성관계에 동의하더라도, 관계 도중 어느 시점에서는 성관계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동의의 문제는 그녀 또는 그의 ‘신체통합권(bodily integrity)’⁴에 관한 것으로, 이는 다시 말해,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관하여 자율성을 행사할 권리이다. 또한 범죄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일이지, 공격의 대상이 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퍼져나갔다.

젠더 기반 폭력의 다양한 양상 중에서도 우선 여성주의자들이 지적하고자 했던 것은 여성에 대한 위협과 폭행, 그리고 여성 살해에 이르게 할 만큼 여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사회 일반의 관행이었다. 예를 들어, 인도는 결혼을 할 때 신부 가족이 그녀의 약혼자 또는 남편에게 지참금을 주는 것이 전국적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는 관습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인도에서 중매결혼은 일반적이다. 그리고 지참금은 기본적으로 중매결혼에서 혼인 계약 시험상되는 것으로, 신랑과 신부가 속한 계급, 카스트 그리고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관습에 순응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지참금 제도로 인하여 예비 신부의 가족들은 어마어마한 돈과 사치스러운 결혼식을 감당하도록 강요 받는다. 이러한 거래는 결혼식을 올리고 난 후에도 계속된다. 대부분의 여성

4) 번역자 주: 신체통합권이란 여성의 몸에 대한 침해나,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것과 여성의 몸 혹은 재생산 능력이 존중되어야 할 권리를 말한다. 조영미(2004), "출산의 의료화와 여성의 재생산권",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20권 3호, 70면 참조.

들이 남편의 집에 거주하는데, 젊은 여성들은 남편이나 그의 가족으로부터의 지참금 요구 압박에 극도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여성주의 진영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1970년대 후반, 여성 단체들은 근래 결혼한 여성들의 “사고사”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경찰서에 자살 또는 요리 중 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으로 접수된 사례들이었다. 여성 단체들은 이러한 죽음이 사실은 “지참금 살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경찰은 살인을 염두에 두고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이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그녀들은 공공장소에서의 시위부터 연좌 농성, 벽화 및 길거리 연극공연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시위 방법들을 채택했다.

여성주의자들의 주장은 점차 운동, 입법 그리고 학계의 상호연대로 성장해나갔고, 인도의 가족제도에 의문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가족이 가부장제와 카스트 규범, 사회적 보수주의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핵심 요소임을 간파하였다. 가족 안에서 여성은 가족의 정체성과 명예의 보고(寶庫)이지만 개인의 독립적 목소리는 낼 수 없는 존재이다. 여성주의자들은 “기본적인 권리를 가족 내에 적용하고 가족 내 모든 개인을 자유롭고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한다면, 가족은 붕괴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철학자이자 경제학자로 노벨수상자이기도 한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은 인도 가족 내의 젠더에 대한 편견에 대항한 대표적인 학자로, 인도 사회에서 남아선호 현상에 대해 대중 앞에 공적으로 처음 목소리를 낸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인도의 왜곡된 성비로 인하여 “실종된 여성들”의 숫자를 계산하기도 했다. 그는 이 비극적 사실에 대해 가족과 사회의 가부장성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사실 인도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여성은 가족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주체성, 그녀 자신의 안녕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가능성마저 박탈당했다.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결과가 이른바 명예 살인

(honor crime)이다. 인도에서는 극히 드물긴 하지만 가끔 발생한다. 가족구성원들은 간통, 혼전 성관계, 카스트와 부족, 종교적인 측면에서 부적절한 사람과 연애하는 등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여 가족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여성과 그녀의 파트너를 살해하면서까지 처벌자의 역할을 자청한다.

가정폭력만큼 가족 내에서 여성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경우도 없을 것이다. 이는 인도에서 또 다른 운동의 뿌리가 되었는데, 인디아 자이싱(Indira Jaising)과 같은 여성주의 변호사들이 국가적인 이슈로 만들었다. 2005년 제정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은 길거리 여성주의 운동과 법정 공방의 결과물이다. 이 법안은 지금은 국가 법령집에 포함되어 있으며, 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법안들을 제정하도록 영감을 주는 이정표가 되었다.

우리는 이 시기의 운동들을 통상 인도 여성주의의 두 번째 물결이라고 부르는데, 이 운동들은 여러 현안들을 법적, 사회적, 정치적 층위로 끌어올리는 데에 기여하였다. 그들은 비가시성, 차별과 위협에 관한 이슈들을 폭넓게 다루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 경제의 자유화, 사회주의의 후퇴, 시장의 부흥, 그리고 기존세대와 차별적인 경험을 한 신세대 출현으로 인하여 새로운 질문이 제기되고, 오랜 질문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이 등장하였다. 이 새로운 단계는 이른바 인도 여성주의의 세 번째 물결이다. 사회적으로 주어진 고정된 남성-여성 이분법에 반대하면서 젠더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범주로서 “유동적(Fluid)”개념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와 같은 사회 철학자들이나, “상호 교차성”과 같은 여성주의 이론들, 더 나아가 젠더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계층이나 카스트, 인종과 같은 다른 사회 범주들을 끌어들여야 할 필요성이 세 번째 물결에 영향을 미쳤다.

● 인도 여성주의의 세 번째 물결

“여성”이라는 보편적 단어의 이론적 해체는 자기표현과 성취의 개인적 탐색을 촉발함으로써 운동에서도 다양한 발전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뭄바이의 LGBT 단체가 더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우리는 1995년에 ‘여성들’의 그룹으로 시작했는데 (비록 지금은 그렇게 정의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새로이 명명하고 있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내어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곧 우리 여성주의자들의 정박과 (성)문화운동의 힘은 다양한 여성 단체와 인권 단체들이 함께 이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LGBT 개개인들을 지원하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한때 “여성 운동”이라고 명명된 활동이 어떻게 무엇이 “여성됨(femaleness)”을 구성하는가를 질문하는 다양한 분파들을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실 여성주의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물결의 단계를 시계열로 후자가 전자를 대체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되었을 수 있다. 복잡한 인도 현실로 인해 운동의 오래된 형태와 새로운 형태는 동시에 존재하기도 하고, 때로는 겹치거나 섞이기도 하며, 때로는 서로 구별되지만 인접한 채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

세 번째 물결의 또 다른 새로운 측면은 남성을 여성주의 진영, 그중에서도 특히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항하는 운동에 동반자와 협력자의 정신을 갖추고 참여시키는 것이었다. 나아가, 새로운 의사소통 기술과 소셜 미디어가 옛 스타일의 운동에 가상차원을 더해 더더욱 활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했다. 여성주의 운동과 지식 생산에 30년이 지난 지금, 변화한 것은, 이제는 모든 이슈들에 질문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어휘들이 틀 안으로 들어왔다. 이제는 강간피해자 여성이 ‘불명예스러운 것이 아니라, 애초에 강간이 일어나도록 방관한 사회가 불명예스러운 낙인을 짊어져야 한다. 피해 여성이 부끄러워 할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그녀의 안전과 정의를 보장하지 못한 형사사법구조와 정치기구들이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닌 ‘생

존자’로 가시화된다. 같은 맥락에서 그동안 사소한 범죄로 평가되었던 ‘공공장소 성적 괴롭힘(eve teasing)’은 이제는 ‘성희롱(sexual harassment)’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것은 단지 의미론적인 변화라기보다 자율성 행사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다.

사적 공간은 여전히 투쟁의 장소이지만, 특히 보수적인 종교-정치 부활이 대두되고 있는 최근 인도에서, 여성주의 운동은 이제 공공장소에 대한 주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느 도시든지 기회, 성장 그리고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환경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시는 두려움과 협박 그리고 학대의 현장이 되어 사람들을 무력화하고 있다.

최근 인도에서 이러한 무력화를 가장 강력하게 드러낸 사건은 2012년 12월 16일, 델리 남쪽에서 일어난 조티 싱(Jyoti Singh)에 대한 버스 집단 강간사건이다. 사람들은 종종 인도처럼 큰 나라에서 강간, 집단 강간이 그리 드문 것이 아닌데, 왜 이 특정 사건이 나라 전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뉴스가 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이 사건의 잔인성이다. 정확하게는 그녀가 강간범들에게 반격을 했기 때문에, 그녀는 반복적으로 쇠막대로 맞았으며, 자세한 묘사를 하기에는 충격적일만큼 심각하게 내장과 생식기에 부상을 입은 채 방치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시위의 현장에 자발적으로 모여들었던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여성주의 운동이 자아낸 연대의식이었다. 한 여성주의자가 언급하였듯, “공공장소 연대의 출현은 이 나라 그 어느 곳이건 간에 성폭력에 대항한 결연한 싸움에서 우리 모두 서로를 고무시키고, 자극하고 그리고 서로를 지지하게 해 주었다.” 또한 엄청난 숫자의 남성들이 이 시위에 활발하게 참여한 것도 매우 이색적이었다. 한 뉴스앵커는 이것이야말로 “여성의 이슈가 젠더 이슈로 전환된 터닝포인트”라고 평가하였다. 혹자는 더 나은 삶을 살고자했던 조티 싱의 열망이 동세대의 다른 이들과 공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녀들은 “기본적인 정치적 요구로서 ‘사회적 이동에 관한 권리’란 다음 두 가지를 의미한다며, ① 문

자 그대로 누구나 시간과 젠더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안전하게 길거리에 있을 수 있는 권리, ② 사회적 측면에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였다.

많은 측면에서 시위는 두 가지 목소리로 나뉘었다. 정치기구와 언론단체는 오로지 더욱 효과적인 보호 체제, 더 많은 감시와 더 강력한 치안을 통해 성폭력 문제를 고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성주의자들은 실질적으로 “베카프 아자아디(bekhauf azaadi)”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개념을 번역하자면, 두려움 없는 자유(fearless freedom)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여성의 안전 보호를 빙자하여 여성을 통제하거나, 강간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감시를 정당화하고 여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접근방식에 대해 도전하는 것이다.

●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다양한 운동들 : 공공장소에서의 여성 권리 주장

초기 여성주의 진영은 이러한 통제에 대항하여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방법들을 시도해왔다. 2011년, “베샤미 모카(Besharmi Morcha)”⁵가 있었다. 이것은 여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구성된 얽잡고 조신한 “가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체계적인 반격으로, 인도의 보수적 정서에 충격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탈적인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국가가 지금까지 여성을 취급하는 태도에 신세대가 대항하는 방식으로서, 일상적으로 여성을 낙인찍고, 병리화, 성애화, 장애화하고, 스토킹하고, 괴롭히고, 강간하고, 불태우거나 살해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통제하고 규제해온 태도에 대한 저항이다. 설령 보수 기득권 남성들에 의해 “수치스러운 여성”으로 낙인이 찍히더라도 평등

5) 번역자 주: 파멜라는 본문에서 베샤미 모카를 영어로 “수치를 모르는 여성들의 행진(March of the Shameless)”으로 번역하였다. 이는 여성이 길거리의 대중 앞에서 의도적으로 일탈적인 모습을 과시하며 행진함으로써 기존 가부장적인 사회 통념에 저항한 운동이라는 점에서, 슬럿워크(Slut Walk)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시도한 ‘잡년행진’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할 권리를 주창하는 방법으로서 제시한 것이다.

사회학자인 실파 파드케(Shilpa Phadke)는 로이터(Why Loiter)⁶ 운동 창립자 중 한 명인데,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여성주의 관점에 따라 변화시킬 것을 제안했다. ‘안전’과 ‘보호’ 대신 ‘위험’과 ‘즐거움’으로 바꾸자는 것이었다. 그녀는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공공장소에 대한 여성의 권리 주장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에서 기인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은 “공공장소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제한”하는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여성을 위한 최적의 장기적 전략은 도시의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여성주의자들의 참여를 더욱 높이는 것이다. 여기에서 도시 공간은 ‘안전’의 프리즘이 아니라 ‘평등’과 ‘참여’의 프리즘을 통해 보이게 된다. 로이터 운동은 현재 페이스북에서 여성들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공공장소에서의 위험에 대항하도록 하고 있다.

텔리 집단 강간 이후 공식적으로 ‘가부장적인 통제와 보호 모델’을 거부하는 다양한 캠페인이 등장했다. “핀야 토드(Pinjra Tod, 철장을 부수자는 의미)”라는 시위는 대학 기숙사의 시대착오적인 규칙에 대항한 것으로, 학생들은 성인여성들을 “유아 취급하고 꿈쩍도 못하게” 만드는 규칙에 저항했다. 그리고 이 운동은 현재 인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학생들이 서명한 청원서에는 “우리는 안전한 도시가 수백 명의 젊은 여성들이 기숙사에 갇히거나, 그저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만들어 질 것이라고는 진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더 안전한 도시는 오로지 여성, 특히 가부장적인 규범과 규율에 가까이 도전하는 젊은 여성들이 그녀들의 권리로서 도시와 공공장소에서 마음껏 걷고, 거주하며, 지나다닐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주장이 실려 있다.

텔리 집단 강간의 결과로서 정부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존하는 법률 프

6) 번역자 주: 한국의 ‘밤길 되찾기’운동과 유사. Loiter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어슬렁거리는 사람’ 정도에 해당한다. Why Loiter는 2014년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여성들이 의도적으로 늦은 밤 길거리를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닌 경험들을 공유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 단체로, 인도 뭌바이에 거점을 두고 있다. 사이트 주소는 <http://whyloiter.blogspot.kr/>이다.

레임이 얼마만큼 젠더 정의와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도록 하였고, 여성주의 활동가, 시민 단체, 일반 시민들로부터 형사사법구조에 대한 80,000여건의 개선의견을 받았다. 젠더 폭력에 대한 전례 없는 정부 개입의 지를 증명한 것이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인도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고찰되지 않았던 사법부의 급진적인 변화를 제안했다. 위원회는 어떠한 제한사유 없이 여성의 자유를 옹호했고, 특히 여성의 자유를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고서에 서술했다. “여성은 반드시 자유를 만끽해야하고 남자 아이들과는 달리 결코 ‘지각된 명예(perceived honor)’의 전달자로 행동하도록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수십 년간 인도에서 행해지고 승인되었던 여성에 대한 과도한 통제는 가히 충격적이다.”

● 국제적 연대로 만들어 낼 새로운 돌파구

오랜 동안 여성주의 활동가들의 노력과 운동에도 오늘날 젠더 폭력은 인도에서 여전히 널리 행해지고 있다. 더 많은 여성들이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갖게 되면서, 스토킹과 염산 공격을 포함해 수년 전 인도에는 드물었던 새로운 형태의 성희롱에 맞닥뜨렸다. 가상세계에서 새로운 형태들의 괴롭힘이 시작된 것이다. 2013년 인터넷 민주화 프로젝트(Internet Democracy Project)는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인도 여성 17명을 인터뷰했다. 그녀들은 단순히 강간이나 집단 강간 위협과 같은 성적인 비방에서 그치지 않고 살인 위협까지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 감시단은 “인터넷은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피해는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는 잘못된 통념”에 대응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이제는 가상현실게임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가해 집단이 활동하고 있는 방식을 예시로 들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남성이 창조하고 또 계속해서 형성해가는” 것으로 간주하여 여성이 스스로 숨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교류하는 새로운 공간에서 단절되거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 너무 심각한 검열을 요구하는 대신, 여성들

은 그 공간에 존재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한 정보와 지식으로 중무장하여 그들에 대항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성희롱 가해자의 행동이 처벌되지 않는 현실은 가부장적인 사회 조건들과 사회적 공간의 남성중심성을 반영한다. 이러한 인도 사회의 현실이 지배적으로 지속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항하는 투쟁 역시 이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 돌파구란, 가부장제라는 벽 앞에서, 젠더 중심적이고, 평등하며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또 다른 세계가 가능성을 애타게 들여다보도록 하는 작은 틈새이다. 그리고 초국적, 국가적 연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의 공유는 그 벽을 무너뜨리도록 할 것이다.

『미녀, 야수에 맞서다 : 여성이 자기방어를 시작할 때 세상은 달라진다』 서평

김혜정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2016년 5월, 나는 강남역에 붙은 포스트잇 추모 행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향했다. 3호선 교대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해 한 정거장을 앞에 두고 있었다. 지하철이 왔고, 퇴근길 인파들 사이로 몸을 싣고 2분간 달렸다. ‘강남역’이라는 표지가 창 밖으로 서서히 보였고, 지하철이 섰고, 문이 열렸고, 나는 내렸다. 10번 출구를 찾아 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나는 이 길을 향해왔을 지난 며칠 간의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생각했다. 마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피해자들의 치유법인 ‘노출 기법’을 다함께 해내고 있는 것 같았다. 조각난 기억이라도 그 일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언급해 내 입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떠올리지도 가 보지도 못하게 된 그 장소에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한 걸음씩 다가가서 결국 그 사건을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것, 공포와 슬픔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 보는 것.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라는 말은 그 사건의 피해자와 내가 사실은 같

은 사람이라는 자각이다. 그것은 아마 큰 두려움과 떨림을 내포하고 있는 것 이리라. 내 발걸음 역시 떨림으로 가득했다. 그렇지만 여성들은 떨림을 안은 채 현장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다. 매일 오는 사람도 있었다. 강남역 10번 출구를 가득 메운 포스트잇에는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냐고, 부둥켜안고 울고 있는 문장들도 있었고, 추모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도 역시 무서웠다는 글도 많았다. 그러나 이 현실을 꼭 바꾸겠다는 다짐도 가득했다. 며칠 후 열린 행진에서는 “싸우는 여자가 이긴다”는 구호가 외쳐졌다. 깊은 슬픔과 공포는 분노로, 행동으로 화하고 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므로.

상대가 노리는 것이 나의 완전한 무기력,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 가진 자율성의 상실, 절멸이라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도 내 삶이 유지될 거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억압과 폭력이 누적될수록 저항과 반격은 시작된다.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누구와 무엇을 준비해야 좋을지,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더라도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살기 위해 무엇을 할지를 배우고 연습하는 시간들이 전국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여성을 위한 자기방어 훈련 역시 그 실천적 준비와 연습을 몸의 차원에서 이루어내는 과정으로, 수많은 여성들의 경험과 열망이 녹아 만들어졌다.

여성을 위한 자기방어훈련의 존재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Beauty Bites Beast』가 드디어 『미녀, 야수에 맞서다: 여성이 자기방어를 시작할 때 세상은 달라진다』(엘렌 스노블랜드 지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정유석, 김강 옮김, 2016. 12, 사회평론)로 번역 출간되었다. 야수도 알고 보면 로맨틱한 왕자님이고 미녀가 그에게 빠진다는 오래된 레토릭은 누구를 위한 착시 프로그램이었을까. ‘미녀와 야수’라고 불리는 관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고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위협할 때 야수를 물어 버리는 액션플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은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여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하는 사회에서 모순적이게도 알려주지 않은 생존 대안이다.

이 책의 저자 엘렌 스노틀랜드는 작가, 변호사, 방송 프로듀서로 일하던 페미니스트 여성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차고에서 혼자 숨어 있던 공격자에게 맞서야 하는 공포스러운 상황을 겪고 나서 여성을 위한 자기방어훈련을 수강한다. 생각만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어 오던 그 수업을 드디어 1990년에 캘리포니아의 임팩트(IMPACT)¹ 지부에서 5주 동안 수강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몸과 마음의 완전한 변화를 체험한 저자는 자기방어훈련 강사로 자기를 세우기로 하고, 이 프로그램을 알리고 전도하는 활동을 시작한다.

여성을 위한 자기방어훈련은 언제 생겼을까? 북미의 1970년대 '제2의 물결'이라 불리는 급진적 여성운동 이후 이 훈련이 곳곳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물론 그전부터 여성을 위한 무예수련을 연구해온 고수들이 이 불판에 함께 뛰어 들었으리라. 임팩트라는 단체는 1988년에 설립되었고, 여기 출신에 의해 1992년에 프리페어(PREPARE)라는 단체도 설립된다. 이후 지금까지 약 30여 년간 미국 전역에 지부를 형성하고, 각 지부마다 지역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생애주기에 맞추어 여성과 약자들의 필요에 따른 코스를 제공한다. 18세가 된 여성에게 꼭 추천하기 위해 고등학교나 대학교와 협약을 맺기도 한다.

여성을 위한 의식고양 자조집단으로서, 법과 제도를 바꾼다거나 남성 중심적인 인식을 바꾸는 캠페인과 집회를 벌이는 것과는 다르게, 이 운동은 자기 수련이고 몸의 차원에 집중하는 코스다. 성별에 따라 두려움도 다르게, 몸의 자율성도 다르게 형성되는 사회에서, 여성은 폭력의 주요 타겟이 되어 왔다. 이 오래된 불평등과 억압 속에 갇혀 있던 신체적, 심리적 취약성을 어

떻게 현실적으로 몸의 차원에서 바꾸어가고,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도울까?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임팩트의 9가지 원칙에는 그런 고민과 전문적 방안이 녹아 있다. 기존의 젠더 중립적이거나 남성의 몸의 단련을 기준으로 했던 무술이나 호신술과도 다른 점이 무엇인지 볼 수 있다.

1. 시나리오를 사용한 교육² :

아는/모르는 사람에 의해 벌어지는 물리적/비물리적 영역 침입의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교육함. 코치하는 강사 한 명과 가해자/공범 역할을 하는 강사 한 명으로 구성

2. 언어적 기술과 목소리를 이용한 교육 :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돕는 언어, 확신이 담긴 말하기, 영역을 확실히 하는 기술 등의 소통 전략 강조

3. 전력을 다하는 물리적 기술 :

가해자의 급소를 전력을 다해 공격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도록 가르침. 이를 위해 강사는 온몸을 감싸는 특수 보호복을 입는다.

4. 지지받는 환경에서 받는 안전 기술 교육 :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극대화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안전하고 정서적으로 지지받는 환경을 조성함

5. 트라우마 감수성 :

가족 간 폭력, 성폭력 등의 트라우마를 겪는 이들에게는 비슷한 폭력상황에서 물리적으로 힘을 갖추는 경험은 그 자체로 치유의 경험이 됨. 강사들은 이러한 트라우마에 대한 감수성을 갖춘 이들을

6. 아는 사람에 의한 폭력에 저항하는 전략 :

성폭력 등의 폭력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에 의해 발생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영역을 존중하지 않는 가해자가 애인, 가족 구성원, 친지인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을 교육함

7. 모두를 위한 자기방어훈련 :

모든 이에게는 힘이 있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령, 신체 크기, 물리적 역량을 갖춘 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자기방어기술을 교육함

1)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impactselfdefense.org/> 이다.

2) 이 자료는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건강다짐 운영위원회 2014. 11. 13 자기방어훈련 스터디 자료로, 권이은정이 번역하였다. 번호는 필자가 붙인 것이다.

8. 여성 리더십을 위한 헌신 :

여성이 리더 역할을 하는 환경에서 교육함

9. 폭력을 방지하고 생존자를 지지하기 위한 노력 :

임팩트의 자기방어훈련은 사회적 변화를 이끌고 폭력을 방지하고 치유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인 전략의 하나. 임팩트 지부들은 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반응에 대한 광범위한 비전에 헌신함

몸으로 하는 훈련은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우리는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이 존엄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한 존엄성을 머리로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자주 침해된다. 그 결과 스트레스와 고통, 분노, 자존감에 관한 의문 속에서 많은 시간을 살아간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 나에게 고통이 될 수 있는 침해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어떻게 그것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을까?

자기방어훈련은 이것을 몸의 차원으로 느끼고, 즉각적인 행동을 배우고 연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컨대 책에 나오는 캘리포니아 '키즈파워'라는 어린이를 위한 자기방어훈련 프로그램에서는 어린이가 앉아 있는데 누가 무릎에 손을 올리면, 그것을 치우는 동작을 연습한다. 내가 앉아 있다. 그리고 누구의 손이 닿고, 그 손에 힘이 실려 살짝 무게가 느껴진다. 그 촉각이 느껴진 순간 나는 그 손을 내 무릎 밖으로 밀어낸다. 손을 잡고 들어 옆으로 내려놓을 수도 있다.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내 몸의 경계는 어디까지이고, 당신은 무엇을 침해했는지 설명하거나 설득하기 전에 몸으로 행동한다. 그 순간 나도 상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원래 내가 있고 싶었던 상태로 돌리기 위한 당연한 행동이라는 것을. 상대가 고집스럽게 자기를 왜 거부하냐고 묻기라도 한다면, 거기에 대해 답하든, 답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든 그것은 좀 이따가 해도 되

는 당신에게 속한 문제이고 오로지 당신의 선택이다.

저자가 처음 수강했던 5주간의 프로그램은 이렇게 진행되었다. 설문지 작성하기, 등글게 앉아서 비밀을 지키고, 공감대를 나누자고 서로에게 안전한 공간 약속하기, 여성의 신체로 할 수 있는 반격의 특성에 대해 지식 나누기 (바닥에서 싸우는 방법의 필요성), “안돼!”라고 고함치기, 눈 찌르기, 무릎치기, 손바닥으로 올려치기 등 신체적 기술 배우기, 안전거리를 지키며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방법, 가해자 역할을 한 전신슈트를 입은 남자에게 반격하는 연습, 매트 위에서 공격자 역할과 싸우는 방법의 단계별 연습, 수업을 마치고 나도 공격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걸어 다녀보기 숙제, 강간 상황극(반전극) 연습, 욕설로 가해자 귀를 시끄럽게 하는 방법으로 면역력 키우기, 그리고 5주의 졸업식은 친구와 가족들을 초대할 자리에서 상황극 보여주기이다.

몸 차원의 훈련이 한주 한주 진행되면서 수강생들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내면의 변화를 겪었는지, 수업을 마치고 나서 무엇을 자기 자신과 주변에 말하게 되었는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3장 ‘자기방어 수업 전과 후, 그녀들의 이야기’에는 다양한 직업과 체급, 경험과 인식을 가진 수강자 여성들의 생생하고 감동적인 후기가 빼곡하게 적혀 있다.

“수업을 듣고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나한테 어떤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내 자신이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요.”

94쪽, 마릴린

자기방어훈련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다시 알게 해준다. 나의 존엄을 확신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 침해의 현장에서는 명목상의 존엄일 뿐이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기술은 여성과 약자에게 꼭 제공되어야 할 교육이 아닌가. 어떻게 이런 신체적, 언어적, 정신

적, 영적 훈련을 제공하지 않고도 ‘남녀’가 평등하고, 당당하고, 자존감이 높고, 안전하게 살아가길 ‘명목상’ 바라 왔던 것인가.

내가 아는 것을 내 몸에 불러들이기

이 책을 읽는 즐거움과 전율은 수많은 비유와 예시를 통해서 여성들의 몸 훈련, 반격 훈련이 얼마나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인지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에서도 생겨난다. 강아지들은 평소에 물고 뜯고 추격하고 도망가는 놀이를 통해 공격성과 방어력을 키우곤 하는데, 어느 날 싸움이 벌어진다면 남자 강아지들만 전선 앞으로 나가 도열하고, 여자 강아지들은 조신하게 앞발을 모으고 뒤에 앉아 있겠냐고 독자들에게 되묻는다.

성별에 따라서 공격해야 할 역할과 “그런 건 난 몰라요”라고 해야 하는 역할이 나뉘는 건 인간세계에서만 그러하다는 것. 모든 생명체에 본능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자기방어의 본능과 그것을 발휘하는 기술을 인간은 왜 여성에게서 거세했을까. 남성은 왜 호전적인 성향을 격려받고, 폭력을 현실에서 시전하며, 여성은 무력함이 미덕이고 타인에게 방어를 요청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도록 내장되었는가. 저자는 2부, ‘여성은 어찌다 잠자는 미녀가 되었나’에서 역사적으로 여성의 힘과 권위를 거세하게 위해 어떠한 가부장적 작전이 있어왔는지 수많은 레퍼런스를 제시하며 파헤친다. 15세기 중반부터 17세기 후반까지 마녀사냥으로 몰려 처형당한 여성들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데, 여성들 스스로 자기방어능력이 없다고 믿는 것은, 살해당할지 모른다는 역사의 근거 있는 두려움이 전승된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한다. 신체가 작다는 것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말이다.

가부장제의 권력과 이득에 익숙한 계층과 사회적 문화 제도의 저항은 실로 질기다. 매우 허술한 논리와, 세련되지 않은 거친 힘과, 부당한 적용체계,

그러면서도 고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항한다. 남성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제발 그만하라”는 말에, “다른 남자들도 포식자(늑대)지만 나를 왜 잠재적 가해자로 보나?”를 포함하여 100가지 질문을 던지며 하나씩 답해달라고 한다. 여성들이 부정의한 사회문화,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고 하면, 남성들은 자신들로서는 익숙하고 편했던 사회가 달라질까 봐, 불안감을 모든 수단을 통해 표출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그것에 대답하고 설득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러니 결국, 여성과 약자들의 힘 기르기가 가부장제 아래서 승인될 수 있을까? 변화가 가능할까? 하는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저자가 던지는 단순하고 당연한 질문과 반문은 여성을 위한 자기방어훈련에서 여성 수강자들이 몸으로 느끼는 변화처럼 단순명쾌하다. 내가 알고 있는 약자의 정의로운 반격, 차별의 시정과 멈춤, 존중의 실현과도 같은 분명한 것들이 논쟁과 논란 속에서 부유하는 상태로 둘 수 없다면, 우리들의 집단적, 몸적 감각과 기술, 힘을 변화시키는 데도 힘쓰자. 그리고 몸으로 실현하자. 우리들의 슬픔과 두려움을 분노로 바꾸고, 그 힘으로 함께 만들어온 한국형 ‘여성용 자기방어훈련’도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페미니즘 출판시장의 활성화처럼, 여성을 위한 자기방어훈련 도장들도 흥하기를!

『미녀, 야수에 맞서다 : 여성이 자기방어를 시작할 때 세상은 달라진다』 역자소감¹

정유석 | 한국성폭력상담소 법 정책 자문위원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를 덜어주는 것은 커다란 보시중 하나이다. 불교의 한 경전에서 본 문구입니다. 공포의 근원을 바로 보아 걸림이 없어지면 각자의 진정한 모습이 빛을 발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 책에서 위험 상황에 왜 대응하기 어려웠는지, 또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관한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을 보면서 이 책과 책속에 소개된 사람들, 그리고 책을 읽고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계실 분들도 바로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역자로서의 소감으로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 책 1장의 서두에 언급된 주역에서 위험과 용기와 관련된 부분을 번역해 옮겨 보고자 합니다.

1) 편집자 주: 이 글은 2016년 12월 6일,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이 개최한 『미녀, 야수에 맞서다: 여성이 자기방어를 시작할 때 세상은 달라진다』 번역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위해 공동번역자 중 한 분인 정유석님이 역자소감으로 보내주신 글을 편집한 글입니다.

반복되는 위험을 겪으면서 우리는 성장해갑니다.
물은 다만 모든 곳을 채우며 멈춤 없이 흘러갑니다.
물은 어떠한 위험한 곳도 남떠러지도 꺼리지 않으며,
어떠한 것도 물의 본질을 잃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이와 같습니다.
어려움 앞에서도 마음을 굳게 먹는다면
공포와 위험이 가진 진짜 의미를 깨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힘을 회복하면
우리의 행동 역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상황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위험상황에서 지체하다 소멸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철저히, 완전히 시도하는 것입니다.

리하르트 빌헬름의 영문판 주역 中

대담하고 재치 있는 엘렌 스노틀랜드의 문체가 번역과정에서 힘이 빠져버린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부족하나마 우리들 내면의 용사들에게 말 걸고자 했던 저자의 목소리가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반성폭력

2017 → 11호

이슈리포트

퍼넌곳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올림

퍼넌이 이미경

만든이 조소연

디자인 디자인이즈

퍼넌날 2017년 5월 12일

주소 (04072)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3층

전화 02-338-2829

팩스 02-338-7122

홈페이지 www.sisters.or.kr

이메일 research@sisters.or.kr

블로그 www.stoprape.or.kr

트위터 www.twitter.com/stoprape

